

SW 관련 국제협정 동향연구

A Research on the Trend of Software-related Trade Rules

이현승/이한영/차성민

2018.04.

이 보고서는 201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
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
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국내·외 시장 환경 및 동향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제2장 SW무역에 관한 WTO협정 및 다자협약 규범 현황	8
제1절 소프트웨어 무역에 관한 통상법적 관할	8
제2절 정보기술협정(ITA)	13
제3절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시장자유화	17
제4절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논의와 성과	22
제5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자협약	31
제3장 SW무역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상의 규범 및 최신 동향	42
제1절 개관	42
제2절 자유무역협정	43
제3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64
제4절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TiSA)	76
제5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81
제4장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 동향 조사·분석	86
제1절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현안 논의 동향	86
제2절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 동향	110

제5장 결론	127
제1절 개관	127
제2절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통상현안 및 정책시사점	128
제3절 소프트웨어 분야의 통상대응방향 제언	141
참고문헌	147
< 부 록 >	154

표 목 차

<표 2-1> ITA 대상품목 및 HS 번호	15
<표 2-2> 비즈니스서비스(W/120의 분류번호 1)의 구성	17
<표 2-3>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W/120의 분류번호 1B)의 구성	18
<표 2-4> 주요 CRS 수출국 등의 GATS 양허 개요	20
<표 2-5> WTO 분야별 이사회 의 검토 의제	22
<표 2-6> GATT 및 GATS의 규범체계 개요	27
<표 2-7> GATS의 서비스 공급방식	28
<표 3-1>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조	45
<표 3-2> 한·미 FTA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50
<표 3-3> 한·EU FTA 전자상거래 절(section)의 조문구조	56
<표 3-4> 한·EU FTA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57
<표 3-5> 한·중 FTA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조	60
<표 3-6> 한·중 FTA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62
<표 3-7> 각국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비교	63
<표 3-8> TPP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조 및 특징	64
<표 3-9> TPP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75
<표 3-10> TPP 전자상거래 부속서의 조문구조 및 특징	77
<표 3-11> RCEP 저작권 관련 조문 구조	84
<표 4-1>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124
<표 5-1> 주요 국제협정별 전자상거래 규범의 조문구조	132
<표 5-2> 주요 국제협정별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조문구조	139

그림 목 차

[그림 1-1] 세계 지역별 B2C 전자상거래 매출 추이	1
[그림 1-2] 상거래 단계 : 오프라인 거래 vs. 온라인 거래	2
[그림 1-3] TPP 및 TiSA의 국내화(localization) 요건	5
[그림 1-4] 소프트웨어무역에 관한 다자통상규범 지배구조	6
[그림 2-1] 소프트웨어 유형별 WTO 관할협정 개요	12
[그림 3-1] 클라우드컴퓨팅의 서비스 개요도 예시	71
[그림 3-2]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통합 가입 현황	82
[그림 4-1] EU와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1980-2013)	98
[그림 4-2] EU와 미국의 비건설투자 대비 ICT 투자 비율 추이	99
[그림 4-3] 전 세계 및 EU 역내의 데이터 국내화 조치 추이	105
[그림 5-1] 소프트웨어무역에 관한 다자통상규범 지배구조	128
[그림 5-2] T-삼위일체 협정의 국내화조치 금지	133
[그림 5-3] 미국의 최근 통상협상전략 개요도	135

요 약 문

1. 제 목

SW 관련 국제협정 동향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관련 통상규범과 국제협약’이라는 관점 하에 WTO 및 FTA 통상규범, 베른협약 등의 국제협정에 대한 포괄·심층·통시적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협정의 핵심현안, 정책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SW에 관한 WTO협정 및 다자협약 규범 현황
- SW에 관한 주요 FTA 상의 규범 및 최신 동향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 동향
- SW분야 글로벌 통상규범의 핵심현안, 시사점 및 대응방향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전자상거래

우리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 WTO ITA(정보기술협정) 및 한미 FTA를 통해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사실상 전면개방을 단행했다. 그런데 메가(Mega) FTA 협상 등 최근 국제동향에 따라, 그리고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차원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 금지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요건 금지 등 소위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 금지 규정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및 컴퓨팅 설비의 위

치 제한 금지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적 리스크가 일부 존재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와 직결된 리스크는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내 법·제도 내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공개 요건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분야가 직면한 우려는 상존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근본적 과제인 경쟁력 제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후 통상 협상에서 합법적으로 동원 가능한 정책여력(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업계는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해외진출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지식재산권 및 과세 분야

무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협약인 TRIPs와 WIPO, 양자 간 협약인 자유무역협정들 및 메가 FTA들의 지재산권 규정들을 분석하고, 통상 이슈에서 지재산권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향후 통상협상들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법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선진국들은 이전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무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인 직접세(법인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과세체계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에 관한 분석내용을 한미 FTA 개정협상을 대비한 SW 분야 대응자료 작성에 활용

6. 기대효과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SW분야의 탄력적 정책 수립 역량 강화
- 통상규범 친화적 SW분야 법·제도 정비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기여
- SW분야 통상현안에 대한 SW정책연구소의 외부협조요청 대응능력 제고

SUMMARY

1. Title

A Research on the Trend of Software-related Trade Rules

2. Purpose and Necessity

This research is, from the software trade perspective, to seek key trade issues, polic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software industry by comprehensive, in-depth and diachronic analysis of WTO and FTA trade rules.

3. Composition and Scope

- o Software-related trade rules in WTO Agree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arrangements.
- o Update Software-related trade rules in major FTAs.
- o E-commerce policy discussions in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o Current issues of global software trade rules, their implications and Korea's strategies.

4. Contents and Results

a. E-commerce

Korea has almost fully liberalized its software market, including package software, customized software, and software as a service(SaaS), through UR, WTO/ITA and KORUS FTA. It is worth noting, however, that controversy is being heightened internationally regarding so-called provisions of 'localization measures' which restrict or impair cross-border free flow of information,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or software source code. Accordingly, domestic stakeholders are also getting focused on the provisions.

Finding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Korea has some policy risks around cross-border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with little inherent policy risks as regards software industry. This is because there exists no such requirement in Korea to disclose proprietary software source code. Still, there are fundamental concerns on Korea's software industry, which is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As of now, it seems very significant not only for government to secure legitimate policy space at maximum possible extent in upcoming trade negotiations, but also for private sector to make smart efforts to utilize digital trade liberalization as a momentum for expanding to overseas market.

b.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axati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mportant in trade. We analyzed the IPR provisions of TRIPs, WIPO, FTAs and mega FTAs, 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ssu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egal protection of software and data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rade negoti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are expected to demand stronger legal protections than before. Through the 1998 global e-commerce declaration, there has been a practice of non-tariffs on cross-border e-commerce. However, regarding the direct tax and the indirect tax, it is difficult to tax the cross-border e-commerce transactions. Therefore, the taxation metho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e-commerce should be reexamined.

5. Policy Use Contents

- o To utilize analyzed contents on localization measures for drafting ad hoc report to cope with KORUS FTA renegotiation.

6. Expected Effect

- o To Strengthen capacity setting up flexible policy for software industry as per cha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 o To help seeking trade-friendly regulatory improvement and business strategies in software industry.
- o To enhance SPRis' capacity to handle external request for advice on software-related trade issue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 Environment and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Market	1
Section 2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4
Chapter 2 WTO Agreements and Multilateral Agreement on SW Trade	8
Section 1 General legal jurisdiction over software trade	8
Section 2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13
Section 3 Liberalization of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RS) Market	17
Section 4 Discussion and Results of WTO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Plan	22
Section 5 Multilateral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1
CHAPTER 3 Trends in Majo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related on SW	42
Section 1 Overview	42
Section 2 Free Trade Agreement	43
Section 3 Trans-Pacific Partnership(TPP)	64
Section 4 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76
Section 5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81
Chapter 4. Analysis of e-commerce policy of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6
Section 1 Trends of E-Commerce Issues	86
Section 2 Discussions on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110
Chapter 5 Conclusion	127
Section 1 Overview	127
Section 2 Key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ftware Sector	128
Section 3 Suggestions on Software Trade	141
References	147
< Appendix >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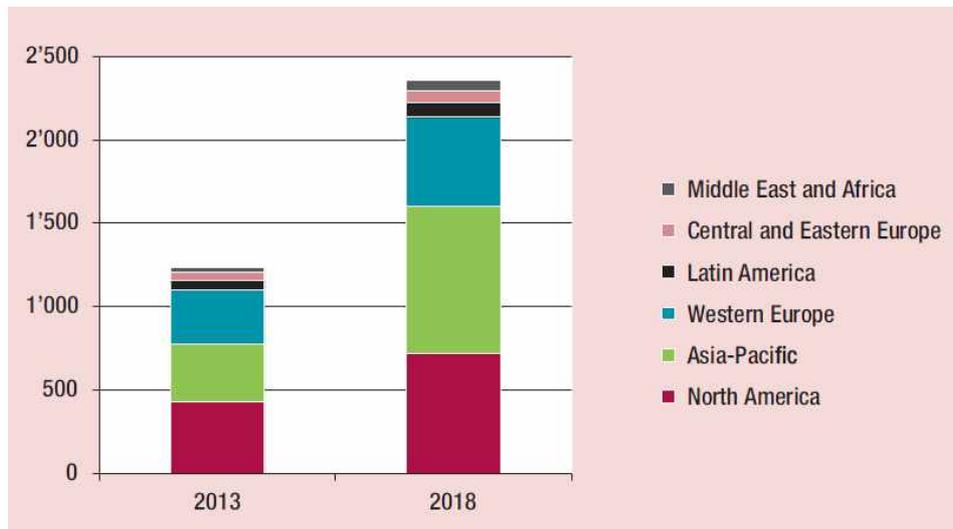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국내·외 시장 환경 및 동향

1990년대 중반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전 세계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생산·소비·무역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온라인(online) 거래가 기존 오프라인(offline) 거래를 대체·보완하는 전자상거래의 심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글로벌 서비스무역의 약 50%가 전자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¹⁾, 2013년 기준으로 B2B 및 B2C 기준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각각 약 15조 달러, 약 1.2조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²⁾

[그림 1-1] 세계 지역별 B2C 전자상거래 매출 추이

(단위 : 10억\$)



자료 : eMarketer.com, Jul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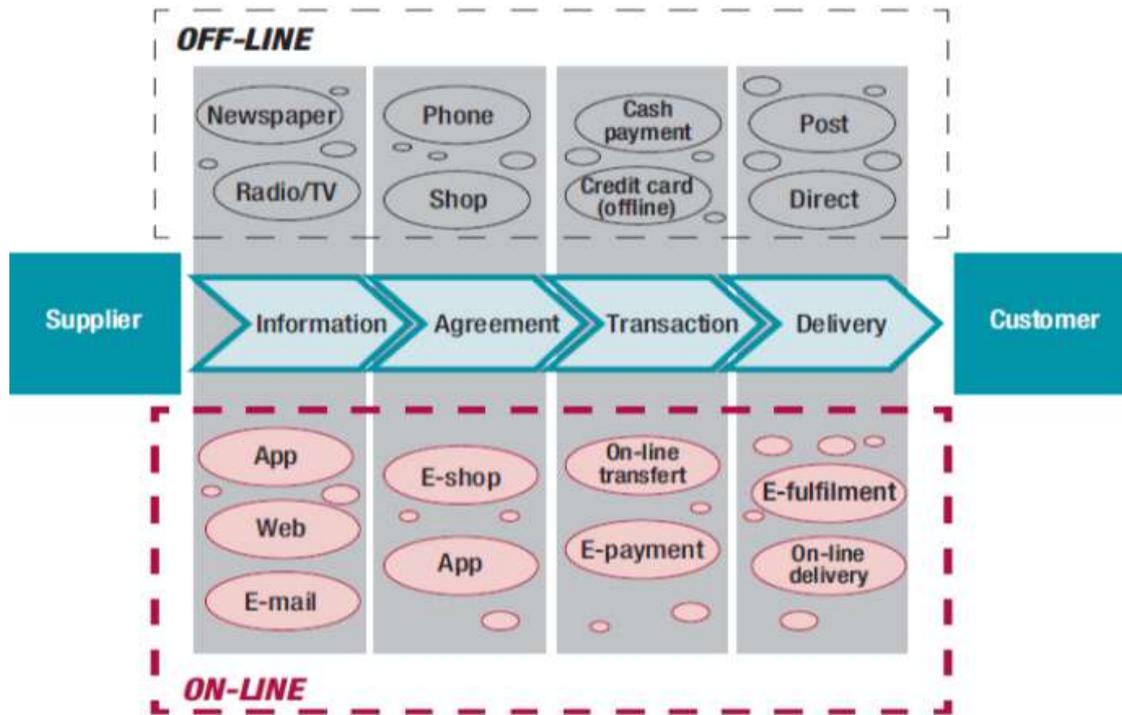
일반적인 상거래는 탐색-주문-지불-배송 등의 세부 단계를 거쳐 완결된다. 전자상거래도

1) Gary Clyde Hufbauer, J. Bradford Jensen, and Sherry Stephenson(2012),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Policy Brief No. PB12-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 41.

2) 성장세는 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B2B를 능가하며, 특히 개도국 B2C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미국, 영국, 일본 및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시장이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시장으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B2C시장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www.eMarketer.com.

그러한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만, 상거래 세부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에 의해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즉, 일반적·포괄적 의미의 전자상거래에는 상거래의 세부 단계 중 일부만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WTO와 OECD가 이러한 정의를 사용한다.³⁾

[그림 1-2] 상거래 단계 : 오프라인 거래 vs. 온라인 거래



자료 : OECD(2013), Electronic and mobile commerc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28.

그런데 그러한 전자상거래에는 탐색-주문-지불-배송 등 상거래의 세부단계 전체가 인터넷을 통해 완결되는 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소위,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 라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CD 등 물리적 매개체(carrier medium)에 실려서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digitally encoded contents)로서⁴⁾ 서적, 음악, 영화, 게임 등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도 해당된다. 따라서

3) “electronic commerce is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² A commercial transac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stages: the advertising and searching stage, the ordering and payment stage and the delivery stage. Any or all of these may be carried out electronically and may therefore be covered by the concept of electronic commerce.”, WTO(198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WT/MIN(98)/DEC/2, May 25, p. 2.

4) 한미 FTA 제15.9조.

인터넷이 물리적 매개체를 구축하는 현재의 추세가 심화되면 될수록, 소프트웨어무역의 사이버(온라인)화라는 정성적(qualitative) 변화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무역의 정량적(quantitative) 확대 추세도 예상된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가시화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세간의 관심사로 부각된 제4차 산업혁명은 다면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의 기술혁신, 제조업의 구조혁신, 공유경제 등 그에 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의 구조혁신에 주목할 경우 제4차 산업혁명이 유발할 수 있는 변화의 시나리오가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r servitization)’이다. 이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은 불가피하게 소프트웨어무역 증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⁵⁾

그렇다면, 현재 진행형인 소프트웨어무역의 정성적·정량적 변화 양상이 글로벌 통상규범에 의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을까? 그에 관한 답은 부정적이다. 그 근본적 배경에는 전자상거래의 심화 또는 글로벌무역의 사이버화(이하, 디지털무역)를 둘러싼 주요국들 간 이해관계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협상⁶⁾의 결과물인 기존 국제통상규범은 인터넷의 보편화를 충실히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됨으로써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인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디지털 보호주의(digital protectionism)를 우려하면서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디지털 식민지화(digital colonization)를 우려하며 디지털 산업정책(digital industrial policy) 마련에 골몰해 왔다.⁷⁾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WTO(다자통상체제)에 의존하기보다 협상비용이 낮고 협상결과의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FTA(양자·지역통상체제)를 중심으로 디지털무역 통상규범의 진공상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FTA를 통해 자국의 통상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중국도 미국의 국제통상체제 주도권 행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디지털무역의 통상의제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

5)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그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소비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은민(2016),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15호(통권 629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고.

6) 1986년~1994년.

7) 주요국들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방임형(hand-off, 미국), 제한적 시장개입형(partial hands-on, EU), 적극적 시장개입형(hands-on, 중국) 등 디지털무역에 관한 정책기조가 상이하다.

력 원천으로 정보(data or information)와 지적재산권(IPR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적시하고, 무역상대국의 시장자유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WTO는 1998년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통상규범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여 왔다. 전 세계 ICT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무역의 상업적 중요성 및 활성화 전략에 주목하고, ‘디지털무역전략(digital trade agenda)’ 기치 하에 글로벌무역의 사이버화에 대응해 왔다. 미국이 감내해야 할 잠재적 손실이 그 어떤 국가보다 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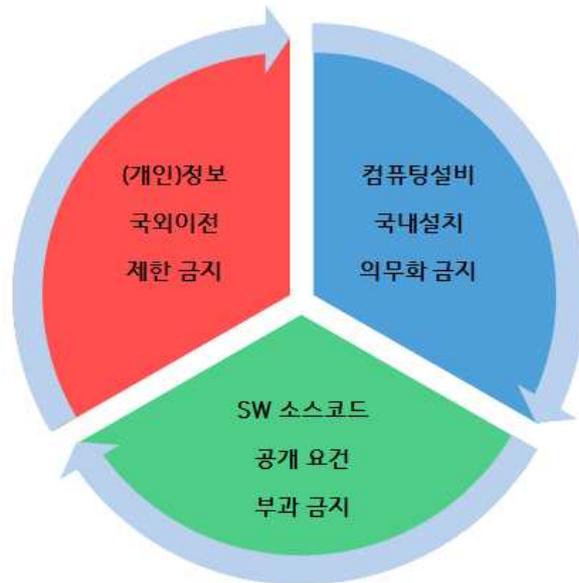
이러한 시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자통상체제 하에서의 논의 진전은 아직까지 저조한 상태이다. 이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선·후진국 간 그리고 주요 선진국 간 이해대립이 근본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한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무역 자유화에 관한 접근 방식이 미국 주도 하에 특정 산업분야 및 무역장벽 철폐를 겨냥하는 실용적·공세적 양상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여타 국가들의 움직임에서도 예전과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시화 및 디지털무역의 시장 확장성⁸⁾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부재로 인한 손실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논의의 주안점은 클라우드컴퓨팅⁹⁾ 관련 정보·컴퓨팅설비·기술(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관한 국내화요건 금지로 대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컴퓨팅설비의 국내설치 의무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건 부과 등 소위 ‘국내화(localization) 요건’ 금지에 관한 규범이 WTO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TPP, RCEP, 기타 FTA 및 양자 간 협력 차원에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는 목전에 성큼 다가 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무역의 관점에서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선제적·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8)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거래지역을 확장해 온 전통적 무역과 달리, 인터넷 및 ICT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무역은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한 시장의 지리적 제약이 없다.

9) 이용자 위치와 관계없이, 외부서버를 통해, 정보의 저장·처리 및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받는 일종의 IT기능 외주업무(outsourcing)로서, 전기요금처럼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에 기여함.

[그림 1-3] TPP 및 TiSA의 국내화(localization)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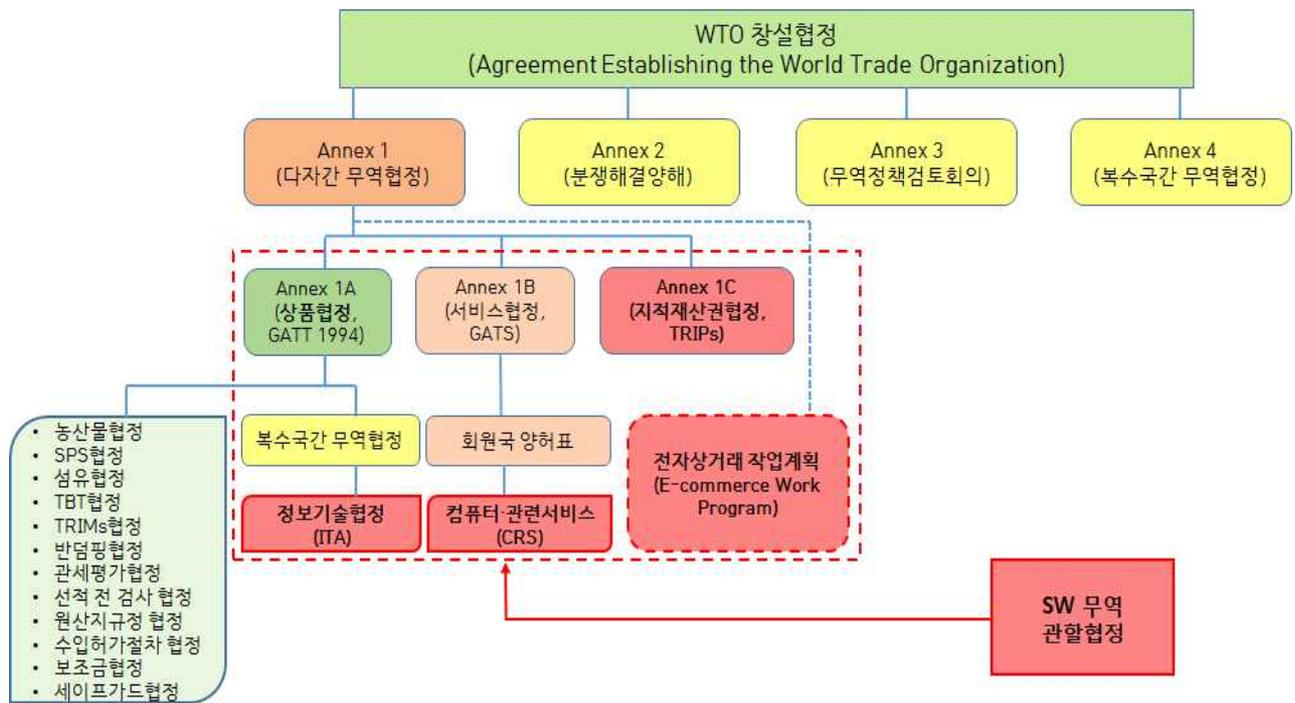
디지털무역의 확산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를 급속하게 퇴색시키고 있는 바, 점증하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¹⁰⁾ 방식의 서비스무역을 둘러싼 규제의 실효성이 세간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인접성에 의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국가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규제의 존재이유(raison d'être) 상실,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규제의 법적 관할권 분쟁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무역을 둘러싼 통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에 걸친 중첩이슈(cross-cutting issues)이다. 예컨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무역은 상품무역 분야의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서비스무역 분야의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양허표,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등 복수의 WTO 다자통상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FTA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범이 사이버 소프트웨어무역을 규율하는 지침으로 제정되고 있다. 이는 소프트

10)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하에서 서비스 공급방식의 하나로 규정된 “국경간 공급”은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되나,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 공급방식은 서비스 수입국 내에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사업체 설립을 수반하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임.

웨어무역에 관한 통상규범의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지배 구조에 대한 이해, WTO 출범 이후의 관련 통상규범 제정 동향 및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신종 통상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4] 소프트웨어무역에 관한 다자통상규범 지배구조



현행 국제통상규범의 근간이 마련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무역과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학술·정책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점 하에서 통상규범을 분석하거나, 최신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선행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소프트웨어산업 통상규범에 관한 포괄적·본격적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소프트웨어무역에 주목하기보다 특정 FTA 분석의 일환으로, 특정 이슈 및 특정 국가 중심으로 또는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ICT 각각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구들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 관점에서 다자·양자 통상규범을 포괄적·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논의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통상규범’이라는 관점 하에서 WTO 및

11) 일부 선행연구는 통상규범의 관점이기보다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또는 해외진출 촉진 관점에서 국내 제도 개선 및 파급효과 분석을 시도한바 있다. 이한영(2005),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활성화 정책 방안, 관세학회지 제6권 3호.

FTA 통상규범 세부내용을 포괄적·심층적·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통상현안 및 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무역과 관련한 WTO협정 및 다자협약 현황(제2장), 주요 FTA 상의 규범 및 최신 동향(제3장),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및 과세정책 동향(제4장)을 조사·분석한다.

제2장 SW무역에 관한 WTO협정 및 다자협약 규범 현황

본 장(章)에서는 인터넷 등 기술발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문제에 유념하면서 소프트웨어 유형별로 WTO 관할협정 소속을 판단하고, 관할협정별로 소프트웨어 무역을 규정하는 주요 통상규범의 현황을 분석한다.

제1절은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s) 등 소프트웨어 유형별 WTO 관할협정 도식화에 주로 할애한다. 제2절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에 관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하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하 ITA)’, 제3절에서는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와 관련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 하의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이하 CRS)’ 분야의 시장자유화 현황 및 쟁점, 제4절에서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E-commerce Work Program)’에서의 논의 및 성과 등을 점검한다.¹²⁾

마지막으로 제5절은 소프트웨어 무역의 지적재산권 분야 다자통상규범을 파악하기 위해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과 함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하에서 체결된 주요 다자협약에 관해 분석한다. 이는 법적 강제력을 동반하는 TRIPs가 국가별로 WIPO 이상의 보호수준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WIPO 하의 주요 다자협약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한다.

제1절 소프트웨어 무역에 관한 통상법적 관할

1. 소프트웨어 유형

소프트웨어의 유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구분기준은 없으나, 관행적으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s)로 구분한다.¹³⁾ 패키지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¹⁴⁾는 일반대중이 매장 진열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또는 우편주문 및 온라인으로

12)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다.

13) Fast Facts-Exporting Software, VEDP International Trade at www.exportvirginia.org.

구매하여 이용자 스스로 컴퓨터에 설치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의 기술지원 서비스는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된다.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는 글자 그대로 특정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특별히 고안·제작된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가 설치를 대행하며, 판매 이후에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s)는 공급자가 자신의 서버에 설치·관리하는 전유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로서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그때그때 사용하고 무료로 또는 미리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의 보편적 확산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신종 소프트웨어 유형이다.

2. 소프트웨어 분류 문제와 인터넷의 연관성

소프트웨어¹⁵⁾는 그 제작 목적, 공급 방식, 비용 지불 방식에 따라 상품적 속성과 서비스적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컴퓨터 자체의 구동이나 특수한 목적의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침(instructions) 또는 명령(commands)으로서 그 자체로는 무형재(intangibles)이다.¹⁶⁾ 다만, 그러한 지침·명령이 디지털 언어로 조합되어 CD 등 물리적 매개체(physical carrier medium)에 실리게 되면 유형재(tangibles)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상품(패키지 소프트웨어)으로 간주한다. 반면, 개별 이용자의 니즈(needs)에 대한 맞춤형 공급을 전제로 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전기(electricity) 소비처럼 소유 개념이 아닌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비하고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상품보다 서비스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러한 연유에서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WTO의 서비스무역 관할협정인 GATS 하에서 CRS의 일환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통상 현장에서 무엇이 상품이고 무엇이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기준은 늘 논란대상이 되어 왔으며, 기술의 발전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소프트웨어 분류 논란은 근본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중 어디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별 개방수준이 달리 평가된다는 전략적 고려와 연동되어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한다. 첫째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관세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품무역을 관할하는 GATT와 서비스무역을 관할하는 GATS 하의 무역자유화 수준이 상이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물론 최근의 소프트웨어 분류 논란을 증폭시킨 중요한 요인은 인터넷의 보편화와 밀

14) 미국에서는 ‘대량판매 소프트웨어(Mass Market Software)’로 지칭됨.

15) 종종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이라고도 지칭된다.

16) Althaf Marsoof(2012), “A Case for sui generis treatment of software under the WTO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20, No. 4, p. 293.

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간주할지, 서비스로 간주할지의 문제는 현재까지 미결과제이다.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E-commerce Work Program)에서 유일하게 합의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duty-free moratorium)’에서도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무역에 관한 한, 그러한 합의는 일견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수출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간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한 디지털 파일의 내용은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음악, 동영상, 게임, 자문보고서 등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그러한 디지털 파일의 내용을 관할하는 분야별 개방수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를 상품으로 분류할지, 서비스로 분류할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로 분류할지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출되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상품과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 합의가 부재한다. 이는 전적으로 개별국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시적 무관세의 객체를 생략한 채 전송행위(electronic transmission activity) 자체에 대한 무관세를 의미하는 모호한 문언인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는 무관세의 대상인 콘텐츠(contents)를 둘러싼 국제적 분류 논란을 일시 봉합시키고자 전향적으로 절충된 합의로 이해될 수 있다.¹⁷⁾

다자통상체제 하에서 서비스로 간주되어온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적으로 분류가 용이하다. 이는 GATS 차원에서 그 입지를 견지해 온 양허해석의 대원칙인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¹⁸⁾이 분류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으로 서비스의 한 분야인 CRS로 분류되어온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여전히 서비스인 CRS로 분류되며, 주문형 소프트웨어가 양허되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를 양허표(national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전송

17) 이러한 맥락에서 혹자는 이를 전자적 전송 단위(bit)에 부과되는 ‘비트세(bit tax)’로 비유한다. White & Case LLP(2015), The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arch 13, p. 2.

18) 시장개방 대상으로 이미 기재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래기술 활용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자동적으로 새로운 거래기술에 의한 서비스 공급도 개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일단 전화서비스시장이 개방되고 전화서비스 제공기술에 대한 제한을 양허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경우, 개방약속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전화서비스가 공급되더라도 개방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가용하지 않았던 인터넷전화(VoIP)는 전화서비스 양허와 관련하여 인터넷기술 활용에 대한 제한을 사전에 밝혀두지 않은 이상 자동적으로 개방대상으로 간주된다. WTO Document(2009),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R, August 12, 2009, para. 7.1258.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도 자동적으로 양허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의 보편화는 과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무역을 가능하게 했는바, 앞서 언급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GATS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통해 양허해석의 유연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신종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이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자유화 협상을 성과물을 기재하는 양허표를 작성함에 있어 개방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를 포지티브 기재(positive listing)¹⁹⁾에 의하도록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특정 서비스를 양허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 시장은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신종서비스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국가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툼의 문제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시장개방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와 시장보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신종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분류 및 양허 여부는 원칙적으로 WTO 개별 회원국의 고유권한이다. WTO 차원에서 현존하는 최신 양허표는 인터넷의 보편화 이전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이하 UR) 당시(1986년~1994년)에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양허표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개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내재한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이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전송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기술중립성 원칙 적용을 통해 양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같이 ‘주문-구매-소유’ 개념에 기초하기보다 과거에 부재하던 ‘(임차)사용-요금 지불’이라는 특수한 속성에 의한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 네트워크는 단순히 서비스의 전송방식 또는 전송기술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자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본원적·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3. 소프트웨어 무역의 협정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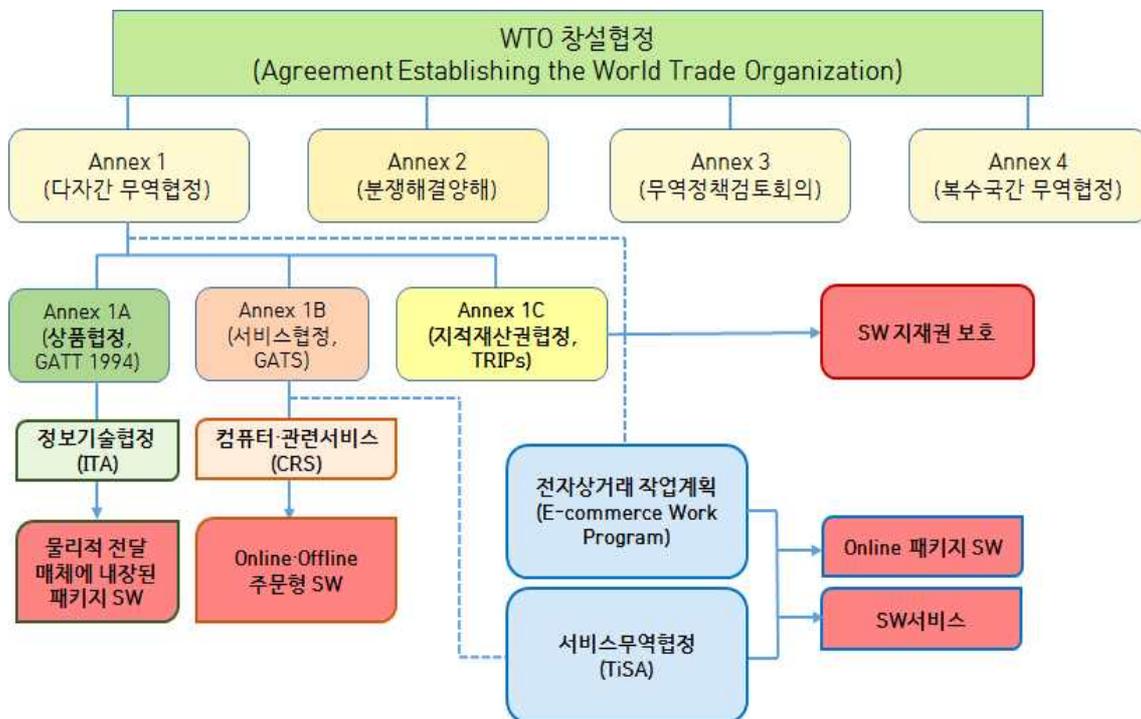
전통적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무역을 관할하여 온 다자통상협정은 상품무역에 관한 GATT이며, 서비스적 요소가 강한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다자통상체제 내에 서비스무역규범을 처

19) 일반적으로 GATS 하의 개별 양허표는 포지티브 기재(positive listing)와 네거티브 기재(negative listing approach)를 병행한다. 전자는 시장개방 대상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분야만 시장개방의 대상이며, 기재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장개방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후자는 시장개방 제한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약속으로서, 시장개방을 단행하는 국가가 부분적으로 제한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한조치를 양허표에 기재해야 한다.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제한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 만들어낸 UR을 통해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로 분류하여 이미 시장개방협상을 추진한바 있다. 즉, GATS가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관할하는 다자통상협정이라는 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이는 온라인이든 아니든 그 전달방식과는 무관하다.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분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WTO협정 관할 문제도 미제로 남아 있다. 정확히 말해,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논의 자체는 있었으나 답보 상태이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조차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할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로 분류할지, 기존의 국가별 양허표가 이들에 대한 개방 양허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개방 대상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개방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있을 뿐이다.

[그림 2-1] 소프트웨어 유형별 WTO 관할협정 개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최근까지 GATS 하의 복수국간 협상인 ‘서비스무역협정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이하 TiSA)’ 협상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에서 부분적으로 통상규범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왔다. 다른 아닌 ‘컴퓨팅설비(computing facilities)의 국내화(localization) 조치 금지’로서, 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²⁰⁾의 분류 및 시장개방 문제가 기존 GATT나 GATS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2절 정보기술협정(ITA)

1. 개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WTO체제 내에서도 통신서비스 및 정보기술 분야의 시장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 가운데 부가통신서비스와 기본 통신서비스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 부문은 각각 UR 및 그 연장선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는 UR을 통해, 기본통신서비스는 UR 후속협상인 소위 ‘기본통신협상(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을 통해 1997년 2월 시장개방에 관한 성공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한편, 상품부문에서는 1997년 4월 정보기술협정(ITA) 체결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수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이룰 수 있었다.²⁰⁾ 특히 ITA는 UR 종료 이후 기설의제(Built-in Agenda)²²⁾ 이외의 별도 협상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타결한 WTO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는 ITA의 배경, 내용 및 현황을 검토한다.

2. 배경 및 연혁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시 정보통신제품 세계무역의 약 83%를 차지하는 29개 국가, 14개 회원국들²³⁾이 정보기술제품의 국제무역 활성화를

2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이용자 위치와 관계없이, 외부서버를 통해, 정보의 저장·처리 및 SW 등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IT기능의 외주용역(outsourcing business)으로서, 전기요금처럼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자체 IT 인프라 및 장비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i) SaaS(Software as a Service) : 인터넷을 통한 응용프로그램 제공(Gmail, SNS 등), (ii) PaaS(Platform as a Service) : 이용자가 자신의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환경(플랫폼)에 접근하도록 함(Google App Engine, Microsoft Azure 등), (iii)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이용자가 정보처리를 위해, 또는 OS 및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를 전달·구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버 등 IT 하부구조 자원을 제공.

21) 2015년 12월 반도체 제조장비,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음향기기, 영상기기, 광학기기, 의료기기 등 200여개의 정보통신제품을 추가한 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이 타결됨에 따라 혹자는 당초의 정보기술협정(ITA)을 ‘ITA I’이라고도 지칭한다.

22) 일반적으로 모든 통상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협상당사국간 협상의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바, 기설의제는 기존 협정문 등에 특정 협상의제가 이미 명시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협상의제로 포함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UR을 통해 탄생한 WTO협정 가운데 GATS에는 2000년을 전후하여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상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가 명시되어 있다. 즉,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협상은 기설의제인 셈이다. 하지만 정보기술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은 UR 당시 WTO 출범 후 이를 추진한다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기설의제가 아니다.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정보기술무역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을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ITA는 정확히 말해 복수국 간 합의된 동 각료선언문을 의미한다.

ITA를 둘러싼 최초의 논의는 1993년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가 미국 정부에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EU의 수입관세 인하를 추진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²⁴⁾ 이에 따라 1995년 12월 미-EU 정상회담에서는 양자 간 정보기술협정 추진이 합의된다. 이는 EU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보기술협정의 외연 확대를 꾀하게 된다. 1996년 4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Quad) 각료회의에서 동 4개국은 ITA 추진에 합의하고, Quad 이외의 회원국 참여도 독려하기로 하였다.²⁵⁾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 만(Subic Bay)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는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ITA의 기초가 된 “수빅만 선언문(Subic Bay Declaration)” 을 채택되었고, 이것이 불과 한 달 후 WTO 차원의 ITA로 이어졌다.

ITA와 관련된 실무협상은 이듬해인 1997년 1월 31일에 타결되었다. 당시 협상참가국들은 관련제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이 동 협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동 협정을 자동적으로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²⁶⁾ 그런데 1997년 3월 26일 11개국이 추가로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기술제품 세계무역의 약 92.5%를 차지하는 회원국들 간 ITA가 공식 발효되었다. 당시 추가로 협정에 참여한 회원국은 코스타리카,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인도, 이스라엘, 마카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박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태국 등이다. 그 이후에도 다수의 회원국들이 동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2017년 현재 전 세계 정보기술제품 무역의 약 97%를 차지하는 총 81개 회원국이 협정에 가입한 상태이다.²⁷⁾

23) 호주, 일본, 캐나다, 한국, 대만(가입협상국), 노르웨이, EU(15개 국가),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동맹(customs union), 아이슬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등.

24) John S. Wilson, “Telecommunications Liberalization: The Goods and Services Connection“, in Unfinished Business: Telecommunications After the Uruguay Round, G. Hufbauer & Wada, eds. 1998.

25) 그 과정에서 European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Business Machines and Data Processing Equipment, Japan Electronic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등 그 과정에서 EU 및 일본의 민간협회가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26) 이러한 협상타결 방식은 일반적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위해 활용되어 온 ‘zero-for-zero’ 접근방식과 동일하다. 특정분야에서 제로 관세율에 동의하는 가입회원국들이 전체 교역량의 임계치(critical mass)를 넘는 경우에 한해 협정을 발효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협정 가입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가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고안된 협상발효 방법이다.

27)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taintro_e.htm.

3. 일반사항 및 소프트웨어 양허

ITA는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원칙에 기초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다시 말해, 동 협정에 참여한 회원국들만이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시행해야 하지만, 그러한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은 협정 참여국들은 물론이고 협정 참여국이 아닌 여타 WTO 회원국들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이는 무임승차(free-riding) 리스크를 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연유에서 ITA는 조건부 협정발효를 의미하는 관세인하 협상방식인 ‘zero-for-zero’ 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협정 참여국들의 숫자가 적정 임계치(critical mass)를 넘도록 한다면 그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전 세계 정보기술제품 무역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가입을 조건으로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것이다.

ITA는 선정된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 GATT 하의 기존 양허관세율을 수정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1단계(1997년 7월 1일), 2단계(1998년 1월 1일), 3단계(1999년 1월 1일), 4단계(2000년 1월 1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25%씩의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당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관세²⁸⁾를 달성하게 되었다. 개도국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일부 제품들에 대해 2005년까지 무관세를 위한 유예기간이 허용된바 있다. ITA의 대상품목은 반도체(semiconductor), 반도체 제조 및 시험 장비(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testing equipment), 컴퓨터²⁹⁾,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s),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computer network equipment), 소프트웨어(software), 통신제품(telecom products)³⁰⁾, 과학기구(scientific instruments) 등이며, 동 협정의 부속서(attachment) A와 B에 제시되어 있다.³¹⁾

〈표 2-1〉 ITA 대상품목 및 HS³²⁾ 번호

부속서 번호	HS 품목번호	품목
A (Section 1)	112	Computers and computer peripherals: Personal computers, laptops, work stations, monitors, keyboards, hard drives, CD-ROM drives, smart cards, printers, scanners, and other input/output units

28) 여기에서 관세는 통상적인 관세는 물론이고, “여타 모든 수입관세 및 부과금(all other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를 포함한다. 후자를 약칭으로 ‘ODCs’라 한다.

29) 예컨대, 본체, 키보드, 프린터, 모니터, 스캐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30) 예컨대, 전화기, 페이지(pagers), 화상전화기, 팩스, 교환기기, 모뎀, 무선(방송) 및 TV신호의 전송 및 수신기기 등.

31) 대상품목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 HS(Harmonized System) 체계에 따른 품목번호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32)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의 약칭임.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telephone sets, cordless phones, mobile handsets, pagers, answering machines, switches, routers, hubs, modems, fiber optic cables
		Semiconductors: microprocessors, integrated circuits, printed circuits, diodes, resistors
		Software on media including magnetic tapes, floppy and optical discs
		Office equipment: certain photocopy machines, fax machines, cash registers, adding machines, calculators, automatic teller machines (ATM)
		Scientific and measuring devices: spectrometers, chromatographs, flow meters, gauges, optical radiation devices
		Other: Loudspeakers, still digital cameras, parts
A (Section 2)	78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SME): etching and stripping apparatus, vapor deposition devices, sawing and dicing machines for wafers, spinners, ion implanters, wafer transport, handling and storage machines, injection molds, opt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B	1333)	Computers, electric amplifiers, flat-panel displays, network equipment, monitors, pagers, CD and DVD drives, plotters, printed circuit assemblies, removable storage devices, set-top boxes

자료 : Michael Anderson and Jacob Mohs(2010),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An Assessment of World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conomics, January, 2010, US ITC, p. 118.

이와 관련 ITA 대상품목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국한된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ITA 대상품목 목록에서 “디스켓, 테이프, CD 등 물리적 전달매체(physical carrier media)” 라고 기재하고, 그에 내재되는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ITA는 대상품목 목록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명기하기보다 소프트웨어가 실릴 수 있는 물리적 전달매체를 기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특이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고객주문에 따른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를 내재하는 전달매체는 ITA의 적용대상 전달매체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전달매체와 무관하게 표준화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상품으로 분류됨으로써 GATT 및 ITA의 적용대상인 반면, 서비스로 분류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GATS의 적용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3) 부속서 B에 포함된 품목들에 대한 정확한 HS 번호 부여는 아직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ITA에서 10개 민감 품목³⁴⁾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예외적으로 연장하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통해 2000년 1월 1일까지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양허하였다. 평균 양허세율 기준으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는 1997년 7월 11.1%, 1998년 1월 7.53%, 1999년 1월 3.7%로 인하되었다. 다만, 정보기술제품들 가운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경우에는 정보기술협정 양허와 관계없이 이미 UR을 통해 각각 1996년과 1999년부터 무관세를 양허한 상태였다.

제3절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시장자유화

1. CRS의 분류 소속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무역을 관할하는 WTO협정인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CRS에 대해 GATS상의 일반적 의무는 물론 양허협상의 결과물로서 양허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조건 하에서 시장개방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CRS 양허협상과 관련하여, UR협상은 서비스 분류지침(W/120)³⁵⁾을 활용하였다.

W/120에 기재된 12개의 대분류 서비스분야 가운데 하나인 비즈니스서비스(Business Services, 분류번호 1)의 하위 서비스에는 전문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1A),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1B), 연구개발서비스(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1C), 부동산서비스(Real Estate Services, 1D), 임대서비스(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1E)³⁶⁾, 기타 비즈니스서비스(Other Business Services, 1F) 등 6개 서비스가 포함된다.

〈표 2-2〉 비즈니스서비스(W/120의 분류번호 1)의 구성

W/120 분류번호	서비스 명칭	CPC 번호(참고)
1A	전문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86, 93
1B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84
1C	연구개발서비스(R&D Services)	85
1D	부동산서비스(Real Estate Services)	82
1E	임대서비스(Rental/Leasing Services without Operators)	83
1F	기타 비즈니스서비스(Other Business Services)	87, 86

34) 교환기, 유선전송장비, 무선전송장비, 인쇄회로, 셋탑박스(이상 2002년), 일체형 컴퓨터, 시스템형 컴퓨터, 기타 컴퓨터, 반도체 측정장비(이상 2004년).

35) W/120은 WTO 해당 문서의 번호인 MTN.GNS/W/120의 약칭이다.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1991),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Note by Secretariat, MTN.GNS/W/120, July 10.

36) 설비, 기기 등의 가동을 위한 운전인력 임대를 제외함.

2. CRS의 범주 및 구성요소

비즈니스서비스(Business Services) 하위항목인 CRS(1B)는 a. 자문서비스(Consultancy Services), b.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c. 데이터처리서비스(Data Processing Services), d. DB서비스(Database Services), e. 기타서비스(Other) 등 5개 세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서비스(CPC³⁷⁾ 841)는 컴퓨터(하드웨어)의 설치, 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문·지원(consultancy and support)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³⁸⁾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CPC 842)는 컴퓨터의 구동 및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문·지원(consultancy and support)은 물론이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한다.³⁹⁾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를 ‘IT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로 지칭하기도 한다.⁴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다양한 주문형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CPC 842)에 소속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W/120의 분류번호 1B)의 구성

W/120	CPC번호	CPC번호별 세부서비스 명칭	
a. 자문서비스 (Consultancy services)	841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b.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842	8421	System and software consulting services
		8422	System analysis services
		8423	System design services
		8424	Programming services

37) UN의 분류기준인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약어이다.

38) (841) consulting, strategy, analysis, planning, specification, design, development, installatio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debugging, updating, support, technical assistance, or management of or for computers or computer systems.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2), Coverage of CPC 84-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ctober 24, TN/S/W/6, S/CSC/W/35, p. 2.

39) (842) computer programs defined as the sets of instructions required to make computers work and communicate (in and of themselves), plus consulting, strategy, analysis, planning, specification, design, development, installatio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debugging, updating, adaptation, maintenance, support, technical assistance, management or use of or for computer programs. Ibid, p. 2.

40) 예를 들어, Softwar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Services, Application Development & Maintenance, E-procurement and B2B Marketplaces, Enterprise Security, System Integration, SCM,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Web Services(Internet Content Preparation, etc.), Web-hosting and Application Service Provider(ASP) 등은 대표적인 IT서비스에 해당된다.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2004), OECD, p. 90.

		8425	System maintenance services
c. 데이터처리서비스 (Data processing services)	843	8431	Input preparation services
		8432	Data-processing and tabulation services
		8433	Time-sharing services
		8439	Other data processing services
d. DB서비스 (Database services)	844		Database services
e. 기타서비스 (Other)	845		-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849		- Other computer services - Data preparation services (not involving data processing services) - Other computer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like training services for staff of clients)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 및 DB서비스(CPC 844)에는 데이터의 처리, 저장, 호스팅(hosting) 또는 DB 이용⁴¹⁾ 등 복수의 서비스가 포함된다.⁴²⁾ 데이터처리서비스 가운데 Time-sharing서비스는 데이터의 처리 및 도표화 대행(tabulation services)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서비스이지만, 그러한 목적의 서비스를 위한 시간 단위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⁴³⁾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에는 데이터의 입력·처리를 대행하는 단순 서비스만 포함될 뿐,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 등 고도화된 활동을 수반하는 서비스는 동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금융, 시청각, 유통 등 고유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일반적 기업은 각기 자신이 구축·보유하는 전유정보(proprietary information)에 대한 상업적·전략적 가치를 중시한다. 쉽게 말해, 전유정보는 CRS의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가 아닌 기업의 각자 활동영역인 서비스 분야에서 규정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시장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수반되는 금융정보 자체와 그 수집·가공·활용 등은 CRS 소속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41) 기 구축된 DB 자료를 통신망을 통해 활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 그러한 과정에서 개재되는 전송(Transmission) 행위는 데이터통신서비스로서 통신서비스 소속이다.

42) (843, 844) data processing, data storage, data hosting or database services.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2), Coverage of CPC 84-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ctober 24, TN/S/W/6, S/CSC/W/35, p. 2.

43) “This seems to be the same type of services as 84320(Data-processing and tabulation services). Computer time only is bought; if it is bought from the customer’s premis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re also bought. Data processing or tabulation services may also be bought from a service bureau. In both cases the services might be time sharing processed. Thus,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84320 and 84330(time-sharing services). Ibid, p. 4.

3. CRS의 시장자유화 현황

통신서비스 분야와 달리 상대적으로 CRS 분야는 UR협상에서 상당한 시장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⁴⁴⁾ WTO 사무국 분석에 따르면, CRS 분야에 대한 양허표 제출국 수는 EU를 단일 회원국으로 간주할 때 총 83개국이다.⁴⁵⁾ 이 가운데 73개국이 자문서비스를, 78개국이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를, 76개국이 데이터처리서비스를, 69개국이 DB서비스를, 51개국이 기타서비스를 양허했다. CRS의 5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양허한 국가는 총 83개 국가 중 60개 국가(약72%)에 달한다.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⁴⁶⁾별로 살펴본 양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총 83개 회원국 중 약 62%~70%가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한 아무런 제한조치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허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제한조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주로 법인체(legal entity)의 유형 및 외국인 지분참여에 대한 제한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외소비(mode 2)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많은 약 65%~72%가 제한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양허표에 ‘전면제한(unbound)’을 흔하게 기재하는 개도국들과 달리, 선진국들은 공히 세부 양허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에 대해 ‘전면제한’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⁴⁷⁾ 자연인 이동에 대한 전면개방 비율은 매우 낮아 4~7%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수평적 양허 제한사항을 감안하면 2%대로 낮아진다.⁴⁸⁾

〈표 2-4〉 주요 CRS 수출국 등의 GATS 양허 개요

국가	자문서비스	소프트웨어 운용서비스	데이터처리 서비스	DB서비스	기타서비스	양허 총수
유럽연합	●	●	●	●	●	5
인도	●	●	●	●	●	5
미국	●	●	●	●	●	5
이스라엘	●	●	●	●	X	4

44) 이는 UR협상 당시 동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무역장벽, 정부지원 또는 국가독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5) 2009.5월 현재 기준, 유럽연합(EC)을 단일 회원국으로 간주할 경우임.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9),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300, June 22.

46) GATS가 국가별 양허와 관련하여 네거티브 접근에 의해 제한조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더 나아가 GATS는 양허표에서 그러한 제한조치를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별로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절의 〈표 2-7〉 등 관련 내용을 참고할 것.

47) Ibid, paras. 20.

48)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0), GATS 2000 :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S/CSS/W/35, December 22, paras. 34~35.

캐나다	●	●	●	●	●	5
노르웨이	●	●	●	●	●	5
호주	●	●	●	X	●	4
러시아	●	●	●	●	●	5
말레이시아	●	●	X	●	X	3
코스타리카	●	●	●	●	X	4
아르헨티나	●	●	●	●	●	5
홍콩	●	●	●	●	X	4
한국	●	●	●	●	●	5
우루과이	●	●	●	●	●	5
스리랑카	X	X	X	X	X	0
중국	●	●	●	X	●	4
일본	●	●	●	●	●	5
뉴질랜드	●	●	●	●	X	4
싱가포르	X	●	●	●	X	3
대만	●	●	●	●	●	5
태국	●	●	●	●	X	4
베트남	●	●	●	●	●	5
멕시코	X	X	●	X	X	1
양허국 총수(83)	73	78	76	69	51	

자료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9),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300, June 22, WTO Document(2012), Russian Federation -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149, November 5, 2012.⁴⁹⁾

개도국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DB서비스(1B.d)와 자문서비스(1B.a)의 국경간 공급(mode 1)에 대해 ‘ 전면제한 ’ 을 기재한 점은 특징적이다.⁵⁰⁾ 개도국들 가운데 인도, 코스타리카, MERCOSUR⁵¹⁾는 자연인 이동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에 대한 과도한 출입국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며, 기타 소프트웨어 생산자가 부담하는 차별과세, 자격요건, 면허요건, 기술표준 등에 대해서도 제한조치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회원국들이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의 자연인 이동(mode4)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전문직 인력의 입국에 대한 정량적 규제 철폐, 단기비자 발급절차의 간소화, 비자

49)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9), Table A2 상의 2006년 수출 순위(1위~15위)를 기준으로 Table A1을 재구성함. 참고로 15위(스리랑카) 이하의 중국, 일본 등은 아태지역 현황 파악 차원에서 포함. 러시아 및 스리랑카의 양허내용은 <http://i-tip.wto.org/services/Search.aspx>를 참고.

50)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9),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300, June 22, paras. 21.

51)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주요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1991년 창설된 경제 공동체이다. 2012년 정회원국 지위를 획득했던 베네수엘라는 자격정지 상태이다.

발급 체계의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⁵²⁾

한편, 현재까지 WTO의 DDA협상에서 이루어진 양허협상 진전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제출된 양허안의 숫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국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의 분류 문제에 대한 논의 지연이 양허협상 부진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다른 서비스분야와 마찬가지로 DDA협상 성공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 저하와 선·후진국간 존재하는 시장자유화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절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논의와 성과

1. 개관

전자상거래 통상현안에 관한 WTO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⁵³⁾ 동 각료회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⁵⁴⁾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첫째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duty-free moratorium)⁵⁵⁾이고, 둘째는 전자상거래의 분야별 쟁점 검토를 위한 작업계획(Work Program)의 수립 명령이다.⁵⁶⁾

<표 2-5> WTO 분야별 이사회 의 검토 의제

이사회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하의 소관 현안
상품무역이사회	전자상거래에 대한 GATT 규범 및 양허의 적용 가능성 : 시장접근,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관세, 기술표준, 원산지 규정, 전자적 전송의 분류문제 등
서비스무역이사회	전자상거래에 대한 GATS 규범 및 양허의 적용 가능성 : 전자적 전송의 분류문제,

52)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2), Negotiating Proposal on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munication from India, S/CSS/W/141, March 22, S/CSS/W/141/Corr.1, April 11.

53) WTO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로 공식 정의된다. WTO General Council(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25, para 1.3.

54) WTO Ministerial Conference 2nd Session(199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May 18 and 20.

55) 구체적으로 동 각료선언문은 “회원국들이 차기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현행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members will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the next Session.)” 고 기재한다.

56) “Ministers, ~ Declare that The General Council shall ~ establish a comprehensive work programme to examine all trade-related issues relating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those issues identified by Members.”

	전자적 전송의 서비스 공급방식,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관련 전자적 전송과 비전자적 전송의 동종성 문제, 인터넷망과 공중통신망간의 관계,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참조문서 적용, 투명성 요건, 기술표준, 자격요건의 상호인정, 등
지적재산권이사회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유효성
무역개발위원회	전자상거래의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영향 (특히 mode4), 전자상거래의 개도국 관세 수입에 대한 영향,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적, 인적 하부구조 개발을 위한 체제 등

자료 : WTO General Council(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25.

이에 따라 1998년 9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상품무역이사회(GATT Council), 서비스무역이사회(GATS Council),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 Council),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rade and Development)로 하여금 각각의 전자상거래 현안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작업계획을 채택한다.⁵⁷⁾ 일반이사회는 현안을 분야별 이사회에 배분하고 분야별 이사회 간 중첩되는 현안을 조율하는 등 논의 전반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WTO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제정 시도가 적어도 그 출발선 상에서는 기존 WTO 통상규범의 틀 내에서 통상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비스무역 및 지적재산권 통상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GATS나 TRIPs와 같은 새로운 다자통상규범을 제정했던 UR에서의 접근방식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WTO 제10차 각료회의(나이로비)까지 개최된 현재 시점에서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은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이외에는 이렇다 할 공식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는 사실상 잠정적·정치적 합의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 관점에서 명백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⁵⁸⁾

이와 같은 극히 부진한 성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선진국-개도국 간 참여한 이해갈등이 표면적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통상현안을 기존의 WTO협정 틀 내에서 해결해보겠다는 동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초기 구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GATT와 GATS 체계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현상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에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간 참여한 이해충돌로 인해 일부 전자적 전송의 대상물⁵⁹⁾에 대한 통상법적 관할을 정리

57) WTO General Council(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30.

58) 각료선언문은 WTO협정상의 ‘covered agreement’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적 전송에 대해 한시적 무관세를 위반해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 WTO 분쟁해결양해(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I:1 참고.

해낼 수 없었던 것이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부과 : 기존 관행 및 현행 규범

상품무역에 관한 GATT 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HS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기초한다. HS체계에 따른 상품 분류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만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최종적 용도는 그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 최종적 용도가 컴퓨터 자체의 구동이나 특수한 목적의 컴퓨팅을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지침(instructions) 또는 명령(commands)인 무형재(intangibles)로 인식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⁶⁰⁾ 자체는 HS체계에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그 대신 CD, 레이저디스크, 테이프 등 전달매체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왔다.⁶¹⁾

이러한 배경 하에서 GATT 체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소프트웨어 관세부과의 일반적 관행은 전달매체에 내재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value)가 아닌 전달매체의 가치만을 고려하여 관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매체의 가치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내재하는 수입 전달매체에 대한 관세를 결정함에 있어 전달매체 자체의 가치만 고려한다는 것이다.⁶²⁾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전달매체가 아닌 새로운 전자적 전달매체(예컨대, 인터넷)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행이 글자 그대로 연장·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인터넷 등 전자적 전달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소프트웨어는 전달매체 자체의 가치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전통적 의미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취급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59) 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위시해 서적, 음악, 영화, 게임 등 전통적으로는 물리적 전달매체에 실려 공급되어 왔으나, 인터넷 등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게 된 소위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를 의미한다. 참고로 미국이 체결한 FTA는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를 “전달매체에의 저장 또는 전자적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암호화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텍스트, 비디오, 영상, 음향 레코딩, 및 여타 다른 재화(digitally encoded form of computer programs, text, video, images, sound recordings, and other produc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라고 정의한다.

60) 이하, 별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61)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2002), Computer Software: International Trade Flows Identifying Imports and Exports of Software Goods and Services, Point 4, Draft paper prepared by Bill Cave, OECD/STD/TIASDRAFT; prepared for the meeting of the OECD-EUROSTAT National Accounts Software Task Force, April 22-23, 2002, p. 4f.

62) 다만, 이러한 결정이 적용되는 콘텐츠에는 음향(sound), 영화(cinema), 비디오(video) 등 시청각물(audiovisual products)이 포함되지 않는다. WTO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2013), Proposal for Updating the “Decision on the Valuation of Carrier Media Bearing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Equipment”, G/VAL/W/241, November 22, 2013, Annex.

전자적 전송에 의해 수입되는 소프트웨어를 HS체계에 따른 GATT의 관할대상(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다자통상규범의 공백을 의미한다. 관세부과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IT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이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수입되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여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통상규범이 부재하다는 것이다.⁶³⁾ ITA는 물리적 전달매체에 내장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관세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WTO 각료선언을 통해 전자상거래 현안들 중 유일하게 통상규범화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는 WTO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잠정적으로 관세부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그러한 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WTO가 포괄적으로 정의한 전자상거래의 가치사슬(value chain) 하에서 탐색, 주문, 지불 등 나머지 거래행위가 설령 인터넷으로 처리되더라도 배송(delivery)이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각료선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WTO 각료선언 상의 전자적 전송은 비록 전송의 객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송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의 모든 거래단계가 전자적으로 완결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물리적 전달매체를 통해 비전자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소프트웨어는 GATT의 기존 관행에 따라 그러한 전달매체의 가치만으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하며, 결론적으로 ITA 가입국에 한해서는 무관세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앞에서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WTO 각료선언 상의 한시적 무관세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적 전송 단위(bit)에 부과되는 일종의 ‘비트세(bit tax)’인 셈이다. 이는 마치 인터넷을 새로운 전달매체로 간주하는 것에 진배없다는 점에서 전달매체의 가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온 GATT의 기존 관행과 유사하지만, 물리적 전달매체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적용대상으로 한정된 GATT의 기존 관행을 그대로 연장·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동 각료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회원국이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WTO 차원의 통상규범이 아직 부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63) Sacha Wunsch-Vincent(2002), “Outstanding WTO Issues and Deliverables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 Cross-border Trade of Digital Products”, for discussion during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etition, Cultural Variety and Global Governance: The Case of the Global Audio-visual System, October 19, p. 24.

셋째, 혹자는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 따라 물리적 전달매체에 의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어 온 GATT 하의 기존 관행을 그대로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에 연장·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 우선,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의 분류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 만일 전자적 전송과 소프트웨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면, 전자적 전송은 전송의 대상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전달매체가 아니다. 이 경우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상품)와 상품(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조합물일 뿐이지,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⁶⁴⁾ 각국이 이에 관한 합법적인 분류 권한을 보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간주할 경우에는 GATT 하의 기존 관행을 그대로 연장·적용하기 위해 GATT와 GATS 간 기술중립성 원칙 적용을 전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WTO체제 하에서 협정 간(inter-agreement) 또는 서비스 공급방식 간(inter-modal) 기술중립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중립성 원칙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

3. 소프트웨어의 법적 관할 : GATT인가, GATS인가?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차원에서 특히 분류 논란이 집중된 거래 대상물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가 아닌 전자적으로 전달되어 온 상품이다. 당초 서비스로 분류되어온 거래 대상물의 경우에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비스 분류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거래 대상물은 물리적 전달매체를 통해 공급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자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소위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거 CD와 같은 물리적 전달매체를 통해 공급되어 왔음에도,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훨씬 더 용이하게 전자적으로도 공급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분류할지, 서비스로 분류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관할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개별국의 고유한 권리에 속한다.

〈표 2-6〉 GATT 및 GATS의 규범체계 개요

구분	GATT	GATS
내국민대우 원칙	일반적 의무	선택적 의무 (구체적 약속)

64) GATT의 기존 관행 하에서 사실상 물리적 전달매체와 일체를 이루는 객체로 간주한 시청각물(audiovisual products)도 그 예이다.

최혜국대우 원칙	일반적 의무(특혜지역협정, 개도국 예외)	일반적 의무 (한시적 예외)
관세	비양허 분야에만 부과 가능	해당사항 없음 (무조건 내국민대우 양허 시 차별 불가)
쿼터	일반적 의무 (긴급 상황 예외 허용)	선택적 의무 (구체적 약속)
투명성	일반적 의무	일반적 의무
기술기준	하위 협정	선언적 조문
보조금	하위 협정	선언적 조문
반덤핑	하위 협정	무
긴급수입제한	하위 협정	선언적 조문
원산지 규정	하위 협정	무

이는 근본적으로 GATT와 GATS 간 상이한 규범체계로부터 비롯된다.⁶⁵⁾ 전자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에 대한 전면적·수평적 무역자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반면, 후자에서는 포지티브 열거(positive listing)에 기초하는 국가별 양허표가 실질적으로 무역자유화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GATS 규범의 특수한 구조 때문이다. GATS는 시장자유화의 핵심인 정량적 제한조치와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의무가 GATT에서처럼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에 규율되기보다 회원국이 양허표에 명기한 조건인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에 기초한다. 심지어 최혜국대우(MFN) 의무조차 GATS에서는 UR을 통해 한 차례 회원국으로 하여금 예외적 일탈의 기회를 열어둔 바 있다.⁶⁶⁾ 다시 말해, GATT에 비해 GATS가 WTO 회원국에게 정책적 재량권 행사의 상대적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분야 강국인 미국이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디지털재화)를 상품으로 분류하여 GATT 관할을 주장하는 반면, 시청각물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이 패키지 소프트웨어(디지털재화)를 서비스로 분류하여 GATS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이유 때문이다.⁶⁷⁾

4. 전자적 전송과 주문형 소프트웨어 무역

주문형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구성항목인 CRS로 분류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GATS 규범 하에서 주문형 소프트웨어가 전자상거래(전자적 전

65) WTO(2002), Communication from Canada to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8 May 2002, JOB(02)/38, para 45.

66) UR 및 그 후속협상에서 허용된 최혜국대우(MFN) 의무 면제신청을 말한다.

67)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2007), 디지털@통상협상, 삼성경제연구소, pp. 85~92 참고.

송)에 의해 국가 간 거래되는 현상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여기에서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국가 간 무역의 대상(객체)이고, 전자적 전송은 국가 간 무역의 특수한 기술적 방식 또는 국가 간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술적 플랫폼(전달매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전자적 전송은 기술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S의 기술중립성 원칙 수용 여부는 시장자유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GATS 하에서 일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주기적 협상에 따라 개선되는 국가별 양허표에 의해 결정되는바, 특정 시점에서의 국가별 양허는 현실적으로 미래 기술을 반영하기 어렵다. 만일 기술중립성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협상을 통해 기술발전을 국가별 양허표에 반영하는 작업을 요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국가가 UR 당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전면개방 한다고 양허했다 하더라도, 양허 시점에서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양허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ATS의 기술중립성 원칙은 양허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협상비용을 절감하는 법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GATS는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을 ‘국경간 공급(Cross-border)’,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⁶⁸⁾, 양허표 상에서 서비스 공급방식 별로 시장개방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⁹⁾

〈표 2-7〉 GATS의 서비스 공급방식

서비스 공급방식	서비스 전달 장소	국가 간 이동 주체	공급자의 법적 실체
국경간 공급 (mode 1)	소비자 주재국	없음	기업(법인)
해외소비 (mode 2)	공급자 주재국	소비자	
상업적 주재 (mode 3)	소비자 주재국	공급자	
자연인 이동 (mode 4)	소비자 주재국	공급자	자연인

국경간 공급(mode 1)은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 이라고 정의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상품무역과 차이점이 없다. 서비스무역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68) GATS 제I.2조.

69) GATS 제XVI.1조.

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각기 자국 영토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해외소비(mode 2)는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 “이라고 정의된다. ‘소비자의 이동(movement of the consumer)’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자의 영토 내에서 전달된다는 것이다. 상업적 주재(mode 3)는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 으로 정의되며, 회사 형태인 ‘공급자의 이동(movement of the supplier)’ 을 통해 서비스가 소비자의 영토 내에서 전달된다는 것이다. 자연인 이동(mode 4)은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a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급” 으로서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주재국에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주재와 동일하지만,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자연인이라는 점에서 그와 상이하다.

유념할 사항은 서비스 공급방식 구분이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소속국적이 어디인가, 그리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GATS의 서비스 공급방식과 서비스 전송방식(mode of delivery)은 개념적으로 중첩되지 않는 독립적 기준에 의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국가 간 무역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리적 주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 간 무역의 실현을 위해 동원되는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GATS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방식과 서비스 전송방식(mode of delivery)은 개념적으로 중첩되지 않으며, GATS의 기술중립성 원칙은 서비스 공급방식별로 명시된 국가별 시장개방 조건이 어떠한 서비스 전송방식(mode of delivery)을 전제하더라도 상이하게 이해되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의해 도출·합의된 것이 아니라, 일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임에 따른 것이다. WTO 패널은 US-Gambling 사안에서 국경간 공급(mode 1)에 관한 양허가 전자적 수단(electronic means)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포함한다고 평결한바 있다.⁷⁰⁾ 더 나아가,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안의 패널과 상소기구는 GATS 양허표가 양허가 이루어질 당시 고려될 수 없는 기술발전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바 있다. 동 사안에서 중국은 유통서비스

70) WTO Document(2004),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November 10, 2004, para. 6.285.

(distribution services)에 대한 자국 양허가 디지털 형태(digital form)가 아닌 물리적 형태(physical form)의 재화(products)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GATS가 충분히 동태적(sufficiently dynamic)이기 때문에 쉽 없는 기술변화 환경 하에서 회원국들이 협정 또는 그 양허내용을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⁷¹⁾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GATS는 국경간 공급(mode 1) 하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배송수단(means of delivery)을 제한하지 않는다.” 는 US-Gambling 사안의 패널 입장을 인용했다.⁷²⁾ 동 사안의 상소기구도 중국의 GATS 양허표에 기재된 음성녹음(sound recording) 및 유통(distribution) 등 관련 용어가 “충분히 포괄적(sufficiently generic)”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는 시간 및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패널 입장을 지지했다.⁷³⁾

상기 논의에 기초할 때, 주문형 소프트웨어 무역에 관한 국가별 GATS 양허에 대한 해석은 비교적 분명하다. 우선 전자적 전송이라는 특수한 배송수단은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 이동(mode 4) 등 모든 GATS의 서비스 공급 방식별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전자적 전송이 상기 네 가지 서비스 공급방식 가운데 일부에서만 활용 가능한 배송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⁷⁴⁾ 또한 GATS 하에서 그러한 양허가 이루어진 시기가 과거 UR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무역 자유화를 위해 별도의 새로운 협상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UR 당시 이미 양허표 내에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무역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국가는 전자적 전송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UR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 WTO에 신규 가입하면서 CRS를 양허한 국가들 가운데 전자적 전송을 불허한다고 명시한 사례는 부재하다.⁷⁵⁾

71) “the GATS is sufficiently dynamic so that Members need not renegotiate the Agreement or their commitments in the face of ever-changing technology.”

72) “the GATS does not limit the various technologically possible means of delivery under mode 1.” WTO Document(2009),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R, August 12, 2009, para. 7.1160.

73) WTO Document(2009),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AB/R, December 21, 2009, para. 296.

74)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하에서 미국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의하지 않는 국가 간 온라인 서비스무역이 GATS의 서비스 공급방식 중 국경간 공급(mode 1)이 아닌 해외소비(mode 2)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의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와 같이 해석한 것이다. 물론 US-Gambling(2004) 사안은 그러한 경우가 해외소비(mode 2)가 아닌 국경간 공급(mode 1)에 해당된다고 판정한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2007), 디지털@통상협상, 삼성경제연구소, pp. 97~100 참고.

75) <http://i-tip.wto.org/services/Search.aspx>.

제5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자협약

1. 개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노력들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1883년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1886년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 1961년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한 로마협약, 1971년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베른협약, 1989년 집적회로에 한 지식재산권조약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해당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해당국 정부,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협약, 그리고 UN산하 WIPO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교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자유무역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무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TRIPs는 1967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971년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961년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1989년 집적회로에 관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협약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TRIPs에서 이들 협약의 실제규정을 인용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⁷⁶⁾

2. TRIPs

가. 연혁과 특징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기존의 GATT 체제 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의 보호내용도 매우 미흡했다. 이 때문에 배타적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지식재산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간에 마찰을 초래하였다.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유산론(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을 주장하며 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지식재산권

76) 문병철(2011), WTO와 국제통상규범, 국회사무처, 172면.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해적상품의 유통 문제에 국한하고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문제는 WIPO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선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WTO TRIPs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협정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WTO 설립 협정 시행 후 5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에 대하여는 이보다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⁷⁷⁾ 즉, WTO는 지난 2013년 6월 1일 최빈국(LDCs)에 대한 TRIPs 유예기간을 2021년 7월 1일로 추가 연장했다.

TRIPs에서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2부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표시권, 산업디자인권, 특허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을 지식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TRIPs 제1조 제2항). 그러나 WIPO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2조 제8항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① 문학·예술과 과학 작품, ② 연출·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산업디자인, ⑥ 등록상표·서비스마크·상호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 등에 관한 권리, ⑧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생성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기술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 발명과 새로운 문학·예술 작품의 저작과 새로운 연출·공연·방송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TO TRIPs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WTO 협정의 제1부속서 C(Annex 1C)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이는 TRIPs협정이 일반협정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WTO 체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자동적으로 TRIPs 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RIPs는 다른 협약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의 두 주류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논의하던 전통적인 이분법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권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 각 회원

77) 원래 개발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GATT 제36조와 같은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을 규정해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적용 예외를 인정치 않고 시행 유예기간을 주는 쪽을 택했다. 이를 통해 규범의 완결성을 침해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폭넓은 참여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국에게 경제조치 및 유효한 법적 보상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일부 조항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들 조항의 실제 이행은 궁극적으로 각 회원국 국내법의 집행법의 존재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파리협약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그리고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제6조의2 제3항, 제13조 제3항 및 제16조는 각각의 협약들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지만, 그 실제 이행은 각 회원국 국내법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TRIPs는 기존협정 플러스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WTO 협정은 그 자체만으로 해석이 가능한 완전한 형태의 협정인데 반해, TRIPs는 -앞의 개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협정의 내용들을 원용하고 있다. 이는 TRIPs 협정이 이들 협약의 실제 규정들을 준용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보호 수준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⁷⁸⁾ 특히 선진국들은 파리협약의 분쟁해결차에 강제력이 없으므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실제적으로는 파리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절차적으로는 GATT의 분쟁해결차를 이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가 TRIPs 제2조이다. 이로 인해 파리협약 비가입국도 파리협약을 위반할 경우 WTO 분쟁해결기관에 제소되어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보호범위

TRIPs에서 보호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8가지이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권, 집적회로 배체설계, 미공개 정보의 보호(영업비밀보호) 및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행위의 규제이다.

이들 중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주로 저작권이 문제될 것이므로 저작권 및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TRIPs 협정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정 플러스 정신에 입각함을 천명하는 동시에, 베른협정 제6조의2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반대로 베른협정 마이너스 어프로치를 취해 저작인격권을 국내에서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TRIPs의 베른협정 플러스 어프로치로 인해 WTO 회원국은 베른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971년 베른협정 제1조부터 제21조 및 부속서를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제6조의2는 제외).

TRIPs 상의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생존기간 및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이다. 또한 TRIPs 협정에서는 베른

78) 제2조:

1. 이 협정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수한다.
2. 이 협정의 제1부에서 제4부까지의 어느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식재산권협약에 따라 회원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협약 상의 저작권 보호대상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로 보호하고 있다.⁷⁹⁾ 베른협약 상 저작물의 범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것이 포함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베른협약에 의하면 보호범위를 “그 표현의 어떤 방법과 형태에 상관없이 어문, 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의 모든 생산물”에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이고(제2조 제1항),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문 분야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TRIPs 입안자들은 베른협약의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TRIPs 협정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서 명시(expressis verbis)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았다.⁸⁰⁾

TRIPs 제11조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의 대여권에 대해 하나의 원칙과 두 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⁸¹⁾ 이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의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대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상업용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를 규정할 수 있는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⁸²⁾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1조) 그러므로 만일 대여한 대상이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것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거나 부수적일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⁸³⁾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TRIPs협정에서 집적회로 배치설계(IntegratedCircuitlayoutDesigns)의 보호근거는 1989년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약(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이하 IPIC)이다. TRIPs에서는 IPIC의 실체적인 규정에 부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협약에 보호대상으로 되는 것은 “집적회로(IC:Integrated Circuit) 배

79) 제10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 또는 목적코드의 형태이든 베른협약(1971)에 따라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80) WIPO(2012), Implic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on Treaties Administered by WIPO, p. 17.

81) 제11조 (대여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대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2) 대여권(rental right)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점 등에서 다수의 공중에게 대여할 경우 저작물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저작자의 재산권 이익이 그만큼 손실이 됨으로써, 저작자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배타적 허락권이나 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권리이다.

83) WIPO, *supra*, p. 29.

치설계”, “IC칩”, “IC칩이 내장된 최종제품” 등 3단계로 그 보호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먼저, IC배치설계(LayoutDesign)는 반도체기판위에 전자회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관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IC를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보호대상은 배치설계만을 의미한다. 이는 배치설계 도면에 나타난 창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프트웨어와의 관련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 주요 내용

TRIPs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즉 일반원칙으로 최소보호수준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 및 투명성 원칙이 있다. 첫째, 최소보호수준 원칙이란 국제 협정을 최저보호수단으로 하여 그 이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주자는 원칙이다. 이는 회원국이 TRIPs 협정의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TRIPs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음을 의미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⁸⁴⁾ 이 원칙은 각 회원국이 국내 필요성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엄격히 하는 것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양자 협상 체결 시 보호수준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낮지 않은 수준의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⁸⁵⁾ 그러나 내국민대우 원칙은 WIPO가 주관하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다자간 협정을 포함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제3조 제2항).

셋째, 최혜국대우 원칙이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어느 회원국이 특정한 다른 국가에 부여한 모든 특혜조치는 무조건 그리고 즉시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⁸⁶⁾ 이 원칙은 GATT에서는 일반원칙이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존의 협정에서

84) 제1조 제1항: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실시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법을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85) 제3조 제1항: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식재산권협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Re.3)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86) 제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는 도입된 적이 없었다가 TRIPs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출원, 등록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 분야에서 당해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내국민대우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즉 예전에는 지식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교역상품에 체화된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교역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최혜국대우 원칙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TRIPs에서 최초로 다루게 되었다. 또한 TRIPs 제4조에서는 다른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any country)에 대한 특혜를 최혜국대우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부여한 특혜조치에도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성 원칙이란 WTO 체제의 기본원칙으로서, 각 회원국의 법이나 제도의 운용이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밖에 일반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TRIPs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칙으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있다.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란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특허상품 포함)을 일반 판매하면 최초의 판매로써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가 소진됨으로써 원권리자는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을 매수한 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TRIPs 제6조에서는 분쟁해결 목적으로 TRIPs 협정이 권리소진 문제를 다루는데 이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⁸⁷⁾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 이 두 조약은 분쟁 해결의 목적이든 여타 다른 목적이든 간에 권리소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반해,⁸⁸⁾ TRIPs 제6조에서는 권리소진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회원국은 자유롭게 권리소진 및 병행수입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WIPO

가. 배경과 연혁

WIPO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다.⁸⁹⁾ 이 기구가 창설되기 전까지는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의⁹⁰⁾ 당사

87) 제6조: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식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88) WIPO, *supra*, p. 9.

89) 정진섭·황희철(1995),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140면.

90)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년 채택 후 6차례 개정이 있었고 현

국으로 구성된 파리동맹(Paris Union)과 1886년 체결된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의⁹¹⁾ 당사국으로 구성된 베른동맹(Berne Union)이 독자적으로 국제적 규율체제로 운영되었다 그 후 1892년 두 동맹을 하나로 통합한 지식재산권보호 국제합동사무국(Bureau International Re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이하 BIRPI)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었다.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의 큰 축을 이루어 왔던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의 개정회의가 열렸던 스톡홀름회의에서 새로운 틀의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된 설립조약이⁹²⁾ 발효된 1970년 활동을 개시하였다. 한편 이 기구는 1974년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전문기구(Special Agency)의 하나가 되었다.

이 기구의 목적은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하여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 세계에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동맹국들 간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⁹³⁾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로서는 ①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 촉진과 이 분야에서 국내 입법의 조화를 위한 제반조치의 발전증진, ② 파리동맹과 베른동맹의 행정적 업무수행, ③ 지식재산권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제협정의 관리 또는 참여, ④ 지식재산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의 체결을 장려, ⑤ 지식재산권분야에 있어서 법률적, 기술적 지원, ⑥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수집과 배포 및 연구 수행촉진과 연구결과 공표, ⑦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촉진과 이 분야에 있어서의 등록과 등록에 관한 자료의 공표 등이다.⁹⁴⁾

나. WIPO 관장조약

WIPO에서 관장하는 조약 중 산업재산권관련조약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⁹⁵⁾ 첫째,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원산지표시, 올림픽상징물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여기에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마드리드협정,⁹⁶⁾ 올림픽 상징물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⁹⁷⁾ 상표

재 파리협약이고 하면 1967년 스톡홀름개정협약을 지칭한다. 한국은 1980년 5월 4일 발효.

91)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한국은 1996년 8월 24일 발효, 1886년 채택 후 7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 베른협약이라고 하면 1971년의 파리개정협약을 지칭한다.

92)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한국은 1979년 3월 1일 가입.

93) 설립조약 제3조.

94) 설립조약 제4조.

95) 이재곤(2007),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 법학연구 18(1), 294-295면.

96)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1891.

법조약,⁹⁸⁾ 짐적회로에 관한 위싱턴협약,⁹⁹⁾ 특허법조약¹⁰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등록 절차 등 편의제공을 위한 조약들이다. 여기에는 특허협력조약,¹⁰¹⁾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과¹⁰²⁾ 마드리드협정의 개정의정서(1989),¹⁰³⁾ 국제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¹⁰⁴⁾ 산업적 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¹⁰⁵⁾ 원산지명칭의 보호 및 국제 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¹⁰⁶⁾ 싱가포르상표법 조약¹⁰⁷⁾ 등이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출원, 등록 등에 있어 해당 기술 또는 상품의 분류가 각 국가마다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적 분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약들이다. 여기에는 상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¹⁰⁸⁾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¹⁰⁹⁾ 상표의 도형적 요소의 국제 분류를 위한 비엔나협정,¹¹⁰⁾ 산업의장의 국제 분류를 위한 로카르노협정¹¹¹⁾ 등이 있다.

한편 WIPO는 저작권 분야와 관련한 조약들도 관장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것으로는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가장 핵심적인 조약이고, 실연가,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¹¹²⁾ 음반제작자보호협약,¹¹³⁾ 위성통신 신호 보호 협약,¹¹⁴⁾ WIPO저작권협약,¹¹⁵⁾ WIPO 실연 및 음반협약¹¹⁶⁾ 등이 있다. 다른 한편 저작

97)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1981.

98) Trademark Law Treaty, 제네바, 1994.

99) Washington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1989.

100) Patent Law Treaty, 2000.

101)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0.

102)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891.

103)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989.

104)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1977.

105)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1925.

106)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Pro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1958.

107)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2006.

108)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1957.

109) Stra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971.

110)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971.

111)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1968.

11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61. 이 조약은 UNESCO와 ILO도 관여한다.

113)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Geneva, 1971.

114)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브뤼셀, 1974.

권 보호체제 및 등록 등 서비스에 관한 조약으로는 시청각저작물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약이¹¹⁷⁾ 있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일지라도 이를 -베른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¹¹⁸⁾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에 대해 대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¹¹⁹⁾

다. 지식재산권 국제협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이슈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한 두 개의 국제협약 즉, WTO TRIPs 협정과 WIPO 관장 협약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관장 하에 있거나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WIPO가 가장 많은 조약을 관장하고 있고, WTO는 TRIPs협정 하나를 관장하고 있지만 TRIPs협정이 갖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요한 국제규범이 되어 있다. WTO와 WIPO 두 기관은 1996년에 상호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수집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관에서 관장하는 국제협정의 내용도 협약 체결의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TRIPs 협정으로 인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통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소프트웨어 이슈 발굴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중에서 어느 권리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발명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 또한 각각의 보호방

115) WIPO Copyright Treaty:WTC 1996.

116)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117)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udiovisual Works, 제네바, 1989.

118) 제4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은 베른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 보호는 어떠한 표현 형식이나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119) 제7조 (대여권)

(1) (i) 컴퓨터 프로그램,

(ii) 영상저작물 및

(iii) 계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 프로그램

(ii) 영상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대여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는,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저작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범위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1970년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¹²⁰⁾ 이에 대해서는 WIPO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¹²¹⁾

라. 관련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WCT 제5조는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이 되는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²⁾ 이 보호는 당해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편집물에 수록된 데이터나 소재에 존속하는 저작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TRIPs 협정 제10조 제2항과 동일하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이다.

TRIPs협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을 이유로 지적 창작물(intellectual creations)을 구성하는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Compilations of data or other material)은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데이터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데이터 또는 소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¹²³⁾ TRIPs 협정에서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들의 편집물은 “그

120)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경우 SSO(Sequence, Structure and Organization)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경우 기술적 사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21) <http://www.wipo.int/copyright/en/activities/software.html>

122) Article 5 Compilations of Data(Databases)

Compilations of data or other material, in any form, which by reason of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ntents constitute intellectual creations, are protected as such. This protection does not extend to the data or the material itself and is without prejudice to any copyright subsisting in the data or material contained in the compilation.

(WCT 제5조: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의 성격을 갖는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형태와 관계없이 그대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는 당해 데이터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편집물에 수록된 데이터 또는 소재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3) Article 10 Computer Programs and Compilations of Data

1. Computer programs, whether in source or object code, shall be protected as literary works under the Berne Convention (1971).

2. Compilations of data or other material, whether in machine readable or other form, which by reason of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ntents constitute intellectual creations shall be protected as such. Such protection, which shall not extend to the data or material itself,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copyright subsisting in the data or material itself.

자체로(as such)”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편집물들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에 연관된 TRIPs 협정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본다.

이는 TRIPs 협정 제10조 제2항이 베른협약 제2조 제5항에 나온 문장들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TRIPs 협정 제10조 제2항은 일종의 베른협약 상 해당 조항의 개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른협약 제2조 제5항에서는 “내용물의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지적 창작물이 되었을 때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⁴⁾ 그러므로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인 ‘지적 창작물’은 베른협약에 의해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하고, 저작물의 정확한 상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문 및 예술저작물’에 관한 협약의 일반 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지적창작물들’이 될 수 있는 선택 또는 배열을 구성하는 내용물들은 두 협약상의 관련 조항에서 다르다. 베른협약 제2조 제5항의 경우, 내용물은 ‘어문 및 예술저작물’이어야 한다. 한편, TRIPs 협정 제10조 제2항의 경우, 내용물은 ‘데이터 또는 소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TRIPs 협정의 규정이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산출물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집물과 편집물의 경우, 그것들의 내용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내용물의 선택 또는 배열을 구성하는 지적 창작물이 보호대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에 의해, 어문, 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의 모든 산출물은 어문 및 예술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의 독창적 선택이나 배열로 이루어진 산출물은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의 어문 또는 예술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에 관한 TRIPs 협정과 베른협약의 범문에는 표 현상 차이가 있지만, 두 협약 상의 요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¹²⁵⁾

124) Article 2

5. Collections of literary or artistic works such as encyclopaedias and anthologies which, by reason of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their contents, constitute intellectual creations shall be protected as such, without prejudice to the copyright in each of the works forming part of such collections.

(베른협약 제2조 제5항: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이 되는 백과사전 및 선집과 같은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수집물은 그 수집물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고,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된다.)

125) WIPO, *supra*, pp. 27~28.

제3장 SW무역에 관한 주요 국제협정 상의 규범 및 최신 동향

제1절 개관

패키지 소프트웨어, 주문형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분야 통상 규범 제정을 위한 핵심포럼으로서, WTO 다자통상체제가 담당해 온 역할은 적지 않다. 특히 정보기술협정(이하 'ITA' 라 함)과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 이라 함)을 통해 달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 및 주문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자유화는 전적으로 WTO 다자통상체제의 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다자통상체제가 소프트웨어 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제정 측면에서 늘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상규범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극히 부진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 적용과 신종 서비스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협정 관할 문제가 WTO 차원의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다자통상체제와 병행하여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양자 및 복수국 간 FTA 등 지역통상체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적 돌파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예컨대,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하에서 절충되지 못했던 상당수 주요 쟁점들이 미국 주도 FTA 협정문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통해 규범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온라인 패키지소프트웨어에 대한 영구 무관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 나아가 최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등 소위 '메가(Mega) FTA' 와 GATS 하의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이하 TiSA)' 협상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무역에 관한 통상규범의 구체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양자 간 또는 복수국 간 추진되는 FTA 지역통상체제가 국가 간 첩예한 이해갈등 조정 측면에서 WTO 다자통상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FTA는 제한된 수의 국가들에게만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다자통상규범인 WTO 협정의 적용 범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 마디로, 어떠한 FTA도 그 자체로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주도 FTA가 표방하는 바와는 상이한 기조의 FTA가 공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서 표명해 온 독자적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거대시장을 보유한 중국도 정치경제적 이유에

서 미국 주도 무역규범에 대한 거부감을 고수해 왔다. 중국 및 EU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RCEP이나 WTO/GATS 하의 TiSA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 진전이 더딘 것도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EU 및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는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발효시킨 상태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RCEP, TiSA 등 메가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한때 우리나라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했던 TPP의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협정 탈퇴 선언 이후 협정 발효 여부 및 우리나라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TPP 전자상거래 장은 그 이전까지 가장 진전된 형태의 통상규범으로 인식되어 온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을 포괄하면서도 다수의 신종 통상규범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TPP 전자상거래 장에 포함된 통상규범들은 미국이 참여 중인 TiSA협상은 물론이고 미국의 가시적 영향권을 벗어나 있는 RCEP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야 통상규범의 지향점(focal point)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FTA 지역통상체제 하에서 지식재산권 규범은 TRIPs 협정에서 규정한 보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정하거나, 개도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TRIPs 협정 상 다소 모호하게 규정해 놓은 지식재산권 집행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강화한 조항을 거의 예외 없이 두고 있다. 이를 가리켜 ‘TRIPs 플러스(+)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미 FTA 및 한·EU FTA도 그에 속한다.¹²⁶⁾

본 장(章)에서는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주요 양자 간 FTA는 물론이고, TPP, RCEP 및 TiSA 등 최근 진행되어 온 메가 FTA 협상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구 무관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상규범, 온라인 환경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온라인 소프트웨어 무역과 연관된 통상규범의 추이를 검토한다. 특히 각 협정(협상)별로 WTO 다자통상체제가 달성하지 못했던 WTO 플러스(+) 규범을 중심으로 지역통상체제 통상규범의 특이성(stylized facts)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자유무역협정

1. 한·미 FTA

가. 전자상거래 부문

1) 협정 개요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chapter 15)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조문의

126) 한미 FTA 제18.1조 제2항 및 한EU FTA 제10.2조 제1호 참조.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규정, 강행규정 및 협력규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일반규정(3개 조문) 및 강행규정(2개 조문)은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협력규정(4개 조문)과 대비된다. 다만, 일반규정은 협정의 적용범위 및 예외,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정부조치(measures)에 관한 실체적 의무를 명기한 강행규정과 구분된다.

일반규정과 관련해서는 WTO 협정의 적용 입장을 개괄적으로 천명한 제15.1조와 달리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관한 양허내용을 판정하기 위한 구체화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¹²⁷⁾ 동 조문의 통상법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적 공급(electronic supply)’은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 따라 모든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에 적용된다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내재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의 기술적 수단인 전자적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투자 장(chapter) 및 서비스 장 규정에 따라 유보조치(reservation measures) 목록에 해당 제한조치를 기재해야만 합법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강행규정은 디지털재화(제15.3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제15.4조) 등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ion)와 함께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¹²⁸⁾에 대한 영구 무관세를 규정한 제15.3조는 소프트웨어 무역규범에 관한 한 WTO의 현행 규범수준을 넘어서는 ‘WTO 플러스(+)’에 해당되며,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하에서 합의된 무관세의 법적 효력을 영구화했다는 점과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¹²⁹⁾

또 다른 WTO 플러스(+), 강행규정인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는 전자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 인증수단 선택의 자유, 전자서명과 비전자서명 간 법적 효력 간 비차별적 인정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금융, 의료 등 거래의 성격 상 특별히 더 강화된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관해서는 당사국에게 국내법에 기초해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등 부분적으로 전자인증수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127) “The Parties affirm that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s Eleven through Thirteen (Investmen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which are subject to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to such obligations.”

128) 한·미 FTA 상(제15.9조, 용어정의)의 디지털재화는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중략] 제품”을 말한다.

129)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표 3-1〉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조

조문 유형	조문 제목
일반규정 (3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조(일반조항) - WTO 협정 적용 원칙 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 한·미 FTA의 투자 및 서비스 Chapter 규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9조(용어 정의) - 전자상거래 장(chapter) 내의 주요 용어 정의
강행규정 (2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3조(디지털채화) - 디지털채화에 대한 영구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 정보보호조금 및 무상교부금, 방송(프로그램 전송)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전자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 인증수단 선택의 자유 - 전자서명의 법적 동등효력 인정 - 예외 : 금융, 의료 등 특수 거래는 자국 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등 특정 전자인증수단 요구 가능
협력규정 (4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5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 기만·사행행위 방지조치 및 당사국(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6조(전자무역) - 무역행정문서의 전자화 및 공개 - 전자적 무역행정문서의 법적 동등효력 인정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자국 법을 조건으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8조(국가 간 정보이전) - 정보의 국가 간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자제 노력

조문 내용 이행에 대한 당사국의 우호적·도의적 책임을 반영하는 협력규정은 온라인 소비자 보호(제15.5조), 전자무역(제15.6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용(제15.7조), 국가 간 정보이전(제15.8조)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제15.7조는 소위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관한 것으로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s)에 부과되는 비차별대우 의무로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장비, 이용자(서비스공급자 포함) 및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호(traffic)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등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당사국 법이 동등대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당사국의 유연한 제도운용 여지도 용인하고 있다. 한편, 협력규정 가운데에는 과거 미국이 체결한 FTA 중에는 사실상 최초로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문(제15.8조)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추후 TPP, TiSA, RCEP 등 메가 FTA에서 이루어진 본격적 논의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요 WTO 플러스(+) 규범

□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구 무관세

WTO 각료선언이 언급해 온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와 달리 한·미 FTA 제15.3조(디지털재화)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영구 무관세’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무관세의 대상(객체)과 기간이 구체적·포괄적이다. 즉, 무관세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이 아닌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라는 명시적 객체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그 효력이 영구적이다. 다만, 디지털재화에 대한 분류는 당사국 재량으로 맡겨두었다. 디지털재화를 상품으로 분류할지 또는 서비스로 분류할지는 철저히 당사국의 고유권한이지만,¹³⁰⁾ 그 소속과 무관하게 디지털재화는 영구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¹³¹⁾ 무역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WTO 각료선언이 규정한 무관세의 대상은 그 실체가 모호한 ‘전자적 전송’이지 물리적 객체(소프트웨어 그 자체 혹은 매개체)가 아니므로 설령 ITA 회원국이라고 해도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분류하는 이상 동 회원국의 관세¹³²⁾ 부과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물론 디지털재화인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GATT 체제의 기존 관행 하에서도 ITA 가입국인 우리나라와 미국에게는 이미 무관세 대우 부여 의무가 있다.¹³³⁾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분류할 경우에는 WTO 협정 하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 기만 하다면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에 기초한 관세 부과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예컨대, WTO 협정 하에서는 회원국이 물리적 전달매체에 의하는 소프트웨어를 상품,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분류할 경우¹³⁴⁾, 이들의 관할협정인 GATT와 GATS 간 기술중립성 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에 대해서는 GATT 및 ITA 규범을 그대로 연장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제15.3조를 통해 그러한 경우에도 무관세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즉, 물리적 전달매체에 의하든, 전자적 전송에 의하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협정 불합치 사안에 해당된다. 한·미 FTA는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전달매체를

130)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chapter) 제15.9조(용어정의)의 각주 4 참고.

131) 이하, 소프트웨어로 지칭함.

132) 한·미 FTA(제15.3조 1항)는 관세(customs duties)는 물론이고 여하한 수수료(fees) 및 부과금(charges)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각주 1에 따라 당사국의 내국세 부과는 용인된다.

133) 즉, 이 부분은 WTO 플러스(+) 사항이 아니다.

134) 특히 유럽연합(EU)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해 공급되든 전자적 전송에 의해 공급되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러한 재화의 상품·서비스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묵적·예외적으로 상품·서비스 간 기술중립성 원칙을 용인하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한 WTO 플러스(+)¹³⁵이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차별대우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하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이외에는 어떠한 규범도 공식 합의된 바 없다. 그러한 상황은 특히 소프트웨어를 위시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재화의 상품·서비스 분류 논란, 좀 더 근본적으로는 WTO 체제의 세부협정인 GATT와 GATS 간 규범체계의 구조적 상이성에서 연유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협정구조 상 후자가 전자에 비해 시장개방에 대한 회원국의 무역정책 자유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시장개방보다 시장보호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은 시장보호 친화적인 GATS 관할을 선호하는 반면, 그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시장개방 친화적인 GATT 관할로 자연스럽게 기우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 제15.3조는 당사국의 전략적 포럼선택(forum shopping) 가능성을 불식시키기에 합당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제15.3조의 2항 및 3항에 따르면, 일방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디지털재화(소프트웨어 포함) 및 그 공급자에 대해 그 배송방식(물리적 전달매체 또는 전자적 전송)과 무관하게¹³⁵ 공히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및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의무 등 소위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ion)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미국산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공급자에게 우리나라의 동종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공급자는 물론이고 제3국의 동종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공급자와 비교하여 못지않은 상응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 관한 예외적 정책구사 여지도 없지 않다. 한·미 FTA의 투자 장(chapter) 및 서비스 장 규정에 따라 유보조치(reservation measures) 목록에 기재되는 제한조치는 물론이고,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subsidies or grants) 및 공공서비스, 방송(broadcasting) 분야는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¹³⁶

135) 결과적으로 이는 상품·서비스 분류 또는 상품·서비스 협정관할에 대한 선택을 통해 협정 당사국 간 시장자유화에 대한 전략적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문언에 해당된다.

136) 한·미 FTA 제15.3조 4항 및 5항.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개방

패키지 소프트웨어, 주문형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가운데 현재까지 WTO 다자통상규범의 취약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노정된 유형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은 이미 제2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터넷의 보편화 시점이 WTO체제 출범 이후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물론 WTO체제 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적 원칙인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취약점을 해소하는데 일조한다. 예컨대, WTO체제 하의 서비스무역 관할협정인 GATS가 ‘주문-구매-소유’ 개념에 기초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의 기술적 배송방식이 전자적이든 비전자적이든 기술중립적으로 기존 GATS 규범의 적용대상이므로 회원국의 UR 양허표에 의해 해당 시장개방 여부 및 수준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에 의해 온라인 방식으로 ‘(임차)사용-요금 지불’ 방식으로 거래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단지 기술중립성 원칙에 의해 기존 GATS 규범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서비스 배송방식(전송기술)로서의 인터넷 활용을 넘어 ‘(임차)사용-요금 지불’이라는 전례가 없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GATS는 시장개방 양허표 작성에 있어 포지티브 접근(positive listing)에 의한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이 UR 당시 작금의 신종 서비스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양허표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다. GATS 차원에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개방 문제는 아직까지 협상대상이거나, 최소한 논란대상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미 FTA는 전자상거래 장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개방을 위한 연계조항(bridge provision)을 두는 방식으로 이러한 논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장의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이 그것이다. 동 조문은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해 한·미 FTA의 투자(제11장) 및 서비스(제12장) 규범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투자 및 서비스 장(chapter)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등에 대한 예외조치¹³⁷⁾를 GATS에서와 달리 네거티브 접근(negative listing)에 의함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된 서비스에 대해 현존하는 제한조치¹³⁸⁾와 미래 도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새로운 제한조치¹³⁹⁾를 별도로 명기해 두지 않은 이상, 해당 서비스는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137) 한·미 FTA는 이를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라고 정의한다.

138) 협상 실무자들은 이를 ‘현재유보’ 로 지칭함.

139) 협상 실무자들은 이를 ‘미래유보’ 로 지칭함.

다.140)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관한 어떠한 제한조치도 명기한 바 없으므로 한·미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완전한 개방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한·미 FTA는 독특한 양허방식에 의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시장 전면개방이라는 WTO 플러스(+를 달성한 셈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무역 분야에서 한·미양국은 공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재)수출(예를 들면 무기 관련 내장형 SW 사례))과 관련한 현존 제한조치 또는 추후 새로운 제한조치를 유일하게 유보하고 있다.141)

나. 지식재산권 부문

1) 개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18장은 크게 저작권, 산업재산권 및 집행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디자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8장의 구성을 보면, 크게 총칙(제18.1조), 실체규정(제18.2조~제18.9조), 집행규정(제18.10조), 경과규정(제18.11조) 및 부속서한(Confirmation Letter 1~4)의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8.1조에서는 협정의 발효일까지 1994년 상표법조약, 1996년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 등에 비준·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체 규정은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제18.2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제18.3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제18.4조), 저작권 (제18.5조), 저작인접권(제18.6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제18.7조), 특허(제18.8조), 특정 규제 제품과 관련된 조치(제18.9조)로 세분화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 그 보호기간을 연장(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실연 및 음반 발행 또는 창작 후 50년에서 70년으로)하였으며, 연장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140) 한·미 FTA에서는 현재유보를 부속서(Annex) I, 미래유보를 부속서 II에 기재하고 있다. 현재유보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local presence) 등 주요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비합치조치이며,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된다. 이는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후퇴시키는 법·제도 개정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이다.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와 미래에 채택 가능한 전혀 새로운 비합치조치를 말한다. 즉, 미래유보된 현존 비합치조치에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다.

141) 우리나라는 미래유보 형식을, 미국은 현재유보 형식을 취한다. 한·미 FTA Annex, II-KOR-49, I-US-5.

복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상표의 경우, 냄새 또는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의 경우,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과정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 기간 중 시판 방지 조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식재산권 집행의 경우, 민사절차·형사절차·국경조치별로 지식재산권 침해 시 권리자의 구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재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요건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

<표 3-2> 한·미 FTA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조문 유형	조문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1조(일반조항) - 지재권 관련 국제협정 비준·가입 노력 - 내국민대우, 투명성 등
강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2조(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하지 않은 표지도 상표 등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3조(인터넷상 도메인 이름) - 상표권의 인터넷상 침해를 다루기 위해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절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 그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5조(저작권) - 공공의 이용 - 전송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6조(저작인접권)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개념 및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7조(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 암호화 된 프로그램의 허락 없는 해독 및 이를 위한 장치 제조 등 금지 ■ 제18.8조(특허)
	- 특허 요건, 출원 및 등록 ■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 ■ 제18.10조(지식재산권 집행)
	- 민사, 행정, 형사 절차 및 구제 ■ 제18.11조(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 이 장의 의무는 극히 긴급한 상황 또는 국가 비상 사태, 전염병 등에 있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석함 ■ 제18.12조(경과규정)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은 협정 발표 2년 이내 의무적으로 이행

2)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내용

□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저작물(사진저작물 포함), 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에 있어서,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으로 하고,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의 존속기간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발행연도(25년 이내 발행되지 못할 경우는 창작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8.4조 제4항). 한·EU FTA도 한·미 FTA와 동일하게 저작권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 및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2011년 6월 한·EU FTA를 반영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개정하였다(저작권법 제39조).

□ 기술적 보호조치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 치의 양보도 않겠다는 사안이 바로 접근통제권의 인정이다. 접근통제권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디지털정보가 원본과 차이 없이 복제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한 번 전송되고 나면 복제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저작권자가 무단복제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암호화기법, 디지털 워터마크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¹⁴²⁾ 다시 무력화되면서 시작되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저작물에 대한 ‘복제/이용통제(copy/use control)’와 ‘접근통제(access control)’로 구분된다. 복제통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지만 저작물의 복제 또는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한편 접근통제는 디지털 콘텐츠

142)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말함.

츠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터넷 망을 통해 저작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WCT 제11조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6년 WCT 및 WPPT(WIPO 실연·음반조약)를 체결한 WIPO 외교회의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면서 ‘접근통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다자간 국제조약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를 한·미 FTA 협상에서 요구한 것이다. EU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EU 저작권지침에 접근통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의 인정

미국 측이 양보 없이 강하게 주장했던 또 하나의 쟁점이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인데, 이를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형식에 관계없이 전자적인 형태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temporary storage)을 포함하여,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모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IT기술 및 디지털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물 이용의 패턴이 복제물을 소유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복제’의 한 유형으로 인정했다(제18.4조 제1항). 일시적 저장이란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컴퓨터 RAM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복제 현상으로 컴퓨터 전원을 끌 경우 사라지는 저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시적 저장의 예로는 ① 검색행위 시 웹 사이트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용자 컴퓨터 램(RAM)에 일시적으로 자동 저장되는 경우, 또는 ② 스트리밍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재생하는 기법으로 데이터 전송이 실행 속도보다 빠를 경우 버퍼에 파일 일부분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자는 근거로서는 ①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가장 충실할 수 있고, ② 디지털 환경 하에서 기존에는 권리로서 보호받지 못하였던 부분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으며, ③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활용한 비즈니스

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① 일시적 저장을 통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② 이를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 자신도 예상치 못하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어 범법자를 만들어 낼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¹⁴³⁾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일시적 저장도 복제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22호).¹⁴⁴⁾ 다만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 또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이용(인터넷 검색·웹서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설정도 가능하다.

□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한·미 FTA에서는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에게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가입자들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8.10조 제30항 (b) xi).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되는 온라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법원에 대하여 일종의 문서제출장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OSP에 대하여 이러한 문서제출장을 신속하게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도 이런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저작권자가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있는 경우, OSP에게 그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OSP는 그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4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2004),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쟁점사항의 국내법적 수용 여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일시적 복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7.

144) 방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저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4조).

우리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 및 제2항).

□ 법정손해배상제도

미국은 호주,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도 민사적 구제수단 중의 하나로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확정하는 손해배상제도(pre-established damages)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항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인데, 저작권자는 실손해 및 이익(actual damages and profits)과 법정손해배상액(statutory damage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정해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미 FTA에서는 민사절차에서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fully) 보상하기에 충분한(sufficient) 액수이어야 한다(제18.10조 제6항).

우리나라도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제126조(손해액의 인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25조의2) 제1항.

□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 등 인터넷 상의 집행강화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에 관한 부속서한에서는 저작권에 반하는 다운로드 및 배포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에 동의하고, 한국은 온라인 불법복

제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확인서한). 이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전송이나 복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는 언제든지 폐쇄가 가능하며, 그것도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폐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한·EU FTA

가. 전자상거래 부문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에는 별도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및 양허를 위한 제7장(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절(section F)이 포함되어 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선언적 일반규정이나 당사국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규정은 WTO 협정 적용,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국제표준 준수 및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 무관세 의무에 관한 3개 항을 포함한다. 협력규정은 전자상거래와 유관한 현안들에 대한 정부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특히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현안들에 대한 각 당사국의 법제 및 법률제정 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절은 사실상 실제적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규정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유일하게 WTO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7.48조 3항의 ‘전자적 배송(deliveries by electronic means)에 대한 영구 무관세’와 관련된다.¹⁴⁵⁾ 이는 문언 상으로 WTO 각료선언과 두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 첫 번째는 차기 각료회의까지 적용된다는 한시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시적 무관세의 대상이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이 아닌 ‘전자적 배송(deliveries by electronic means)’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deliveries’를 ‘배송물’로 번역하여 전송대상인 어떠한 객체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전자적 수단’을 고려했을 때 ‘deliveries’는 ‘배송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전자적 전송과 다를 바가 없다.¹⁴⁶⁾ 더 나아가 동 조문은 전송대상인 어떠한 객체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145) The Parties agree not to impose customs duties on deliveries by electronic means.

146) 배송(deliveries)을 배송물이라고 판단하는 일부 견해(외교통상부(2012.7),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는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용인하고 있다.¹⁴⁷⁾

<표 3-3> 한·EU FTA 전자상거래 절(section)의 조문구조

조문 유형	조문 제목
일반규정 (1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8조 1항 - WTO 협정 적용 원칙 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8조 2항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국제표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8조 3항 -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 무관세
협력규정 (1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9조 1항 - 전자서명 인증에 대한 인정(recognition), 정보제공·저장 매개사업자(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의 책임, 스팸메시지 대응, 전자상거래 참여 소비자의 보호, 전자무역 활성화, 여타 전자상거래관련 현안 등에 관한 협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9조 2항 - 1항 상의 협의에 각 당사국의 1항 현안에 대한 법제(화) 정보교환 포함

결국 제7.48조 3항은 WTO 각료선언과 동일하게 전자적 전송 단위에 부과될 수 있는 비트세(bit tax)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전통적으로 물리적 전달매체에 실려 국가 간 거래되던 제품들이 전자적 전송에 의할 경우에는 여전히 이를 어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 조문이 문언 상으로는 WTO 각료선언 상의 한시성을 삭제함으로써 일견 WTO 플러스(+)를 달성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전적으로 비트세에 대한 무관세의 효력기간에 관한 것이지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의 효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WTO 플러스(+라고 보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당사국이 스스로의 정책목적에 따라 합법적으로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WTO/GATT 하의 전통적 관행과 달리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양해에 진배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EU FTA의 양허방식은 GATS와 동일한 포지티브 접근(positive listing)에 의하므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양허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동 서비스에 대해 당사국은 어떤 시장개방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EU 공히

pp. 125~126.)가 없지 않으나, 이는 문언 상으로나 현재까지 EU가 견지해 온 입장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47) 제7.48조 3항의 각주 39는 이를 “The inclusion of the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this Chapter is made without prejudice to Korea’s position on whether deliveries by electronic means should be categorised as trade in services or goods.” 라고 기재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양허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지식재산권 부문

한·EU FTA 제10장(지식재산)은 양 당사국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제10.1조).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EU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①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② 특허와 관련된 권리, ③ 상표, ④ 서비스표, ⑤ 디자인, ⑥ 집적회로 배치설계, ⑦ 지리적 표시, ⑧ 식물품종, ⑨ 미공개정보의 보호를 포함한다(제10.2조 제2항).

한·EU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장(Chapter)은 3개의 섹션(section),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첫 번째 섹션은 지식재산권 장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소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섹션은 6개의 관(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특허 등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을 다룬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4개의 관(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집행 관련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표 3-4> 한·EU FTA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조문 유형	조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절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1조(목적) - 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 촉진 -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조(의무의 성격 및 범위) - 이 장의 규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3조(기술의 이전) - 각각의 영역 내 및 제3국과의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관행 및 정책에 관한 견해·정보 교환 및 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4조(소진) - 양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소진에 대한 자신의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음
제2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관(제10.5조~제10.14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권리의 존속기간 - 기술조치 보호 - 권리관리정보의¹⁴⁸⁾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관(제10.15조~제10.17조) 상표 - 상표 등록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관(제10.18조~제10.26조) 지리적 표시 - 사용권, 보호범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관(제10.26조~제10.32조)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보호기간(등록 후 최소 15년), 저작권과의 관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관(제10.33조~제10.38조)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제3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관(제10.39조~제10.40조) 기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의 보존·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41조(일반적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구제 절차의 이용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42조(자격 있는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구제 절차 신청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관(제10.43조~제10.53조) 민사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예방적 조치, 정보제공명령, 사법당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시정조치, 금지명령 등 권한 부여, 손해배상, 저작자의 추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관(제10.54조~제10.61조) 형사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함 - 각 당사자는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함 - 형사처벌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관(제10.62조~제10.66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도판, 캐싱, 호스팅으로 나누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 - 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관(제10.67조~제10.69조) 기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조치, 행동규범, 협력

□ 저작권의 보호기간

한·EU FTA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제10.6조). 그리고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FTA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제10.14조). 한·미 FTA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미 FTA에서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발행 또는 창작 시점 기준의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기간의 연장(50년→70년)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48)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한·EU FTA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제10.12조). WCT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에서는 “체약국은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경우, 고의·과실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한미FTA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에 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EU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중 FTA

가. 전자상거래 부문

인터넷이 자국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일관되게 민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은 다자·지역통상협정 최초로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을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중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 자체가 갖는 선언적 의의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중 FTA 전자상거래 장은 일반규정, 강행규정 및 협력규정 등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에 관한 조문(제13.4조)은 강행규정 부분과 협력규정 부분을 혼합하고 있다. 조문의 구조 및 내용 관점에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장은 한·미 FTA와 상당 정도 유사성을 가지는 바, 이는 우리나라가 대체로 한·미 FTA 체결 경험을 한·중 FTA 협상에서 활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한·EU FTA에 비해서는 조문의 구체성 및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에 관한 조문(제13.4조) 일부를 강행규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의 전자상거래 장은 한·미 FTA나 한·EU FTA 대비 통

상규범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한다. 특히 두 개 조문이 그러한 한계와 직결된다. 첫째는 전자상거래 장과 한·중 FTA의 여타 장 간에 조문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가 아닌 후자를 우선한다는 점이다.¹⁴⁹⁾ 이 보다 더 중요한 조문은 제 13.9조(분쟁해결 비적용)로서, 전자상거래 장과 관련하여 양국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한·중 FTA의 분쟁해결 장(제20장)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¹⁵⁰⁾ 즉, 한·중 FTA 내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통상마찰을 풀어갈 수 있는 효과적 법적 수단이 부재하다. 이는 한·중 FTA 전자상거래 장이 그 선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결정적 한계를 갖는 원인이다.

〈표 3-5〉 한·중 FTA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조

조문 유형	조문 제목
일반규정 (4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1조(일반조항) - WTO 협정 적용 원칙 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2조(여타 장과의 관계) - 전자상거래 장(chapter)과 다른 장 상충 시, 다른 장을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8조(용어 정의) - 전자상거래 장 내의 주요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9조(분쟁해결 비적용) - 전자상거래 장과 관련된 사안은 분쟁해결(제20장) 적용 배제
강행규정 (2 $\frac{1}{2}$ 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3조(관세) - 전자적 전송에 대한 잠정 무관세 - 당사국이 전자적 전송에 대한 상품·서비스 분류권한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1항 : 전자서명의 법적 동등효력 인정 - 2항(a) : 전자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 인증수단 선택의 자유 (단, 자국 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가능) - 2항(b) : 사법기관 또는 행정당국에서 전자서명 인증의 법적 요건 충족 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5조(개인정보보호) - 당사국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시행 및 그에 관한 정보교환 의무
협력규정 (2 $\frac{1}{2}$ 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3항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추진 - 4항 : 민간업계의 전자인증 사용 확산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6조(전자무역) - 무역행정문서의 전자화 및 공개 - 전자적 무역행정문서의 법적 동등효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7조(협력)

149) 한·중 FTA 제13.2조.

150)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Chapter 20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제, 표준, 모범관행 등 현안 정보 및 경험 공유 - 전자상거래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 협력 - 전자상거래 민간업계의 교류, 협력활동 및 공동프로젝트 활성화 - 지역·다자포럼에서의 전자상거래 현안 공조
--	---

한편, 소프트웨어 무역과 관련하여 한·중 FTA의 WTO 플러스(+) 규범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조문은 제13.3조(관세)이다. 그런데 동 조문의 내용 및 취지는 기존 WTO 각료 선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무관세’라는 WTO 기존 관행(current practice)을 유지한다는 것이다.¹⁵¹⁾ 그리고 동 조문과 관련하여 전자적 전송¹⁵²⁾에 대한 상품·서비스 분류 권한도 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 한시적 관행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한·EU FT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당사국이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WTO/GATT 하의 전통적 관행과 달리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의 양허방식도 GATS와 동일한 포지티브 접근(positive listing)인데, 양국 공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양허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장은 일반적 관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하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일부 사안들에 대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무역과 관련한 주요 규범 측면에서는 WTO 플러스(+)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근본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WTO 마이너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지식재산권 부문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TRIPs 협정 수준을 넘는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협정문 제15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장은 모두 11개의 절로 이루어

151) WTO 각료선언(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of the Bali WTO Ministerial Decision, WT/MIN(13)/32-WT/L/907)에 따른 한시적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면서도 추후 영구 무관세 등 WTO 각료결정 변동에 따라 당사국 입장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한·중 FTA 제13.3조의 각주 2 및 각주 3.

152) 정확하게는 ‘전자수단에 의한 배송(deliveries)’으로 표현하여 한·EU FTA에서 채택한 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중 FTA 제13.3조의 각주 1.

져 있다.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3절 상표, 제4절 특허 및 실용신안, 제5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6절 식물품종보호, 제7절 미공개 정보, 제8절 산업디자인, 제9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제10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및 제11절 기타 규정을 두고 있다.

<표 3-6> 한·중 FTA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조문 유형	주요 내용
제1절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조(목적) - 아이디어, 기술 및 창의적인 작업의 확산을 통한 국제 무역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의 원활화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권리자와 사용자에게 확 실성 제공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거하고 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2조(일반원칙) - 적절하고, 유효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3조(국제협정) -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존의 국제 협정에서 창설된 자국의 약속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4조(더 광범위한 보호) -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5조(지식재산과 공중보건)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함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6조~제15.10조 -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각각 저 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호를 보장 - 기술조치 보호 -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3절 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1조~제15.14조 - 상표의 보호, 예외 및 등록절차 등
제4절 특허 및 실용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5조~제15.16조 - 특허의 보호 - 양 당사국의 실용신안의 법적 체계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
제5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7조 -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 가능
제6절 식물품종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8조 - 식물품종 보호
제7절 미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9조 - 양 당사국은 미공개 정보를 TRIPs 협정 제39(미공개 정보의 보호)에 따라 보호
제8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20조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의 보호 및 보호기간
제9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21조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수준은 TRIPs 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
제10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22조~제15.29조 -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추정(제15.23조)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실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제15.24조 제2항) - 법정손해배상 제도(제15.24조제3항) - 압류 및 폐기(제15.24조제5항~제6항, 제15.26조제5항 및 제15.27조제3항 다호) - 정보제공명령 권한(제15.24조제7항) - 잠정조치(제15.25조) -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제15.28조)
제11절 기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30조~제15.31조 - 협력관계 강화 - 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

한·중 FTA에서는 저작권, 특히 다음의 이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다만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한 방송의 보호기간이, 이 방송이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후 5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5.6조 제3항). 둘째, 저작물, 실연, 음반의 이용 통제 및 접근 통제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고 있다(제15.8조). 셋째,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혹은 변경 행위,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실연·음반 등을 일반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5.9조). 넷째,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5.28조).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원칙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실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5.24조 제2항),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제15.24조 제3항).¹⁵³⁾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한도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각국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비교

한국		중국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153) 박희근(2011), 한·중 FTA상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적 연구, 단국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76~77면.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만원 ~ 100만원	200만원 이하
---	---------	-------------	----------

출처: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110면.

제3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1. 전자상거래 부문

가. 협정 개요

TPP 전자상거래 장(chapter 14)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규정, 강행규정 및 협력규정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규정(2개)은 용어 정의, 전자상거래 장의 적용대상(조치) 및 예외에 관한다. 총 11개의 강행규정은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분야 정부조치에 관한 실체규범으로서 디지털재화에 관한 영구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와 함께 국가 간 정보이전(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컴퓨팅설비의 위치(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등 소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총 5개의 협력규정에는 전자무역,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용에 관한 원칙 등이 속한다.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조는 한·미 FTA(3개 유형, 9개 조문)와 유사하나, 한·미 FTA 대비 유형별 조문구성 및 법적 구속력의 관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9개 신규 조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6개는 강행규정¹⁵⁴⁾, 3개는 협력규정¹⁵⁵⁾이다. 특히 TPP는 한·미 FTA에 협력규정으로 포함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문(제14.7조)과 국가 간 정보이전 (제14.11조) 등 2개 조문을 강행규범으로 변경하고 있다.

<표 3-8> TPP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구조 및 특징

유 형		TPP 조문	한·미 FTA
일반 규정	(2)	■ 제14.1조(용어 정의)	일반규정
		■ 제14.2조(일반조항 : 협정 적용범위 및 예외)	일반규정

154) 제14.5조(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제14.8조(개인정보보호),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제14.14조(스팸메시지) 및 제14.17조(SW 소스코드), 제14.18조(분쟁해결).

155) 제14.10조(인터넷 접속료 분담), 제14.15조(회원국 간 협력) 및 제14.16조(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협력).

강행 규정	(11)	■ 제14.3조(판세)	강행규정
		■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 방송(프로그램 전송) 제외 등	강행규정
		■ 제14.5조(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부재
		■ 제14.6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강행규정
		■ 제14.7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규정
		■ 제14.8조(개인정보보호)	부재
		■ 제14.11조(국가 간 정보이전)	협력규정
		■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부재
		■ 제14.14조(스팸메시지)	부재
		■ 제14.17조(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부재
		■ 제14.18조(분쟁해결)	부재
협력 규정	(5)	■ 제14.9조(전자무역)	협력규정
		■ 제14.10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협력규정
		■ 제14.12조(인터넷접속료 분담)	부재
		■ 제14.15조(회원국 간 협력)	부재
		■ 제14.16조(사이버 정보보호에 관한 협력)	부재

한편, TPP는 적용배제(carve-out) 분야에 관해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적용배제 분야는 조문별로 상이하다. 크게 전자상거래 장 전체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분야와 특정 조문에 국한하여 적용배제가 허용되는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전자상거래 장 전체의 적용배제가 적용되는 분야는 ①정부조달, ②공공정보 및 그와 관련된 조치이다.¹⁵⁶⁾ 양허협상과 무관하게 특정 조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제14.11조(국가 간 정보이전) 및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와 관련된다.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의 경우, 한·미 FTA와 동일하게 (전자)화폐 등 디지털 암호화된 금융거래 매개수단(financial instruments), 정부보조금(subsidy) 및 무상교부금(grant), 방송(broadcasting) 분야가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¹⁵⁷⁾ 또한 금융분야 정보 및 설비는 제14.11조(국가 간 정보이전) 및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필요성심사) 적용으로부터 배제된다.¹⁵⁸⁾

특정 조문의 적용배제 여부가 양허협상에 의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회원국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양허협상에 의해 특정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이다. 이는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제14.11조(국가 간 정보이전),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및 제14.17조(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관련된다. 물론 조건부로 이들 조문으로부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분야가 특정된 것은 아니므로 사전적으로 서비스 분야 전반이 해당될 수 있으

156) 제14.2조 3항.

157) 제14.1조(용어 정의)의 각주 2, 제14.4조 3항 및 4항.

158) 제14.1조(용어 정의, covered person), 제14.11조 2항 및 제14.13조 2항.

며, 투자·서비스·금융 장(chapter)에서 규정한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의 형식으로 유보가 가능하다.

한편, TPP 전자상거래 장의 조문들 가운데에는 다음의 제4절에서 다룬 TiSA 협상문안과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4개 신규 강행규정 조문도 포함되어 있다. 즉, 컴퓨팅설비의 위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스팸메시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은 TiSA에서 논의 중인 협상문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다만,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에 관한 2개 강행규정은 일부 TPP 협상참여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조문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다른 아닌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컴퓨팅설비의 위치 조문에 대한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¹⁵⁹⁾ 적용이다. 이는 당해 조치가 합법적 공공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 부당한 차별 및 가장된 무역장벽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컴퓨팅설비의 위치를 제한하는 국내화조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¹⁶⁰⁾

국가별 전자상거래 관련법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제14.5조(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제14.12조(인터넷접속료 분담) 등 2개 신규 조문도 TPP 전자상거래 장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TPP 회원국은 UN, APEC 등 여타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관련 국제규범 준용하여 관련 국내 법제를 정비해야 할 법적 또는 도의적 의무를 부담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14.5조에 따라 회원국은 UNCITRAL(UN국제무역법위원회) 전자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및 UN 전자통신협약(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약칭)¹⁶¹⁾ 상의 원칙과 양립하도록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를 마련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제14.12조(인터넷접속료 분담 : Internet Interconnection Charge Sharing)는 ‘인터넷서비스 국제회선 비용부과 약정(ICAIS : International Charging Arrangement for Internet Services)에 관한 APEC 원칙’¹⁶²⁾을 반영한 협력규정이다.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조문(제14.18조)을 제정한 점도 TPP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이다.

159)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으로도 지칭된다. 특정 사안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는 해당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이다.

160) 제14.11조 3항 및 제14.13조 3항.

161) UNCITRAL 전자거래모델법 및 UN 전자통신협약은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에 대해 전통적 방식에 의한 계약 및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국가별 관련법제의 표준화를 위해 UN이 제정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다.

162) ICAIS에 관한 APEC 원칙은 인터넷 도입 초기에 미국의 백본망(mother network) 연동을 위해 미국으로 집중되던 인터넷 호(traffic)가 여타 국가들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되어 여타 국가들로 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미국 중심의 인터넷 지배구조 하에서 형성된 아태지역 ISP들의 과도한 국제회선비용 부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00년 APEC(TELMIN4)에서 채택된 회원국 간 (협력)규범이다.

다만, 동 조문이 명기되지 않는다고 하여 TPP 전자상거래 장의 의무 위반이 분쟁해결절차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쟁해결 조문의 명기는 다소 의아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별도 조문의 형식을 취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에 국한하여 TPP 전자상거래 장의 일부 조문 상의 의무이행(기존조치에 국한)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TPP 제28장)의 한시적(협정발효 후 2년) 적용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적용면제 조문은 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제14.4조), 국가 간 정보이전(제14.11조)¹⁶³⁾ 및 컴퓨팅설비의 위치(제14.13조)¹⁶⁴⁾이다. 결론적으로, 동 분쟁해결 조문은 회원국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두 조문들의 이행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요 WTO 플러스(+) 규범

1)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구 무관세

TPP 제14.3조(관세)는 한·미 FTA 제15.3조(디지털재화)와 동일하게 물리적 전달매체에 의하든, 전자적 전송에 의하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재화에 대해 영구 무관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회원국이 그리고 그러한 재화를 상품으로 분류하든, 서비스로 분류하든 관계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서비스 간 기술중립성 원칙을 용인하는 명백한 WTO 플러스(+) 사항이다.

다만, 제14.3조에는 일부 문언적 특이성도 존재한다. 우선 동 조문의 1항은 WTO 각료선언이 언급해 온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를 글자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러한 전자적 전송에 “전자적 전송에 의한 콘텐츠(contents transmitted electronically)”가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¹⁶⁵⁾ 이는 다분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으로서 “전자적 전송에 의한 콘텐츠”와 한·미 FTA 제15.3조 1항 상의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는 동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동 조문은 WTO 각료선언을 준용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고스란히 가미된 WTO 플러스(+)이다.

다음으로, 제14.3조 규정과 직결된 디지털재화에 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163) 이상,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공히 적용.

164) 베트남에 국한해 적용.

165) “No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one Party and a person of another Party.”

문서, 비디오, 영상, 녹음물(sound recordings) 및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전송에 의해 판매·유통되는 디지털(암호화) 상품”이라고 사실상 한·미 FTA의 용어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¹⁶⁶⁾ 하지만 한·미 FTA에서와 달리 디지털재화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암호화) 금융매개수단(financial instruments)은 디지털재화에서 제외된다.¹⁶⁷⁾ 협정문이 금융매개수단의 정의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금융거래를 매개하는 여하한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s)가 동 조문 상의 금융매개수단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조문에 의하는 한 금융거래를 매개하는 응용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관세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차별대우

한·미 FTA 제15.3조는 그 2항 및 3항에서,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디지털재화(소프트웨어 포함) 및 그 공급자(소프트웨어공급자 포함)에 대해 그 배송방식(물리적 전달매체 또는 전자적 전송)과 무관하게 공히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및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의무 등 소위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ion)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TPP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1항¹⁶⁸⁾ 및 그 각주(4)는 원칙적으로 한·미 FTA 제15.3조의 취지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WTO 플러스(+) 규범으로 판단되기에 손색이 없다. 또한 TPP 제14.4조 3항 및 4항에서는 한·미 FTA 제15.3조 4항 및 5항에서와 동일하게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subsidies or grants), 방송(broadcasting) 분야가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을 밝히고 있다.

TPP 제14.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에는 한·미 FTA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첫 번째 특이성은 한·미 FTA에서와 달리 한시적 무관세의 객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자적 전송’으로 표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WTO 각료선언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반면, 비차별대우 부여의 객체로는 ‘디지털재화’를 명기

166) 제14.1조의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 참고.

167) 제14.1조의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의 각주 2.

168) 제14.4조 1항 :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각주 4 : “For greater certainty, to the extent that a digital product of a non-Party is a “like digital product”, it will qualify as an “other like digital produc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4.4.1. “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TPP 전자상거래 장 협상 과정에서 WTO 차원에서 다자통상규범으로 제정된 한시적 무관세 부분에 관해서는 대다수 TPP 회원국들의 입장을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역으로 다자통상규범에는 부재하던 비차별대우와 관련해서는 다른 TPP 회원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특이성은 동 조문의 2항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장(chapter 18) 상의 권리·의무에 합치하는 범위에서만 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가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에는 후자를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산 소프트웨어 또는 미국 소프트웨어공급자에게 비차별대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인해 도리어 미국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차별대우 부여에 의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재화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3)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개방

TPP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한·미 FTA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전자상거래 장 내에 연계조항(bridge provision)인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을 두어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해 TPP의 투자(제9장) 및 서비스(제10장) 규범을 적용한다. 더 나아가, 투자 및 서비스 장(chapter)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등에 대한 예외적 제한조치를 네거티브 접근(negative listing)에 의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제한조치를 유보하지 않은 TPP 회원국들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전면 개방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합의된 TPP 협정문에 기초할 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무역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유보한 회원국이 부재하므로 TPP 협정 발효 시에는 회원국 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시장의 전면개방이라는 WTO 플러스(+)가 달성되는 셈이다. 다만, 미국은 한·미 FTA에서와 동일하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프트웨어의 (재)수출에 대한 현존 제한조치를 유보하고 있다.¹⁶⁹⁾

4) 국내화조치 금지

TPP 전자상거래 장은 회원국 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무역장벽 일부를 특정하고, 이를 제거·완화시키기 위한 조문을 제정하고 있

169) TPP Annex, I-US-3.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을 위한 서버 또는 데이터센터(IDC)의 국내 설립,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의 공개 등을 요구하는 회원국의 시장보호적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외국사업자의 관련정보·설비의 활용·구축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거나, 또는 외국 소프트웨어공급자의 전유기술(proprietary technologies)을 국내 민간업체 등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이들 세 가지 규정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분야의 ‘정보·설비·기술에 관한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 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TPP 조문의 내용 및 의미를 해석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자체(사내)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식(as a service)으로 구매·이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¹⁷⁰⁾ 참고로 미국 기술표준연구소(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크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¹⁷¹⁾, 플랫폼서비스(PaaS : Platform as a Service)¹⁷²⁾, 인프라서비스(IaaS : Infrastructure as a Service)¹⁷³⁾ 등으로 구분한다. 한 마디로 클라우드컴퓨팅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상업적 경제행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IT 기능 및 자원을 외주용역(outsourcing)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¹⁷⁴⁾

TPP 전자상거래 장에는 신종 서비스인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WTO 플러스(+) 규범이 제정되어 있다.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2항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무역상대국 경제주체로 하여금 회원국 소재 설비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또는 설비의 구축 장소를 회원국 영토 내로 한정하는 요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¹⁷⁵⁾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이용·구축에 대한 회원국의 법·제도가 국내의 관련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산업정책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자유무역 친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170) NIST(미국 기술표준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견해를 참고. <https://www.nist.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t/cloud/cloud-def-v15.pdf>.

171) 인터넷을 통한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이용(Gmail, SNS 등)이 대표적이다.

172) 이용자가 자신의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는 제작환경(플랫폼)에 접근·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Google App Engine, Microsoft Azure 등이 그 사례이다.

173) 이용자가 정보저장·처리를 위해, 또는 OS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전달·구동을 위해 네트워크, 서버 등 IT 하부구조 자원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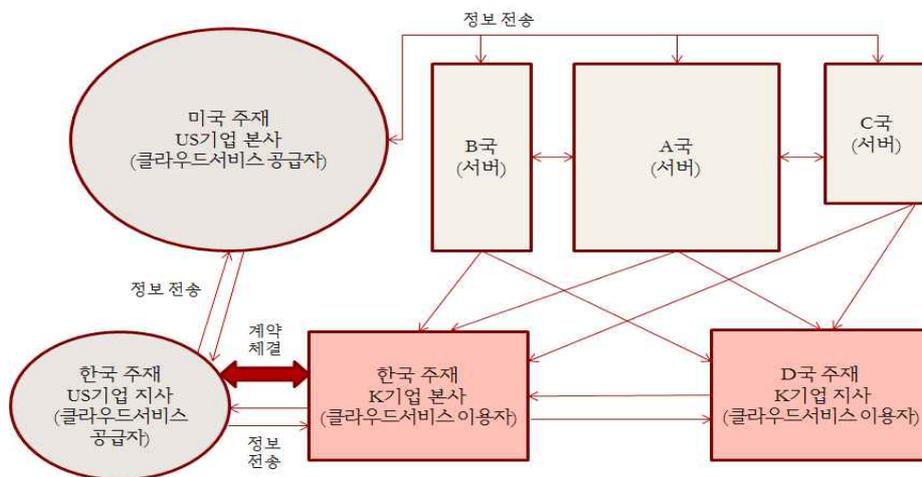
174)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IT 기능 및 자원을 스스로 구축해 이용할 때에 비해 비용절감 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함은 물론이다. 전기요금처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을 ‘utility computing’ 이라고도 지칭한다.

175)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취지를 반영한다.

물론 회원국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 규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의 보안 (security) 및 비밀(confidentiality)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이용·구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¹⁷⁶⁾ 다만, 그러한 제한조치는 해당 정책목표 달성 및 자유무역 진흥에 공히 부합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즉,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이용·구축 장소를 국내로 제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합법성(legitimacy)은 물론이고,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정책수단이 다른 어떤 대안적 정책수단에 비해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아닌,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이다.¹⁷⁷⁾

[그림 3-1] 클라우드컴퓨팅의 서비스 개요도 예시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2항은 미국 기술표준연구소(NIST) 분류한 클라우드컴퓨팅 구성요소 가운데 특히 인프라서비스(IaaS)에 대한 국내화조치의 금지를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민간회사(K기업 본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용자 정보의 수집·저장·처리를 국내 소재 미국계 기업(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 US기업)을 통해 위탁·처리한다고 하자. 이

176) 제14.13조 1항 및 3항.

177) 제14.13조 3항은 통상법의 일반 법리인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경우 컴퓨팅설비의 위치에 대한 국내화조치는 동 미국계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의 수집·저장·처리를 위해 국내 소재 제3자 서버를 활용하도록, 또는 스스로의 서버 활용을 원한다면 국내에 자체 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용어에 ‘클라우드(cloud)’가 붙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예시에서 우리나라의 민간회사(K기업 본사)가 국내 소재 미국계 기업(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 US기업)에게 전달한 이용자 정보는 US기업의 서버에 저장(처리)된다. 통상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는 자신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상이한 국가에 복수의 데이터센터(서버)를 두고 실시간(real time) 각 데이터센터의 그때그때 가동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서버 간 정보를 교환·저장함으로써 사업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US기업 소유의 서버 간 쉽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의 이러한 특성을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가변적 저장 위치에 착안하여 마치 정보가 복수의 서버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히 어느 서버에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을 ‘클라우드(cloud)’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즉, 구름(cloud)은 복수의 서버군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의 수집·저장·처리를 위해 국내 소재 제3자 서버를 활용하도록, 또는 그 대안으로 국내에 자체 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내재적·기술적 근간인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을 훼손시키고,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의 사업 최적화와는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반면,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초기 시장기반 구축, 성장잠재력, 고용 등 다양한 산업적 가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시장방어적 산업정책을 구사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불행하게도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는 이러한 우려를 균형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네거티브 의무(negative obligations)는 2항에서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권리(positive rights)는 1항 및 3항에서 모호하고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합법적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예외적 제한조치는 필요성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잠재적 논란 및 분쟁의 대상이며, 통신의 보안 및 비밀 보호라는 예시적 방향을 언급해 줌으로써 합법적 정책목표 설정의 여지를 줄여두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 간 정보이전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무역 활성화는 비단 서버 또는 데이터센터(IDC) 등 컴퓨팅 설비의 국내화조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그러한 컴퓨팅 설비가 수집·저장·가공해야 할 대상인 정보(데이터)의 국가 간 자유로운 흐름에 제약이 없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때, 정보와 설비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자유로운 상황은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점이 TPP 전자상거래 장에서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와 함께 제14.11조(국가 간 정보이전)를 도입한 배경이다.

TPP 제14.11조(국가 간 정보이전)는 다자·지역통상협정을 통틀어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의무를 명시한 최초의 강행규정으로서 WTO 플러스(+)¹⁷⁸⁾에 해당된다. 그러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은 무역상대국 경제주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¹⁷⁸⁾ 이는 유사한 초보적 내용의 협력규정을 포함하는 한·미 FTA에 비해서도 진전된 사항이다.

동 조문은 제14.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네거티브 의무(negative obligations)¹⁷⁹⁾와 포지티브 권리(positive rights)¹⁸⁰⁾를 병행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후자에 대한 기재내용은 논란 및 분쟁 소지를 내재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에 대한 제한조치는 정책목표의 합법성(legitimacy)은 물론이고, 정책수단의 최소 무역제한성(trade restrictiveness) 등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¹⁸¹⁾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TPP 전자상거래 장에 포함된 또 다른 WTO 플러스(+)¹⁷⁸⁾ 조문은 제14.17조(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이다. 동 조문은 4개의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항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공개 요건 부과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의무조항으로서, 소프트웨어 자체 및 소

178) 제14.11조 2항 :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179) 제14.11조 2항

180) 제14.11조 1항 및 3항.

181) 제14.11조 3항 :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재화(products)의 수입·유통·판매·사용의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 개인 및 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는 조치를 금지함을 밝히고 있다.¹⁸²⁾ 이와 관련하여 2항은 1항의 적용대상인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mass-market software)¹⁸³⁾와 재화에 내장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이다. 다만,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¹⁸⁴⁾에 이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배제된다.¹⁸⁵⁾

제14.17조의 3항 및 4항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요건 부과 금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3항에 따르면, 상업적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는 소스코드 제공에 관한 조건을 자유로이 포함·이행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법·규제 준수를 위해 소스코드의 수정(modification)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¹⁸⁶⁾ 하지만 후자는 “동 협정과 배치되지 않는(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라는 문언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등 엄격한 기준을 조건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4항은 특허의 신청 및 부여와 관련된 요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는 1항에 따른 공개 요건 부과로부터 면책됨을 명시한다. 그에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사법당국이 명하는 소스코드 공개도 포함된다. 다만, 특허와 관련된 여하한 소스코드 공개는 회원국의 법·관행 하에서 적법한 공개이어야 하므로 부당한 공개(unauthorized disclosure)는 방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¹⁸⁷⁾

2. 지식재산권 부문

TPP 제10장에서 7개 조문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를 다루고 있다. TPP 협상 과정에서는 지

182)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183) 협정문에 미국 법제에 따른 용어가 가감 없이 채택된 사례로서, “일반대중이 점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주문에 의하거나, 전자거래에 의하거나, 또는 전화주문을 통해 소매점에서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암호화 기능을 쉽게 수정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를 의미한다.

(www.bis.doc.gov/index.php/policy-guidance/encryption.)

184) 예컨대, 발전소, 공항, 항만 등.

18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oftware subject to paragraph 1 is limited to mass-market software or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and does not include software used for critical infrastructure.”

18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the inclusion or implemen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ource code in 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or (b) a Party from requiring the modification of source code of software necessary for that software to comply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187)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affect requirements that relate to patent applications or granted patents, including any orders made by a judicial authority in relation to patent disputes,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under the law or practice of a Party.”

식재산권과 관련한 규정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존 다른 규범들의 보호 수준보다 강화된 수준들이라는 분석이 있다.¹⁸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강화를 염두에 둔 -미국의 국내법에서 비롯된- 조항들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국내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지만, 이미 한국 국내법에는 한·미 FTA와 한·EU FTA를 체결하며 거의 모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TPP 협정문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많은 규정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TRIPs 협정 정도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표 3-9> TPP 지식재산권 장의 조문구조

조문 유형	조문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1조(정의) - 지식재산권이란 TRIPs 협정 상 지식재산권의 모든 범위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조(일반원칙) - 당사국들은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 기술 혁신 및 무역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함 - 당사국들은 권리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용 간의 균형을 달성할 필요를 인식함 - 당사국들은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시스템의 유지에 전념함
강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3조(총칙) - 이 장의 어느 규정도 TRIPs 협정 또는 기타 다자간 지식재산권 협정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가지는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훼손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4조(상표) - 각 당사국은 이해 당사자가 상표의 적용을 반대하고 등록 된 상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5조(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A에 열거된 것들은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각 당사국의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6조(국가명) - 당사국의 국가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7조 - 당사국들은 제10.2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협조하기로 합의함

출처: http://www.sice.oas.org/Trade/CHL_Asia_e/TransPacific_text_e.asp#c10

188) 박준석,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중 지적재산권 조항에 관한 고찰, 통상법률, 2014.12, 45-46면.

제4절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TiSA)

1. 협상 개요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는 2012년 미국 피터슨연구소가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난항 타개책의 일환으로 처음 제안했던 서비스 분야의 ‘복수국 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이다.¹⁸⁹⁾ 한 마디로 이는 서비스무역에 관해서는 DDA의 전반적인 부진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적으로 시장자유화를 진전시켜 보자는 취지를 반영한다. 동 정책제안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¹⁹⁰⁾ WTO 회원국들은 ‘RGF(Really Good Friends)’로 지칭되는 서비스협상그룹을 형성해 서비스 분야 시장자유화에 관한 비공식 예비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12월에는 회원국들 간 본격적인 협상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현 시점에서 TiSA는 소수의 WTO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협정으로서 엄밀히 말해 WTO체제 내의 협정은 아니다. 하지만 여타 WTO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협상 참여와 협정내용의 내실화를 통해 TiSA의 법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면, 추후 참여 회원국들 간 합의 하에 복수국 간 협정 형식으로 WTO협정에 편입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WTO협정에 편입된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TiSA는 통신, 보험, 시청각(audiovisual), 회계, 고등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인터넷 등 기술발전에 따라 UR 이후 등장한 신종 서비스에 관한 시장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⁹¹⁾

TiSA 회원국들이 이미 혼합접근방식(hybrid approach)에 기초한 양허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²⁾ 구체적으로 시장접근 양허(market access commitments)에 관해서는 포지티브 접근(positive listing), 내국민대우 양허(national treatment commitments)에 관해서는 네거

189) Inside US Trade(2012), Peterson Institute Argues for Services Deal Along Lines of U.S. Position, May 3, 2012.

<http://insidetrade.com/Inside-US-Trade/Inside-U.S.-Trade-05/04/2012/petersoninstitute-argues-for-services-deal-along-lines-of-us-position/menu-id-710.html>.

190)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대만, 일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이스라엘, 파키스탄, 터키.

191) Matthew Kronby and Milos Barutciski(2013),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Opportunities for Canadian Service Suppliers, BENNETT JONES LLP, April 3, 2013. http://www.bennettjones.com/Publications/Updates/The_Trade_in_Services_Agreement_Opportunities_for_Canadian_Service_Suppliers/#page=1.

192) Nigel Cory and Stephen Ezell(2016), Crafting an Innovation-Enabling Trade in Services Agree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June 2016, p. 20.

티브 접근(negative listing)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원국들이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시장개방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신중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착하는 미국 입장에 배치되지만¹⁹³⁾, GATS 양허체계와의 유사성 및 중국 등 신규 회원국의 협상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TiSA의 WTO협정 편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TPP 전자상거래 부속서의 조문구조 및 특징

협정 조문	TiSA 부속서	TPP(제14장)	한·미 FTA(제15장)
적용범위·예외	제1조	제2조◎	제2조◎
국가 간 정보이전	제2조	제11조◎	제8조○
온라인 소비자보호	제3조	제7조◎	제5조○
개인정보보호	제4조	제8조◎	×
스팸메시지	제5조	제14조◎	×
SW소스코드	제6조	제17조◎	×
인터넷 접근·이용	제7조	제10조○	제7조○
컴퓨팅설비 위치	제8조	제13조◎	×
전자인증·서명	제9조	제6조◎	제4조◎
무관세	제10조	제3조◎	제3.1조◎
국제협력	제11조	제15조○	×
검토	제12조	×	×
안보예외	제13조	×	×
용어정의	제14조	제1조◎	제9조◎
디지털재화 비차별대우	×	제4조◎	제3.2조~3.6조◎
전자상거래 국내법 체계	×	제5조◎	×
분쟁해결	×	제18조◎	×
전자무역	×	제9조○	제6조○
인터넷 접속료 부담	×	제12조○	×
사이버 정보 보안 협력	×	제16조○	×

주 : ◎(강행규정), ○(협력규정), ×(조문부재)

외부누출 자료¹⁹⁴⁾에 의하면, TiSA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속서(Annex)가 포함되어 있다. 동 부속서는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협력(제11조), 검토(제12조), 용어 정의(제14조) 등을 제외하면 모든 조문이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일반규정 및 강행규정의 성격

193) Inside US Trade(2013), ‘Positive List’ In Services Deal Requires Periodic Renegotiation Says CSI President, February 5, 2013.

<http://insidetrade.com/201302052423579/WTO-Daily-News/Daily-News/positive-list-in-services-deal-requires-periodic-renegotiation-says-csi-president/menu-id-948.html>.

194) Burcu Kilic and Tamir Israel(2013), Analysis : Leaked TiSA Annex on Electronic Commerce, <https://wikileaks.org/tisa/ecommerce/05-2015/analysis/Analysis-TiSA-Electronic-Commerce-Annex.pdf>; 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Annex on Electronic Commerce, dated September 16, 2013, <https://wikileaks.org/tisa/ecommerce/>.

을 갖는다. 물론 일부 강행규정 조문에는 부분적으로 협력규정이 포함되어 있다.¹⁹⁵⁾ 특히 TPP에서와 유사하게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분야 정부조치에 관한 실체규범으로서 국가 간 정보이전, 컴퓨팅설비의 위치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등 소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에 대한 비차별대우에 관한 조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주로 디지털재화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근본적 입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비교적 최근 전해진 외신¹⁹⁶⁾에 따르면, 미국이 전자상거래 부속서 내에 ‘양방향 컴퓨터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¹⁹⁷⁾에 관한 새로운 조문 하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로 콘텐츠 유통을 통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또는 온라인 중개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에 대한 면책조문(safe harbor provision)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 조문은 두 가지 유형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동 사업자들에게 제3자가 제작한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동 사업자들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콘텐츠에 대해 취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그러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을 위해 사용된 기술(수단)을 제공한 공급자(technology providers)도 면책대상이다. 다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치, 형법 이행과 관련된 조치, 정당한 법 집행 준수를 위한 경우 등은 두 가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양방향 컴퓨터서비스 조문은 사실상 미국 국내법¹⁹⁸⁾에 기초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EU,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언급한 외부누출 자료에 기초해 TiSA 전자상거래 규범이 소프트웨어 무역에 대해 갖는 의의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TiSA 협상자료의 비공개가 주된 이유이다. 그 다음, 전자상거래 분야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한 미국과 EU 간 타협의 방향성을 선불리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그러한 불확실성 증폭에 일조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 TiSA도 TPP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조문내용의 가변성, 협상자료 비공개 등 제약조건 하에서 소프트웨어 무역과 관련한 TiSA 전자상거래 규범의 WTO 플러스(+) 여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망한다.

195) 예컨대, 제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196) <https://www.eff.org/deeplinks/2017/01/leaked-tisa-safe-harbor-right-idea-wrong-place>.

197) 누출된 TiSA 문안에 의하면 “any system or service that provides or enables electronic access by multiple users to a computer server.” 로 정의된다.

198) 47 U.S.C. § 230, Communications Decency Act.

2.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요 WTO 플러스(+) 규범

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구 무관세

외부에 누출된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의 제10조(무관세)는 한시성을 삭제한 영구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WTO 플러스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 무관세의 부여 대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EU의 견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국 문안은 그 대상이 ‘전자전송 콘텐츠(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로서, 미국이 제안한 그 용어 정의는 미국의 기체결 FTA 상의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와 사실상 동일하다.¹⁹⁹⁾ 반면, EU 문안은 영구 무관세 부여 대상이 WTO 각료선언과 동일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으로서, 이는 전자적 전송 단위에 부과될 수 있는 비트세(bit tax) 부과 금지를 의미한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미국 문안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전통적으로 물리적 전달매체에 실려 국가 간 거래되던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가 전자적 전송에 의할 경우에도 각 당사국이 이를 상품과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관세 대우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EU 문안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무관세 대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당사국이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GATT의 관행과 달리 디지털콘텐츠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EU 입장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관세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이 TISA 협상에 참여한다는 점, WTO 차원의 현행 규범이 무관세 부여 대상을 전자적 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송(transmission)과 콘텐츠(contents) 분리 구도 하에 후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각별히 중시하는 EU 통상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화조치 등 TISA 여타 조문에 대한 EU의 양보를 조건으로 무관세 부여 대상을 기존과 같이 전자적 전송으로 규정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차별대우

199)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 means any content that is digitally encoded an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including a computer program. For greater certainty,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 does not include digitized representations of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money. This definition is without prejudice to whether 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 is a good.”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및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의무 등 소위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ion) 부여가 중요한 이유는 상품과 서비스 간에는 기술중립성이 전통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상규범 차원의 공감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협정 내에 비차별대우 의무가 부재할 경우에는 과거 물리적 전달매체에 실려 국가 간 거래되던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될 경우, 이를 전송(transmission)과 콘텐츠(contents)가 융합된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로 간주함으로써 그에 대한 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 GATS 하에서 신종서비스 개방여부는 회원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전송은 GATS 차원에서 통신서비스로 이미 편입되어 있지만, 전송(서비스)과 콘텐츠(상품)의 결합물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서 현 GATS체계는 사실상 무력하다.

그러한 결합물을 상품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서비스로 봐야할지, 서비스로 간주할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분야의 소속인지 등 그 어떤 것도 GATS 하에서 합의된 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전략은 비차별대우를 일반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GATT체계와 유사하게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에 대해서도 비차별대우를 연장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분류문제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인 배송방식(물리적 전달매체 또는 전자적 전송)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⁰⁾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한 비차별대우 조문 제정을 위해서는 전송과 콘텐츠의 분리를 통해 그러한 혜택의 부여 대상을 디지털콘텐츠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FTA, TPP 등 미국이 참여한 FTA가 일관되게 정의하여온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는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셈이다. 하지만 문화적·정치적 고려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독 강조하는 EU가 미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누출된 TiSA 협정문의 전자상거래 장에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규정 부재는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소프트웨어공급자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전자전송’을 양허되지 않은 신종서비스로 간주함으로써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개방

회원국의 시장개방 양허와 관련하여 혼합접근방식(hybrid approach)을 채택한 TiSA 차원의 합의가 추후 번복되지 않는 이상, 신종서비스 시장개방은 전적으로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진

200) 물론 이는 회원국의 시장개방 양허와 관련하여 GATS의 포지티브 접근(positive listing) 또는 TiSA의 혼합접근방식(hybrid approach)을 전제로 가능한 논리이다.

다. 이는 곧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개방 여부가 TiSA 차원의 양허협상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양허표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회원국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진입을 합법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만일 양허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 협상상대국의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크든 작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시장의 개방이 가시화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라. 국내화조치 금지

국내화조치 금지와 관련하여 TiSA와 TPP의 유사성은 매우 높다.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관한 조문을 공히 도입하고 있으며²⁰¹⁾, 조문의 기본적인 구조도 양자 간 흡사하다. TPP와 동일하게 각 조문별로 공히 국내화조치를 금지한다는 네거티브 의무를 명기하면서도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전제로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개괄적 수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TiSA 전자상거래 장에는 필요성심사에 의한 예외에 더해 TPP에서와 유사하게²⁰²⁾ 국내화조치 조문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분야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려는 논의도 다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subsidies or grants) 등에 대해서는 TiSA 전자상거래 부속서 규정 전체의 적용 배제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²⁰³⁾ 추가적으로 국내화조치에 관한 조문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국가 간 정보이전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수집·가공한 공공정보²⁰⁴⁾ 및 그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서도 조문 상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²⁰⁵⁾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국내화조치에 관한 3개 조문 상의 네거티브 의무(negative obligations)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분야, 정부조달 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및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율적인 국내정책 수립·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불필요한 국가 간 논란 없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201) 각각 Article 8(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rticle 2(Movement of Information/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Article 6(Transfer or Access to Source Code), 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Annex on Electronic Commerce, dated September 16, 2013, <https://wikileaks.org/tisa/ecommerce/>.

202) TPP 제14.1조(용어 정의, covered person), 제14.11조 2항, 제14.13조 2항, 제14.2조 3항, 제14.4조 3항.

203) Article 1.3, Article 1.6(a), Article 1.6(b), Ibid.

204) 측량정보, 의료정보, 납세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205) [CA propose: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that information.], Article 8, Article 2,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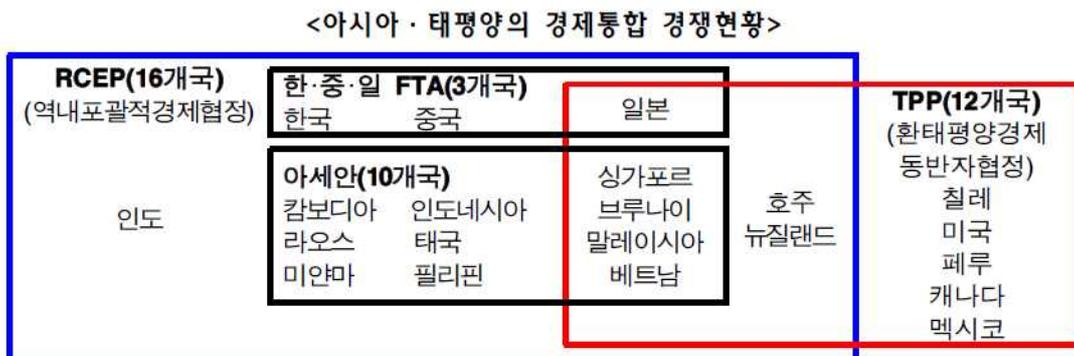
위한 (공공조달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요건의 활용²⁰⁶⁾, 국내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 TPP 전자상거래 규범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로 국내화조치 금지규정이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거론되고 있기에²⁰⁷⁾ 추후 금융서비스 분야가 TiSA 전자상거래 규범의 국내화조치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5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1. 협상 개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그 독특한 명칭에도 불구하고²⁰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협상 중인 복수국 간 체결될 예정인 메가(Mega) FTA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RCEP 참여 회원국 현황 파악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한 기존의 주요 FTA 및 가입국들의 관계를 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통합 가입 현황



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개요 및 영향, 30면.

206)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조항은 보통은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상용SW사업자’를 위한 조항으로 이해되나, 실제로는 SW와 관련된 공공조달사업의 요구사항에 공개SW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공개SW 사용 또는 소스코드 공개는 특정 사업자에게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코드 투명성을 높여 보안취약점을 없앨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로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joinup.ec.europa.eu/community/eupl/news/tisa-agreement-threat-open-source-procurement>

207) Rachel F. Fefer, Shayerah Ilias Akhtar and Wayne M. Morrison(2017),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CRS Report 7-5700, R4456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34.

208) 참고로 과거 우리나라와 인도 간 체결된 양자 간 FTA의 정식 명칭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RCEP은 후발개도국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특히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분야 협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주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조문작업을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RCEP 협상 과정에서 일부 규정들에 대한 중국, 인도 및 아세안의 거센 반발이 있는 것도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 전자상거래

여타 분야와 달리 RCEP의 전자상거래 장의 구체적 모습은 아직까지 외부에 누출된 적이 없어 현재 진행형인 TISA에 비해서도 내용분석을 위한 근거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독립된 전자상거래 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마련될지, 그 상자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RCEP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역내 규범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자상거래 규범을 담은 별도의 장(chapter)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것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²⁰⁹⁾

한편, RCEP의 정치적 리더격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RCEP 전자상거래 장이 한중 FTA의 전자상거래 장을 부분적으로 확대·변형한 형태의 소극적·제한적 규범으로 타결될 개연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법적 구속력을 동반하는 WTO 플러스(+) 규범을 수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한중 FTA는 무관세 이외에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WTO 플러스(+) 조문을 전자상거래 장의 강행규정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절차의 전면적 적용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협력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통해 미국식의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 기조가 야기할 수 있는 정보(data)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RCEP 회원국들 가운데에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국가들도 존재한다. 미국식의 오픈 인터넷 기조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호주와 일본이 대표적이다. 미국과의 TPP 전자상거래 조문협상을 직접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TPP 전자상거래 장에 포함된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국내화조치에 관한

209) “~ many RCEP nations including Australia, Japan and China, are pushing for inclusion of a host of elements for ‘Terms Of Reference’ for RCEP negotiations concerning e-commerce. This is with a view to have some binding commitments from the RCEP members on liberalising e-commerce and ensure that the final pact has a separate chapter on e-commerce.”, E-commerce : RCEP nations talk details, July 19, 2017, The Hindu.

3개 조문을 고스란히 RCEP에도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⁰⁾

그런데 RCEP 회원국들 가운데 인도가 국내화조치에 관한 조문작업 진전과 관련한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도는 RCEP 차원은 물론이고 WTO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어떠한 강행규범 채택에도 반대하고 있다.²¹¹⁾ 특히 인도는 국내화조치에 관한 강행규범이 후발개도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규제주권 행사, 기술이전 및 반독점규제 등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²¹²⁾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RCEP 전자상거래 장이 별도 장으로서 그간의 주요 FTA에서 나타난 협정규정들을 다수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WTO 플러스(+) 규범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국내화조치에 관한 조문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협력규정 형식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국의 규제권한과 자유무역 가운데 전자에 더 많은 무게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식재산권

RCEP의 회원국 구성을 고려할 때, TPP 수준의 지식재산권 분야 협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상된다.²¹³⁾ 후발개도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는 공정무역 차원의 문제이기보다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자력갱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10월에 유출된 RCEP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TPP 협정의 조문을 상당히 축소 또는 왜곡 해석함으로써 저작권의 예외를 많이 인정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210) RCEP nations talk details on E-commerce, Jul 26, 2017.

<http://www.drishtiiias.com/upsc-exam-gs-resources-RCEP-nations-talk-details-on-E-commerce>.

211) “India has been opposing binding norms on opening up the e-commerce sector at the level of RCEP as well as the global level (WTO) talks.”, Ibid.

212) “All these commitments will have serious ramifications on the development prospects and sovereignty of countries such as India. ~ Prohibition on compulsory disclosure of source code (codes behind a software) would be a hindrance to technology transfer and also make it difficult to check anti-competitive practices by companies.”, Ibid.

213) 라미령·김제국(20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면.

〈표 3-11〉 RCEP 저작권 관련 조문 구조

조문 유형	조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절.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지식재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지식재산은 이 장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지식재산을 지칭한다.(제안: 아세안, 한국, 중국, 인도, 반대: 호주) - (2안) 지식재산권은 TRIPS 협정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특허 및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제안: 호주, 반대: 아세안, 한국, 중국, 인도) - (3안) 지식재산권 TRIPS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범위를 의미한다.(제안: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권리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소진을 위한 자체 체제를 수립 할 자유를 가진다.(제안: 아세안, 호주, 인도, 뉴질랜드, 한국, 반대: 일본) - (2안)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이 협정 제 1.5 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고갈에 대한 자국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안) 권리소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제안: 일본, 반대: 호주, 아세안, 뉴질랜드, 한국, 중국)
제2절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배타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국은 저작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알리는 독점권을 제공해야 한다.(제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소프트웨어의 정부 이용) (제안: 아세안, 뉴질랜드, 중국, 호주, 한국, 반대: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국은 (i) 중앙 정부(일본: 기관)가 법률에 의해 허가되고 이 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법률, 규정 또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ii) 각 지역 및 지방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출처: 비공개 자료

RCEP에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중 소프트웨어에 관련내용을 위의 〈표 3-11〉에 정리하였다. 특히 RCEP 협상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이 소프트웨어의 정부 이용에 관한 규정 명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령 제2.4조(소프트웨어의 정부 이용)에 대해서 일본은 이용의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기관(agency)’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아닌 ‘소프트웨어 이용의 지속’으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CEP 협정에 위배되는 정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용양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게 법률이나 정책 등을 마련하도록 맡기는 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²¹⁴⁾

214) Kimberlee G Weatherall(2016), RCEP Analysis - Leaked IP Chapter 15 October 2015. Draft as at 26 April 2016, p. 6.

제4장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 동향 조사·분석

제1절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현안 논의 동향

1. 미국의 디지털무역정책

가. 디지털무역정책(Digital Trade Agenda)

1) 정책 연혁

미국 대통령은 자국 헌법에 따라 여하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전권을 보유한 다. 하지만 무역협정에 따라 국내법을 변경(이행)할지 말지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가 보유한다. 이와 같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수단이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로 지칭)’이다.²¹⁵⁾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TPA는 미국 행정부가 최선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과하는 가이드라인 및 의회 권한을 기재한 법안이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한 법안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하게 된다.²¹⁶⁾

TPA는 미국의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1975년 1월 최초로 승인되어 1979년 동경라운드(Tokyo Round) 협정법 제정에 활용되었던 ‘신속처리권한(FTA: Fast Track Authority)’이 그 모태이다. 물론 TPA와 신속처리권한은 그 내용 측면에서 실질적 차이는 없다. 동 신속처리권한은 1994년까지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국제협정 체결에 활용되었지만, 1994년 4월 15일 UR 협정 비준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는 2001년까지 유지되었다.²¹⁷⁾ 그런데 2002년 미국 의회는 거의 8년간의 공백을 깨고 ‘무

215) 즉, TPA는 무역협정 협상 추진의 효율성 및 무역협정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행정부와 의회 간 파트너십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16) “Up-or-down vote” 라고 부른다.

217)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이 NAFTA협정에 노동 및 환경 관련 부속협정을 추가시킨 것에 대해 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신속처리권한의 연장을 반대하였고, 민주당 역시 행정부 중심의 대외통상협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회 내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클린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장에 실패하게 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미국 무역증진권한 (TPA)의 도입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2-25호).

역촉진권한법(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²¹⁸⁾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새로운 명칭의 신속처리권한, 즉 TPA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동 무역촉진권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국 행정부 내의 통상협상 추진조직인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로 하여금 디지털 무역장벽 방지를 위해 다자·지역통상협정을 체결하라는 것이다.²¹⁹⁾ 그 이후 미국은 WTO에서는 물론 양자 및 복수국 간 FTA에서 일관되게 디지털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에 매진해 왔다.

2) 정책 개요

미국 디지털무역정책의 목표는 한 마디로 디지털무역 활성화에 필요한 일련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전자적 배송 서비스(electronically delivered services)’의 시장개방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자적 배송 서비스와 직결된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s),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등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각종 전자적 배송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에 대한 무역장벽이 최대한 철폐될 수 있도록 분류 및 양허방식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자·지역통상협정을 통해 전자적 배송에 대한 차별, 신종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국적 및 전달매체에 기초한 디지털재화의 차별과 같은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미국의 주된 관심사이다. 상당수의 신종서비스가 전자적 배송과 결합된다는 점, 전자적 배송의 주된 대상물이 디지털재화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디지털무역정책은 콘텐츠(contents)의 독창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의 자유무역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물리적 매개체(physical carrier media)에 실리는 소프트웨어에 비해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양자를 동종제품(like products)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을 전제로 한다.

물론 미국의 디지털무역정책이 디지털재화의 자유무역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적 전송물 자체에 대한 영구 무관세, 디지털무역에 대한 기존 WTO협정 무역규범 적용, 필요성 심사(necessity test)와 양립하는 전자상거래 규제제도 제정 등을 포함하는 별도 전자상거래

218) US Public Law 107-210, 107th Congress, August 6, 2002.

219) Sacha Wunsch-Vincent(2003), “The Digital Trade Agenda of the US : Parallel Tracks of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iberalization”, Aussenwirtschaft 58, Jahrgang(2003), Heft I, Zürich: Rügger, SS. 7~8.

장(chapter)을 통해 상품,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두루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수평적 디지털 무역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특히 미국은 온라인 환경 하에서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역상대국들로 하여금 개선된 지식재산권 규범인 ‘WIPO 인터넷 조약(WIPO Internet Treaties)’²²⁰⁾의 준수를 요구해 왔다.²²¹⁾

3) 분야별 정책목표²²²⁾

□ 상품 무역

디지털무역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ITA(정보기술협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 상품 무역 분야에서 특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의 적용범위에는 가입 회원국 수, 협정 적용대상 품목 및 협정 내용까지를 의미한다. 즉, 미국은 WTO의 상품 분야 복수국 간 협정인 ITA에 더 많은 회원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ITA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및 특히 비관세장벽²²³⁾의 철폐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재화가 물리적 매개체에 의해 국가 간 거래될 경우, 미국은 ITA 미가입 무역상대국들이 물리적 매개체에 담긴 콘텐츠의 가치가 아닌 물리적 매개체 자체의 가치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서비스 무역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적 배송으로 인해 기존 통상규범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가능한 한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신종서비스 양허문제이다. 가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과거 소프트

220) 참고로 WIPO는 TRIPs 제정 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WIPO 저작권 조약(The 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체결했다. 1996년 타결되어 2002년부터 발효된 이들 조약을 통상적으로 WIPO 인터넷 조약이라고 지칭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221) 실제로 미국은 WIPO 인터넷 조약 준수를 위해 지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을 발효시켰다. 동 법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불법복제방지 수단을 포함시킬 것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222) 이하 내용은 H.R.3005 -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107th Congress(2001-2002), Section 2102(b)(2) on services, 2102(b)(4)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02(b)(7)(B) and 2103(d) on IT products, 2102(b)(8) on regulatory practices, and 2102(b)(9) on e-commerce)를 참고.

223)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 및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

웨어 무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임차)사용-요금 지불’이라는 특수한 속성에 의한다는 점에서 신중서비스로 간주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시장개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이 FTA협상에서 구체화한 전략이 네거티브 접근(negative listing)에 의한 양허이다. 또 다른 사안은 서비스의 전자적 배송에 대한 차별 방지 문제이다. 미국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배송방식 측면에서 인터넷 도입 이전의 오프라인(offline) 기술에 비해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online)을 차별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²²⁴⁾

한편, 미국은 서비스 분야 중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이하 CRS로 지칭) 등의 시장개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인터넷 확산에 따른 신중서비스에 의해 공급되는 디지털콘텐츠가 주로 시청각서비스 및 CRS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entertainment services), 게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이 그 예이다. 물론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중 서비스의 전송행위를 관할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양허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심화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가운데 시청각서비스에 관한 미국의 정책방향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편이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문화적·정치적 측면을 간과할 경우, 글로벌 통상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간 유지되어온 첨예한 대립 구도가 반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우선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상존하는 보조금(subsidy)에 주목하면서, 보조금들 중에서 무역왜곡(trade distortion) 효과가 아주 높은 보조금의 철폐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미국은 방송, 영화 등의 분야에 상존하는 규제²²⁵⁾에 대해서도 전면 철폐보다 현행 규제의 동결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²²⁶⁾ 마지막으로 VOD(Video-On-Demand) 등 신중 시청각서비스의 양허도 미국의 추구하는 주요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 전자상거래

미국 디지털무역정책의 근간인 ‘무역촉진권한법(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224) 이는 WTO 분쟁을 통해 서비스 양허에 대한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 적용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WTO Document(2009), China—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R, August 12, 2009, para. 7.1258.

225) 방송쿼터, 스크린쿼터 등이 전형적인 규제 사례이다.

226) 국내 방송서비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스크린쿼터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한미 FTA에서 양허한 내용은 이러한 미국의 디지털무역정책 목표와 대체로 부합한다(관계부처 합동(2007),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pp. 155~157).

Act of 2002)’은 전자상거래를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의 전자상거래’로 매우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디지털재화 무역을 국가 간 전자상거래와 동일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은 디지털재화에 대한 통상규범 제정에 집착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미국의 디지털무역정책 목표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우선 미국은 상품,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존 WTO 규범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디지털무역정책의 개괄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²²⁷⁾ 물론 디지털재화 무역 자체에 대한 세부목표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은 디지털재화의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에 대한 각국의 재량권은 인정하면서도 전자적 배송에 의하는 디지털재화와 물리적 매개체에 의하는 디지털재화 간 어떠한 차별대우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에 대해서는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하에서의 한시적 무관세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관세 적용 기간을 영구히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이 주도한 많은 FTA를 통해 디지털재화에 대한 영구 무관세가 이미 관철된바 있다.

흥미롭게도 ‘무역촉진권한법’에는 비교적 최근 핵심현안으로 등장한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 금지를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우선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무역관련 조치(trade-related measures)’ 금지를 구상해 두고 있다.²²⁸⁾ 다만, 그러한 무역관련 조치가 합법적 정책목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위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통과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혀두고 있다.²²⁹⁾ 두 번째는 국가 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다만, 디지털무역정책의 수립 당시에는 중요성을 “인정한다.(acknowledge)”는 정도의 협력규정으로 구상되었지만,²³⁰⁾ 최근에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강행규정 형태로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

227) 실제로 미국이 주도한 FTA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이 모두에서 기존 WTO 규범 적용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예컨대, 한미 FTA 제15.1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The Parties recognize ~ the applicability of the WTO Agreement to measures affecting electronic commerce.”

228) 이러한 입장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인 “시장방임 접근(hands-off approach)”과 양립한다. House of Representatives(2001), Impediments to Digital Trade,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Commerc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of the Committee of Energy and Commerce, First Session, May 22, 2001, Serial No. 107-36(107th Congress), Mann, Catherine L.(2000), Transatlantic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IIE Working Paper No. 00-7,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29) “Ensure that governments refrain from implementing trade-related measures that impede electronic commerce. Wher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require domestic regulations that affect electronic commerce, obtain commitments that any such regulations are the least restrictive on trade, non-discriminatory, and transparent, and promote an open market environment.”, H.R.3005 -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107th Congress(2001-2002), 116 STAT. 997.

다. 이러한 입장은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chapter)에도 조문으로 구체화되어 있다.²³¹⁾

□ 지식재산권

미국 디지털무역정책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인터넷 확산에 따른 디지털 환경 하에서 위협에 노출된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인터넷 등 새로운 전송플랫폼에 의한 저작물의 불법사용 등 열악해진 환경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수단을 통상규범에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 공간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디지털무역정책 목표로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국내법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²³²⁾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두 가지 현안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무역상대국들이 WTO 하에서 합의된 기존의 TRIPs 규범을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환경 하에서 TRIPs 자체가 직면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TRIPs의 법적 기반을 이루는 WIPO 하의 대부분의 조약들²³³⁾이 UR(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제정되어 급속한 디지털 기술발전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뿌리 깊은 인식에 의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자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디지털 환경 하의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1996년 타결된 ‘WIPO 인터넷 조약(WIPO Internet Treaties)’ 비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 조약은 특히 1886년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1961년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한 로마협약,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

230)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free flows of information should be explicitly acknowledged.”
Sacha Wunsch-Vincent(2003), *a.a.O.*, S. 12.

231) 한미 FTA 제15.8조(국가 간 정보이동):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 facilitating trade, and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refrain from imposing or maintaining unnecessary barriers to electronic information flows across borders.”

232) “ensuring that the provisions of any multilateral or bilateral trade agreement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is entered into by the United States reflect a standard of protection similar to that found in United States law.”, H.R.3005 -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107th Congress(2001-2002), 116 STAT. 996.

233) 1883년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1886년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1961년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한 로마협약,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베른협약, 1989년 집적회로에 한 지식재산권조약 등.

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베른협약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⁴⁾ 그 핵심내용에는 암호화와 같은 TPM(Trusted Platform Module)²³⁵⁾이나 권리관리정보(RMI :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²³⁶⁾와 같은 저작권의 디지털 정보화 수단을 삭제·변경·우회·회피했을 경우 필요한 법적 보호 및 구제가 포함되어 있다.

나.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상의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1) 일반 개요

미국의 1984년 통상법에 따라 USTR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 미국인에 의한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중요한 장애나 왜곡을 초래하는 외국정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acts, policies or practise)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하원 세입 세출위원회와 상원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1984년 통상법은 USTR로 하여금 외국정부의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미치는 무역 왜곡적 영향(trade distorting impact)을 평가하도록 하고, USTR의 보고서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내용들을 포괄하는 보고서가 1986년부터 매년 3월말 발표되어 왔는데, 이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 라고 한다.

2) 최근 NTE 보고서의 특징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를 고려하여 2016년부터 디지털무역장벽 철폐를 특별히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6년 NTE 보고서에서부터 지적된 핵심 디지털무역장벽에는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자의적 차단²³⁷⁾(중국), 데이터 현지화 요건²³⁸⁾(러시아, 인도네시아), 국내산 요건²³⁹⁾(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된바 있다.

234) Ficsor, M.(1997), Copyright for the Digital Era: The WIPO ‘Internet’ Treaties,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 21 (3-4).

235) 컴퓨팅 운영 환경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사용자 데이터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TCG(Trusted Computing Group)에서 제안한 Chip으로 여러 업체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TCG에서 발표한 사양(Specification)에 TPM의 내부 구조와 동작 방법에 대한 모듈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36) 저작자 및 저작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저작물 및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등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저작물이나 음반 등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함.

237) ‘arbitrary blocking of cross-border data flows’ 로 표현되며, 인터넷 검열(필터링, filtering) 및 웹 사이트 차단을 포함한다.

238)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로 표현되며,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 및 컴퓨팅 설비의 국내설치 요건을 포함한다.

239) ‘local content requirements’ 로 표현되며, 주파수 경매(브라질), 무선 초고속인터넷 사업권 경매

그런데 2017년 NTE 보고서에서는 여타의 국별 무역장벽 내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디지털무역장벽 섹션(section)을 만들어 예년 보고서에 비해 훨씬 더 상세하게 디지털무역장벽을 기술하고 있다.

디지털무역장벽 섹션(section)은 기존의 NTE 보고서가 기술해 온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무역장벽은 물론이고,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모든 무역장벽을 적시하고 있다.²⁴⁰⁾ 다시 말해, 미국이 바라보는 디지털무역장벽이란 디지털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디지털기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분야에 상존하는 무역장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괄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무역장벽 섹션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디지털재화, 인터넷기반서비스(internet-enabled services) 등에 대한 제한 조치 및 차별적 무역관행, 무역제한적 기술요건(technology requirements)²⁴¹⁾ 등 최근 현안으로 논의되어온 국가별 무역장벽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기술무역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관해서는 2017년 NTE 보고서에서도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기술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표준관련조치(standard-related measures)가 합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조치가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⁴²⁾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서 최근 무역상대국들이 부쩍 동원하는 국내산 요건(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²⁴³⁾으로 인해 미국의 지식재산권(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²⁴⁴⁾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국이 생산(보유)한 기술, 서비스, 장비, 부품, 재료 등의 사용을 밝힌 입찰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매절차 운영을 통해 국내산 제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40) “This section addresses all issues that are integral to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those barriers formerly categorized under “electronic commerc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2.

241) 예컨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의 공개요건, 불합리한 보안기준 요건 등.

242) “Standards-related ~ measures also enable governments to pursue legitimate objectives such as protecting human, plant, and animal health, the environment, and preventing deceptive practices. But standards-related ~ measures that are nontransparent and discriminatory can act as significant barriers to U.S. trade.” Ibid, p. 2.

243) 여기에서 미국이 국내산 요건을 단순히 ‘local content requirements’로 표기하기보다 ‘LBT(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로 표기한 것은 추후 동 사안에 관한 별도의 특별한(ad hoc) 규범을 제정할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GATT 하의 기술무역장벽(TBT)에 관한 협정을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TiSA 협상에서 그에 관한 일련의 규범을 제정 중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244)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has observed a growing trend among our trading partners to impose 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favor, or stimulate domestic ~ intellectual property at the expense of ~ foreign-owned or developed intellectual property.”, Ibid, p. 3.

3)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장벽 사례

□ 디지털무역장벽

● 데이터의 이전(Movement of Data)

구글(Google)의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요구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이 USTR의 첫 번째 지적사항인 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USTR은 한국에서 위치정보 데이터 국외이전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공급자의 교통정보, 내비게이션 등 혁신적인 양방향서비스(interactive services) 제공에 애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STR은 2016년 지도정보 반출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고화질위성사진(high-resolution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국외이전 제한 입장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 우려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USTR은 주요 무역상대국 중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는 국가가 유일하게 한국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²⁴⁵⁾

더 나아가 USTR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함과 동시에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⁴⁶⁾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우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데이터 저장 최종 국가, 제3자의 정보 이용 가능성, 정보 보유 기간 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국외 이전보다 한국 내 제3자 이전이 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국 서비스제공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2016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²⁴⁷⁾

● 컴퓨팅설비의 국내화(Facilities Localization)

컴퓨팅설비의 국내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현안이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클라우

245) “Korea is the only significant market in the world that maintains such restrictions.”, Ibid, p. 284.

246) “The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mposes stringent requirements on service providers seeking to transfer customer data outside Korea. ~ These restrictions pose barriers to the provision of Internet-based services that depend on third-party data storage and processing services, and effectively privilege Korean third-party services over foreign services.” Ibid, pp. 284~285.

247) “In April 2016, Korea amended its IT Network Use and Protection Act, which imposes stringent protections on the personal data collected and handled by telecommunication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The amendments impose significant penalties for violating data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heavy fines for telecommunication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that transfer personal data cross-border without consent. Failure to obtain consent results in a fine of up to three percent of the revenue related to the transfer.”, Ibid, p. 285.

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CCPA : Act on Promotion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Users)²⁴⁸⁾ 상의 국가기관 클라우드컴퓨팅망 분리 요건(CCPA Guideline)²⁴⁹⁾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services)’²⁵⁰⁾ 분야의 컴퓨팅설비 국내화 요건이다. 이 가운데 USTR은 특히 국가기관 클라우드컴퓨팅망 분리 요건에 대해 비강제적 방식으로 외국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망의 분리 요건은 공공기관에 대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이용자에 대한 클라우드컴퓨팅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망을 구축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별도의 암호화 알고리즘(encryption algorithm) 적용을 요구하는 요건이다. 물론 CCPA 가이드라인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위반 시에도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 요건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교육기관, 국영은행 및 국립병원 등을 포함하여 1만 개 이상이며, 대다수 기관들이 동 요건을 준수하고 있어 외국업체들의 시장진입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²⁵¹⁾

● 기타 현안(Other Issues)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법규에 따르면, 원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신의 정보저장설비에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 및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한국 발행 신용카드를 통한 원화 기반 상품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운영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services)’²⁵²⁾에 의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에 부합하는 지불시스템 마련을 꺼리는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한국 시장 진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5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업체 및 해외 본사의 경우에는 국내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등록, 고객 신용카드 정보의 국외 컴퓨팅설비 저장 등을 허

248) 클라우드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2015.3월 공포, 2015.9월 시행)으로서, 클라우드 연구개발 지원,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249) NTE 보고서에서는 CCPA Guideline의 정식명칭을 ‘the Data Protection Standards for Cloud Computing Services’로 표기하고 있음

250)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모든 자금 결제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 서비스에는 중대형 회원사의 대량 결제 및 관리, 소액 쇼핑물의 자금결제 및 선불계정관리 등이 포함된다.

251) “Under the Korean government’s definition, over 10,000 institutions are subject to the CCPA Guidelines, including educational institutions, public banks, and public hospitals. While the CCPA Guidelines are only “recommendations,” with no penalty for non-compliance, Korean institutions usually follow such guidelines, thereby restricting market access opportunities.” , Ibid, p. 285.

252) 국내의 전자지급결제 대행산업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4), “인터넷서비스분야 규제개선 발굴 연구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을 참조

용한바 있다.²⁵³⁾ 하지만 미국 업계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분적인 개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USTR은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폐쇄적인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기술무역장벽

USTR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2017년에도 예외가 아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4년 10월 발표한 네트워크 검증 계획(NVS : Network Verification Scheme)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구매하는 라우터, 교환기 등 네트워크 장비는 의무시험을 위해 한국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에 조달 장비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²⁵⁴⁾고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에 따라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한국 내 시험절차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공개적 의견 수렴 없이 학교, 지방 정부, 도서관, 박물관 등 정부 기관에 이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관리했다.”²⁵⁵⁾고 언급하고, 라우터, 교환기 등 일반적으로 보안 제품으로 간주 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일부 미국 공급 업체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한국 공공기관에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및 방화벽 시스템(firewal systems)을 판매할 수 없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표준에 맞추어 제작된 장비가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촉구한다고 명시했다.²⁵⁶⁾

□ 지식재산권 현안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USTR의 평가는 양호하며, 특히 한미 FTA 발효가 지

253) “In November 2013,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regulations to partially address this issue, enabling online digital content stores operating in more than five countries and headquartered abroad to receive “payment gateway” registrations, locate IT facilities offshore, store customer credit card numbers ~.”, Ibid, p. 285.

254) “Korea launched the Network Verification Scheme (NVS) on October 1, 2014. NVS sets forth new Korea-specific requirements for network equipment such as routers or switches procured by Korean government entities and requires agencies to submit procured equipmen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 mandatory testing.” Ibid, p. 276.

255) “Korea’s NIS has managed this process in a nontransparent fashion without public comment periods, and has broadly construed these requirements to apply to any government entity, including schools, local governments, libraries, and museums.”, Ibid, p. 280.

256) Ibid, p. 280.

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현안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직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대학의 저서 불법복제, 소비재 모조품 제작 등에 주목했다.²⁵⁷⁾ 또한 모든 정부기관이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²⁵⁸⁾

2.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정책

가. 정책 배경

과거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창설은 역내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통합을 통해 소비의 양적·질적 고도화는 물론이고, 공급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보편화는 EU로 하여금 새로운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디지털단일시장(DSM : Digital Single Market) 논의는 EU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미래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한다. 즉, 과거 EU 창설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물리적 단일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과 사이버공간의 규제장벽 제거를 통해 디지털경제 하에서도 사이버 단일시장 비전을 유지하자는 것이 디지털단일시장정책의 주된 취지이다.²⁵⁹⁾

미국과 EU 간의 ‘생산성 역전(productivity reversal)’은 디지털단일시장 논의를 촉발한 주된 동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럽은 미국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전된다. 반면, 미국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럽과 미국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예컨대, 인터넷 도입 이후인 1995년~2013년 간 EU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대비 89%에서 79%로서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²⁶⁰⁾ EU 내에서의 관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6년~2011년 간 미국과 EU 간 연간 생산성 증가율

257) “some IPR-related concerns remain, including new forms of online piracy, corporate end-user software piracy, book piracy in universities, and counterfeiting of consumer products.”, Ibid, p.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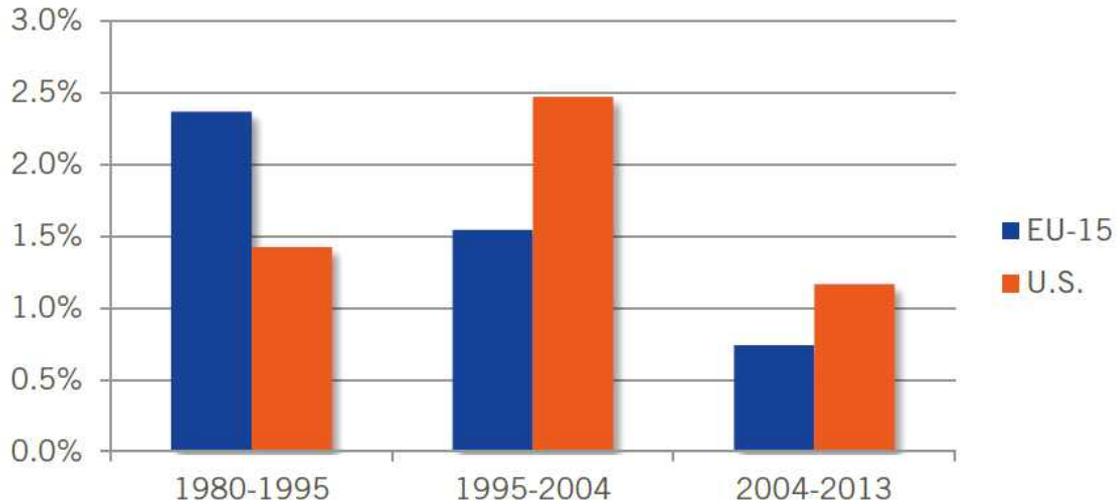
258) “United States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that all government agencies fully comply with the Korean Presidential Decree mandating that government agencies use only legitimate, fully licensed software.”, Ibid, p. 281.

259) 참고로 완전한 의미의 디지털단일시장 구축이 가져올 유럽 GDP 기여 예상액은 약 4,150억 유로이다.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2015), Mapping the cost of Non-Europe, 2014-19.

260) Miller, Ben and Robert D. Atkinson(2014), Raising European Productivity Growth Through ICT,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Institute,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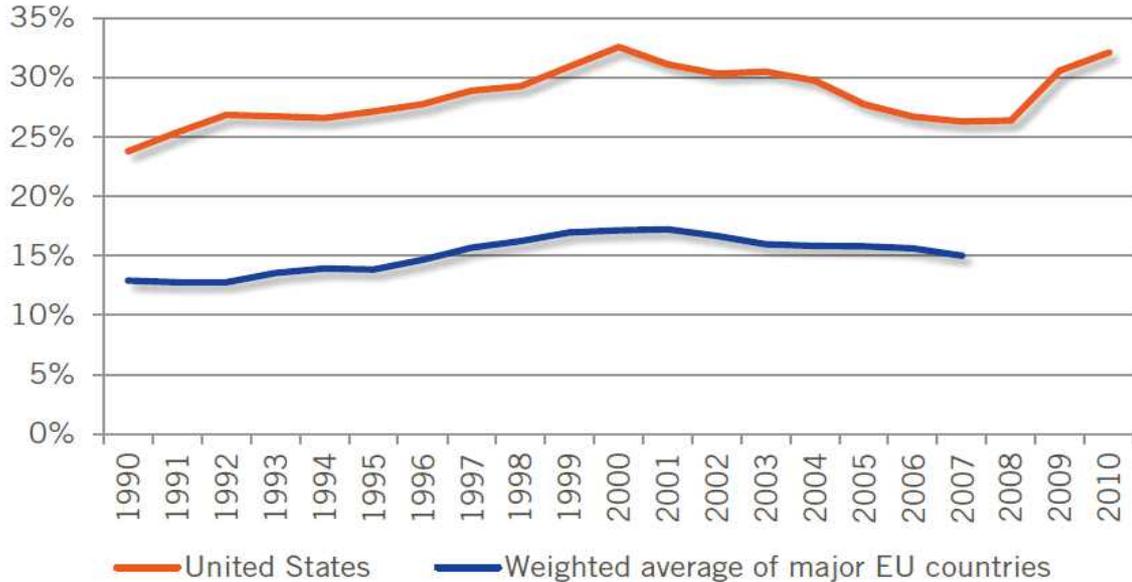
격차가 0.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²⁶¹⁾

[그림 4-1] EU와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1980-2013)



출처: Miller, Ben and Robert D. Atkinson(2014), p. 4.

[그림 4-2] EU와 미국의 비건설투자 대비 ICT 투자 비율 추이



출처 : Miller, Ben and Robert D. Atkinson(2014), p. 17.

261) European Commission(2015),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 Analysis and Evidence,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15) 100 final, 6.6.2015, p. 7.

그렇다면, EU는 저조한 생산성 증가율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할까? 우선 EU는 ICT 부문에 대한 역내의 투자 부진을 지목한다. 실제로 2001년~2011년 간 GDP 내의 ICT 비중은 미국과 EU에서 각각 55%, 30%로 나타났다.²⁶²⁾ 이는 비건설투자(nonresidential investment) 대비 ICT 부문 투자 비율([그림 4-2] 참조)로 보아도 1990년 이후 미국이 일관되게 EU를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EU의 역내 제도적 환경이 디지털경제의 진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한다. 기존 법제의 개선은 물론이고 새로운 법제의 도입 측면에서 공히 EU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역내 디지털시장 분할(fragmentation)을 생산성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²⁶³⁾

EU는 그 징후를 역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찾는다. EU의 전자상거래 증가율은 연간 22%에 달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의 연간 매출액의 7%²⁶⁴⁾가 전자상거래에 의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다. 특히, EU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약 40%는 상거래의 모든 단계가 인터넷으로 완결되는 순수 인터넷업체의 매출액이다.²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2014년 EU 역내 소비자들 중 약 15%만이 역내 다른 회원국 업체로부터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약 7%의 중소기업들만이 인터넷을 통해 역내 다른 회원국에 판매하고 있다.²⁶⁶⁾ EU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역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일련의 제도적 장애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정책 개요

2015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²⁶⁷⁾에 따르면, 디지털단일시장정책은 크게 3대 전략축(pillars)으로 구성된다. 동 3대 전략축은 (i)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개선, (ii) 디지털 네트워크 및 혁신적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iii) 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전략축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²⁶⁸⁾

262) European Commission(2015), p. 7.

263) KOTRA(2017),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Global Strategy Report 17-010, p. 29.

264) 서비스 분야에 국한할 경우 전자상거래는 소매업 매출액의 40%.

265) European Commission(2015), p. 7.

266)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ICT survey of Households and Individuals, 2014 - only 15% of consumers reported having bought online from other EU countries in 2014, while 44% did so domestically ~.”, “While 17% of SMEs in the EU sell online(which is already very low), only 7% sell cross-border to other EU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2015), p. 6, 8.

267) European Commission(2015). “Digital Single Market: Europe 2020 Strategy.”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europe-2020-strategy>.

268) 보다 자세한 내용은 KOTRA(2017), pp. 30~38 참고.

● 제1축(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개선) : 역내 회원국 간 디지털거래에 놓인 규제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거래에 필적하는 개방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 제2축(디지털 네트워크 및 혁신적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 새로운 통신규제제도, 시청각서비스(AVMS : Audiovisual Media Services),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프라이버시(ePrivacy)에 특히 주목하여,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시장 및 법제 환경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 제3축(디지털경제를 위한 성장잠재력 극대화) :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이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내 회원국 간 데이터 이동 활성화 및 전략산업²⁶⁹⁾ 분야의 기술표준화에 주력한다.

다. 3대 전략축별 세부 이행방안

1)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개선

□ 역내 회원국 간 디지털 거래계약

역내 회원국 간 통일계약규범(unified contract rules)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디지털단일시장정책 차원에서의 통일계약규범은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통일계약규범이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 동일해야 할지, 아니면 상이해야 할지가 주된 고려사항이다.

□ 위치기반 차단(Geo-blocking)

‘위치기반 차단(Geo-blocking)’이란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지칭한다. 예컨대, 사전에 준비된 블랙리스트(black list) 또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와 대조해 이용자의 IP 주소를 구분한 뒤, 디지털콘텐츠에의 접근을 승인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치기반 차단에 속한다.²⁷⁰⁾ 통상적으로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관련하여 허가되지 않은 이용자의 프리미엄 멀티미디어 콘텐츠(premium multimedia contents)에의 접근을 차단할 때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위치기반 차단은 위해(危害)한 트래픽(traffic) 예방, 요금제별 차별적 서비스 유지, 사기행위 방지, 온라인 도박 차단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269)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270) <https://en.wikipedia.org/wiki/Geo-blocking>.

디지털단일시장정책 관점에서 위치기반 차단은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논란이 많은 과제이다. 디지털단일시장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위치기반 차단에 관한 역내 국가 간 규제제도의 조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콘텐츠 공급자와 이용자의 권리 간의 균형관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역내 국가 간, 그리고 콘텐츠 공급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위치기반 차단 문제는 여타 이행방안에 비해 장기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EU 내 일부에서는 위치기반 차단에 대한 금지 등 과도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 혜택은 미국의 인터넷기업에게 돌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EU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²⁷¹⁾

□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진단

EU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14년 EU 역내 소비자들 중 절반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정도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는데 반해 약 15%의 소비자들만이 역내 다른 회원국 업체로부터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⁷²⁾ 이에 대해서 EU는 언어, 소비자 기호, 역내 회원국 간 법제의 상이성 등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원인 진단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새로운 저작권법 도입

EU는 디지털경제의 핵심동인이 디지털콘텐츠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 소비자들이 역내에서 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로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권리자, 콘텐츠 공급자 및 유통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유지해온 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저작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저작권법의 주요 관심사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역내 ‘이동성(portability)’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 이는 EU 역내 시민이 타 회원국에 일시 체류할 경우 해당 시민의 모국(母國) 내 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콘텐츠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기술혁신 등 중장기적으로 유익한 이러한 시도에 대해 업계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일부 업계 이해당사자들은 EU 역내의 디지털콘텐츠시장 단일화로 인한 기득권 손실을 우려한다.

271) FTI Consulting LLP(2015),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 Focused, Ambitious, Effective?, www.fticonsulting.com, p. 2.

272) European Commission(2015), p. 6.

2) 디지털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통신 규제제도 개선

디지털단일시장 추진을 위한 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은 로밍(roaming),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및 회원국 간 주파수 배분정책의 조화 등이다. EU 차원에서는 2017년 6월부터 역내 로밍요금을 완전 철폐하여 이동전화, 문자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해 회원국별 사용료 이외에 추가적인 수수료를 전면 폐기한바 있다. 하지만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망중립성의 경우에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인해 아직 폭넓은 예외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²⁷³⁾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혁신적 신규서비스²⁷⁴⁾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EU 전역에 걸쳐 5G 서비스를 위해 700Mhz 대역을 공통 배정하도록 조율 중이고 5G 네트워크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선

2007년 12월 19일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이하 AVMSD)”을 발표시켰다. 동 지침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에 유지되어온 EU 규제프레임워크²⁷⁵⁾의 개정판이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과 TV서비스와의 융합, 디지털 TV와 3G 네트워크, PPV, VOD와 같은 주문형서비스의 활성화, 시청각콘텐츠의 peer-to-peer 교환, 전통적 시청행태의 변화, 새로운 광고기법 등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다양한 현안들로 인하여 전통적 방송서비스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직면한 한계 때문이다.

AVMSD가 적시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Audiovisual Media Services)는 서비스제공자가 프로그램의 시청시간을 편성하여 이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제공해 주는 전통적 방송서비스(linear 서비스)와 이용자 스스로 시청 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신규서비스(non-linear 서비스)²⁷⁶⁾를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시청각서비스는 기본적으로 TV와 유사한 서비스(TV-like services)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웹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73) KOTRA(2017), p. 35.

274) 스마트 자동차, 원격진료, 스마트시티, 비디오 스트리밍 등.

275) “국경 없는 TV 지침(TVWFD :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및 “2003 규제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 를 골자로 한다.

276) 예컨대, VOD(Video-On-Demand) 서비스.

문제는 당초 AVMSD의 탄생을 야기한 현안들이 아직 만족할 만한 정도로 해소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 차원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이는 디지털단일 시장 실현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EU 역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규범만을 담고 있는 AVMSD가 방송통신융합 가속화에 따른 시장현실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단일시장 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EU 내 관심사는 특히 전통적 방송서비스(linear 서비스)와 신규서비스(non-linear 서비스) 간 규제의 동조화 여부²⁷⁷⁾, 역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거래에 애로를 초래하는 회원국 간 규제의 상이성 조율,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필요한 어린이 등 소수시청자(minors) 보호방안 및 유럽시청각콘텐츠(European audiovisual works) 진흥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다.²⁷⁸⁾

□ 전자 프라이버시(ePrivacy), 사이버보안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EU는 개인정보 처리 및 온라인 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존에 유지되어온 ‘전자 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 2002)’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 지침이 전통적인 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됨으로써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지침 개정의 관건은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개정 전자프라이버시 지침이 전통적인 통신사업자 이외에 온라인서비스사업자(online intermediaries)²⁷⁹⁾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사이버보안 강화 없이는 디지털단일시장 가시화도 요원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온라인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민관공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²⁸⁰⁾

한편, EU는 불법 디지털콘텐츠²⁸¹⁾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관리책임에 관한 기존 원칙은 소위 ‘단순통로(mere conduit) 또는 인지-행위(notice and action) 원칙’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루트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불법 디지털콘텐츠를 인지했거나, 또는 이를 수정했을 경우에만 관리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²⁸²⁾ EU는 이

277)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는 전통적 방송서비스의 규제강도를 약화시킬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는 신규서비스의 규제강도를 강화할지 등.

278) European Commission(2015), pp. 42~45.

279) 일반적으로 양방향 또는 대화형 컴퓨터서비스공급자(interactive computer service providers)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담당하는 인터넷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를 의미한다.

280) Covington(2015), The EU's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May 6, www.cov.com, pp. 3~4.

281) 음란물, 테러관련 콘텐츠, 저작권 침해 또는 형법 위반 콘텐츠 등.

282) FTI Consulting LLP(2015), p. 3.

러한 시장방임접근(hands-off approach)이 디지털단일시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에 미치는 양면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정리할 전망이다.

3) 디지털경제를 위한 성장잠재력 극대화

디지털단일시장정책의 세 번째 전략축에 대한 EU의 이행방안은 크게 (i) 디지털경제의 기반 구축, (ii)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경제주체, 산업, 서비스 간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 제고, (iii) 디지털경제의 포용성(inclusiveness)²⁸³⁾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행방안은 최근 EU의 생산성 부진 원인으로 지목된 역내 디지털시장 분할(fragmentation)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육성정책의 일환이다.

즉, 첫 번째 이행방안이 언급하는 ‘디지털경제의 기반’이란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EU는 부당한 위치기반 차단(Geo-blocking), 디지털콘텐츠의 이동성(portability) 제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역내 회원국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와 ‘유럽 클라우드(European Cloud)’²⁸⁴⁾ 구축을 위해 매진 중이다. 이 가운데 후자인 유럽 클라우드의 우선 실천과제인 ‘유럽 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uropean Open Science Cloud)’는 역내 과학자들이 대용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이버환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²⁸⁵⁾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EU의 정책비전에 부합한다.

사실 EU 역외로의 데이터 이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조와 대조적으로 EU 역내 회원국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이는 서비스에 대한 기존 단일시장(Single Market) 규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²⁸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데이터 저장(data storage)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기존 단일시장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EU 내에서 ICT를 활용하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의 약 2/3는 각 회원국 내에서 해결되며, 약 18% 정도만이 역내 다른 회원국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⁸⁷⁾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와 관련한 부당한 지리적 제한조치의 금지가 디지

283)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인력교육 및 전문가 육성 등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하며,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포함된다.

284) EU 역내의 과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 고성능컴퓨터를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설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루겠다는 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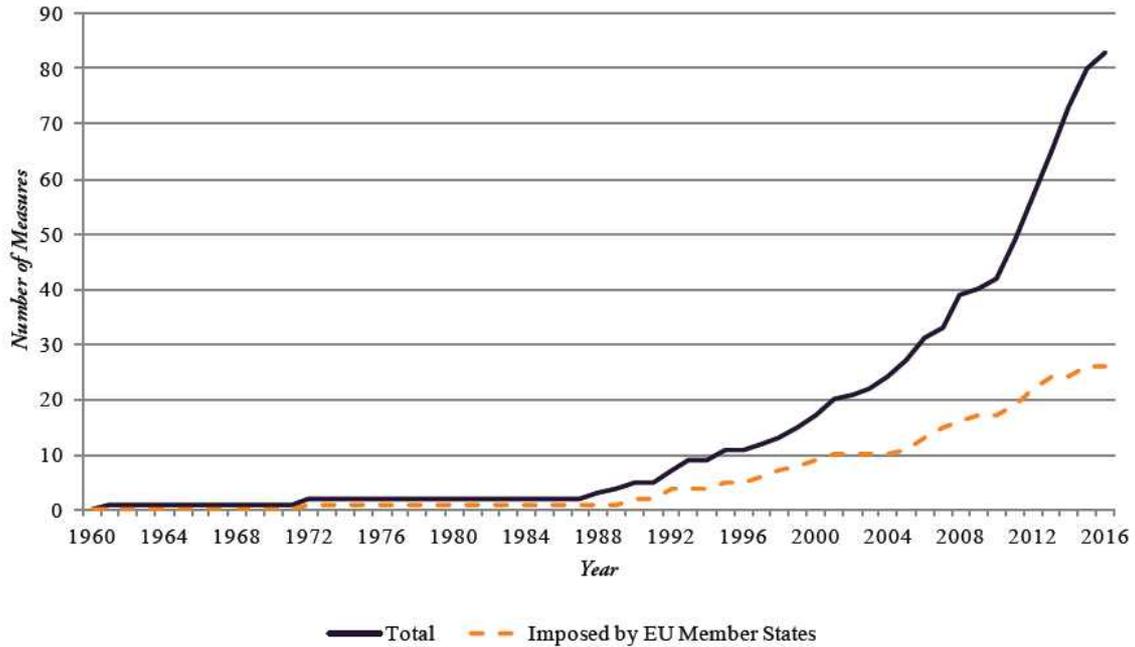
285) KOTRA(2017), pp. 43~44.

286)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nd Services Directive (Directive 2006/123/EC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제26조(internal market), 제49조~제55조 (establishment), 제56조~제62조(services).

287) ECIPE(2016), Unleashing Internal Data Flows in the EU : An Economic Assessment of Data Localization Measures in the EU Member States, ECIPE Policy Brief, NO. 03/2016, p. 2.

털단일시장 실현을 위한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²⁸⁸⁾

[그림 4-3] 전 세계 및 EU 역내의 데이터 국내화 조치 추이



출처: ECIPE(2016), p. 4.

EU의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이행방안은 5G,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소위 5대 전략 분야의 기술 표준화이다. 원격의료,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교통시스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미래전략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5대 전략 분야의 기술 표준화가 없이는 국가 간 상호연동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²⁸⁹⁾가 로열티 없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288) European Commission(2015),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SWD(2015) 100, May 6.

289) EU, 회원국 정부 및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주요 전략 분야의 R&D 수행, 세부과제 추진, 기술표준화 등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펀드 또는 전략프로젝트이다.

3. 국제기구 논의 동향²⁹⁰⁾

가. 제11차 WTO 각료회의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예정된 제11차 각료회의(이하, MC11)를 앞두고 WTO 차원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일반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정례회의, 전자상거래 비공식회의, 일반이사회 전자상거래 별도 세션, 사무총장 주제 회의 등에서 전자상거래 논의가 재개되었다. MC11을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들은 통합제안서(consolidated text) 작성을 목적으로 전자계약, 전자서명, 전자결제, 스팸메일, 소비자보호 등 합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구체적 목표 및 내용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 개도국 반발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MC11에서의 전자상거래 분야 성과 도출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일본, EU 등은 전자상거래관련 규범 제정 등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은 개도국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논의를 지양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개도국은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보다는 개발의제(development issues) 우선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²⁹¹⁾

나. G20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EU 의장국과 신흥시장 12개국,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G20²⁹²⁾은 최근 디지털무역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주요의제로 다루어 왔

290) 당초 계획과 달리 UNCTAD의 논의 동향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UNCTAD 논의의 초점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통상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의제(development issues)에 맞추어져 있음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UNCTAD의 주된 관심사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상규범의 방향성이 아닌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UNCTAD(2016), e-Trade for All, Policy areas, http://unctad.org/en/Pages/DTL/STI_and ICTs/eTrade-for-All/eTrade-for-All-Policy.aspx을 참고.

291) 특히, 인도, 아프리카 지역 일부 개도국 등이 규범화 협상을 전제하지 않는 개발의제 중심의 논의를 주장하였다.

292) G20(Group of 20)은 선진 7개국(G7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유럽 연합의 의장국, 신흥공업경제권에 속하는 12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20개국을 지칭한다. G20은 1999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의를 주도해오다가 2008년 11월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어 미국(워싱턴 DC)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다. 특히 2012년 6월 정상회담에서는 OECD 주도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²⁹³⁾ 대응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했는데, BEPS란 주로 다국적기업들이 조세조약 같은 국제 과세기준과 각국의 세법 규정의 차이와 미비점을 악용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지역(주로 세율이 낮은 국가)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옮기는 조세회피 전략을 지칭한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디지털경제 하의 개인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담은 인터넷 경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4월 G20 디지털 장관회의는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²⁹⁴⁾과 3개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이 가운데 ‘디지털화 로드맵(Roadmap for Digitalisation)’ 부속서는 디지털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디지털기술 접근 및 효과적 활용 증진, 디지털인프라 구축, 정보 및 지식기반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국내정책 및 제도 마련, 역량 개발, 중소기업 디지털화 성과 도출 지원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G20 국가들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하였다. ‘디지털 무역에 관한 우선과제(Priorities on Digital Trade)’ 부속서는 디지털무역 측정 등 통계체계 구축, 디지털무역과 관련한 기존 국제포럼²⁹⁵⁾을 통해 디지털무역장벽 모니터링과 디지털무역을 통한 포용적 성장 구현을 위한 개발의제 반영에 합의하였다.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디지털화 진전을 위한 노력과 정보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동 공동성명은 ‘지속가능한 포용적(sustainable and inclusive)’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디지털 전환에 주목하고,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유효 경쟁(effective competition) 보장, 시장(산업) 주도 국제표준 개발 및 활용 등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²⁹⁶⁾ 또한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 및 참여 확대²⁹⁷⁾를 독려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다. OECD

293) “BEPS”는 직역하면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의미하는데, 기술발전과 글로벌화의 내용과 속도에 맞게 재정비되지 못하고 뒤쳐진 각국의 조세체제와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는(Profit Shifting) 질세노력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것(Base Erosion)을 말한다(달로이트(2014), “BEPS란 무엇인가?”).

294) ‘상호 연결된 세계를 위한 디지털화(Shaping Digitalization for an Interconnected World)’라는 부제를 달고 있음.

295)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E-commerce Work Programme), WTO 무역정책검토회의(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등.

296) 이효영(2017),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 통상외교 확대 방안,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p. 29~30.

297) OECD는 OECD 회원국 및 G20 이외 국가들의 BEPS 대응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 6월 ‘BEPS 포괄적 이행체제’를 구성했으며, 그 결과 2017년 7월 기준 100여개 국가가 프로젝트에 가입했다. 또한 BEPS 이행과제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예컨대, 조세조약 남용 방지규정의 도입)들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2017년 6월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서명식도 개최한바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양한 정책 분야의 현안 논의 및 범세계적 개혁방안 모색을 목표로 1961년 9월 출범한 국제기구로서 현재 35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다.²⁹⁸⁾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정보통신 분야 각료회의가 전문가 그룹의 주요 정책현안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지침을 공표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미래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⁹⁹⁾ 정보통신 분야 각료회의는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개최된 후,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를 거쳐 2016년 6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된 상태이다.

제1차 각료회의³⁰⁰⁾는 전자상거래의 개념 정의 및 통계체계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³⁰¹⁾ 제2차 각료회의³⁰²⁾는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의 역할, 인터넷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주요 성과물로 채택하였다. 제3차 각료회의³⁰³⁾는 인터넷 개방성, 디지털혁신, 융합, 사물인터넷, 전자상거래, 소비자 신뢰, 일자리, 기술 등 ICT 분야의 핵심현안 및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고, 각료선언문³⁰⁴⁾을 통해 혁신, 성장, 사회적 번영을 위한 디지털경제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확인하였다.³⁰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진정한 역할은 각료회의 자체보다는 각료회의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논의를 구체화하는 OECD 내의 다양한 포럼 및 전문가 회의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의 주안점 및 기본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상문제의 핵심 문지방 이슈(key

298) 설립 당시 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고 그후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최근에는 멕시코, 폴란드 등 8개국이 가입했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 7월 6일 심사를 통과, 10월 19일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299) 각료회의의 성과는 OECD의 정책대응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선언적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각료선언문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300)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로 지칭.

301) OECD(1998). “OECD Ministerial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Conference Conclusions”, SG/EC(98)14/FINAL. 1998. 12.

302)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로 지칭.

303) ‘디지털경제에 관한 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 on the Digital Economy)’로 지칭.

304) 각료선언문에는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의 9개 결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1.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2. 디지털 혁신 및 창의성 증대, 3. 브로드밴드 연결성 강화와 인프라-디지털서비스 상호연결·융합, 4. IoT,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이 부상하는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 5. 디지털보안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육성, 6.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전자상거래 장벽 완화, 7.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 제고, 8. 디지털경제를 활용한 고용기회 창출, 9.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인력 육성.

305)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성웅(2016),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와 의의,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14호(통권 628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고.

threshold issue)인 디지털재화의 분류 문제에 대한 OECD의 초보적 입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제시된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비세 부과 관점에서 ‘전자적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재화(electronically delivered digitized products)’의 상품 분류 반대 입장이다.³⁰⁶⁾

물론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OECD의 관심사는 소비자 보호³⁰⁷⁾, 프라이버시 보호³⁰⁸⁾, 디지털 보안 및 인증³⁰⁹⁾, 과세, 무역정책, 경쟁정책, 전자금융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이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과세³¹⁰⁾ 문제는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회원국 간 법제구조의 근본적 상이성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민간당사자 간 상업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관련한 OECD 논의 동향을 간략히 조망하기로 한다.

우선 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회원국 간 법제의 상이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인터넷 보편화 이전 제정된 것으로서 디지털화에 따른 현안 대응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에 따라 OECD는 2013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개정판은 당초의 주요원칙을 계승하고 있지만, 일부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당초의 기본입장이 미묘하게 수정되거나 새로이 추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기업의 책임성이 그것이다. 전자는 1980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반면, 후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가 간 개인정보의 이동에 관한 1980년과 2013년 가이드라인 간에는 분명한 기초의 변화가 감지된다. 전자(1980년 가이드라인)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보장하되, 국가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타 회원국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또는 회원국 관련법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재전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 제한을 지양해야 한다. 다

306) OECD(1998),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 A Report by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307) 1999년 마련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2016년 개정됨. 자세한 내용은 이금노 (2016),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과 그 의의, 소비자정책동향 제70호, 한국소비자원 참고.

308) 1998년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선언문(Declaration on Protec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s)’ 채택하여 회원국 관련법제의 조화를 권고하고, 1980년 마련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2013년 개정.

309) 1992년 OECD ‘보안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1997년 OECD 암호정책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Cryptography Policy) 등 참고.

310) 1998년 10월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는 전자상거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5가지 원칙을 열거함으로써 기존의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과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제2절 참고.

만,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특성, 국내법제에 따른 규제, 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장치 미비 시에는 회원국이 해당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³¹¹⁾ 한 마디로, 회원국의 의무와 권리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그런데 후자(2013년 가이드라인)에는 회원국의 권리 부분은 삭제되어 있으며, 타 회원국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준수 또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시에는 국가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 제한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³¹²⁾ 회원국의 의무가 강제됨과 동시에 권리행사 여지가 줄어든 셈이다.

한편, 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³¹³⁾이 모호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개정판을 통해 책임성 원칙의 이행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는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은 문의사항 및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기적 평가를 통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관리자는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증명해야 하고 심각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 및 정보주체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³¹⁴⁾

제2절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 동향

1. 개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기존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평가일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311) “A Member country should refrain from restricting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between itself and another Member country except where the latter does not yet substantially observe these Guidelines or where the re-export of such data would circumvent its domestic privacy legislation. A Member country may also impose restrictions in respect of certain categories of personal data for which its domestic privacy legislation includes specific regulations in view of the nature of those data and for which the other Member country provides no equivalent protection.”

312) “A Member country should refrain from restricting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between itself and another country where (a) the other country substantially observes these Guidelines or (b) sufficient safeguards exist, including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s and appropriate measures put in place by the data controller, to ensure a continuing level of protection consistent with these Guidelines.”

313) “A data controller should be accountable for complying with measures which give effect to the principles stated above.”

314)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이민영(2015),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15-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87~188.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내역 및 소득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납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전제는 거래장소 즉, 사업장이 과세체계의 중심에 있고, 과세당국이 사업장의 거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그 사업장과 거래한 다른 납세자의 거래내역 및 소득에 관한 정보도 모두 입수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와 같이 원격지 거래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대면 거래를 전제로 형성된 기존의 조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령 한 국가에서 제공된 재화가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에서 과세하며, 그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에서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통적인 과세체계 하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와 공급지의 국가가 다를 경우에는 두 개의 국가에서 모두 과세할 수도 있고 또 모두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중과세나 비과세 현상은 국제거래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둘 중 어느 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국가에 그 세수입이 귀속되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전자상거래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며 전통적인 수출입, 전화나 우편주문에 의한 상품 판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 즉, 소비세의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은 소비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다. 즉, 상품이 소비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유형재화의 경우 세관을 통과할 때 상품의 수입이 인식되므로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전자상거래에서도 물건의 배송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 세관에서 거래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면 된다.

그러나 거래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도 소비지 과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공급지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무형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상품의 국제거래를 파악하는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지 또는 공급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및 적절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의 원칙들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해답들이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거래 간의 공평성, 과세의 간편성, 효율성 등 과세원칙에 부

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소득과세의 경우 그동안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과세당국은 자기관할권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국제 조세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자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조세회피방지 등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소득세 분야에서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 온 국제조세체계를 뒤 흔들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국가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 예를 들어 사업장과 같은 용어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어떤 기업이 생산품을 일정규모 이상 다른 국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해서는 그 나라에 판매사업소를 두거나 대리점을 두게 마련이었고, 전통적인 국제조세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장, 즉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과세 규범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웹사이트가 사업장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그 기능과 특성이 전통적인 사업장과 달라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거래되는 상품이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며, 소득을 독립기업원칙³¹⁵⁾에 따라 사업장간에 배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조세체계의 바탕이 되는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다.³¹⁶⁾ 따라서 기존 조세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적절한 새로운 과세체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다소 수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15) 독립기업의 원칙이란,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OECD 모델 조약 제7조 제2항)는 원칙을 말한다. 고정사업장은 기업 전체에서 볼 때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의 거래는 이른바 내부거래로 된다. 그러므로 통상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독립기업의 원칙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다.(출처 : 국세청 용어사전 ‘독립기업의 원칙’)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_id=3890

316) RICHARD JONES and SUBHAJIT BASU(2002),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A Developing Problem,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Vol. 16, No. 1, p. 37.

2. 전통적(일반적) 국제 과세 일반

가. 국제조세의 개념 및 원칙

모든 주권국가는 과세고권(課稅高權)을 가지고 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은 속인주의 관점에서의 ‘거주지국관할권’ 과 속지주의 관점에서의 ‘원천지국관할권’ 으로 나뉜다. ‘거주지국관할권’ 은 과세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활동을 국적이나 거주 사실을 근거로 한 납세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말한다. 과세권의 행사 근거를 국적으로 정하는 국적지국은 납세의무자가 자국의 국민(시민)이라는 인적기준으로 바탕으로 그 관할권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자국의 국민인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발생장소를 불문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을 말한다. 국적지국 과세관할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으며, 미국·필리핀·멕시코 등이 대표적이다.³¹⁷⁾ 한편 ‘원천지국관할권’ 은 과세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다. 이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영토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³¹⁸⁾ 원천지국 발생소득은 원천기준(source rule)에 의해 구분되며, 이 기준은 특히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과세권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제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국들이 각자의 과세권 행사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와 거래 당사자들이 과세거래 왜곡을 통해 탈세 및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조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경제활동에 의해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경제활동이 행해진 원천지국은 각각 자국 세법을 근거로 과세하지만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제거래를 행하는 경제주체들이 각국의 세제(稅制) 차이, 조세조약의 차이 및 위법한 거래행위 등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 또는 면탈하는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국제조세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2개국 이상의 과세권 경합의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 배제와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들 간의 과세권 경합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

317) 이용섭·이동신(2012), 국제조세, 세경사, 57면.

31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비거주자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기준이 아니다. 한편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으로 본다(국세공무원교육원(2013), 국제조세 공개강좌, 3-4면).

하기 위해 당사국간의 협정(조약)에 의한 과세관할권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조세는 단순히 이와 같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관할권 조정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처 및 역외탈세 등의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논의도 국제조세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조세는 국제적 경제활동과 관련한 과세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간 그리고 납세자 간의 공평성을 통해 적정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여기서 조세중립성이란 조세를 통해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의 선택 및 각국 간의 외국투자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자본수출의 중립성과 자본수입의 중립성을 추구한다. 또한 여기서 공평성은 국제투자 성과의 국제간 배분 및 납세자 간의 공평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국제조세의 특징

국제조세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이므로 국내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³¹⁹⁾ 첫째, 국제조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이 실정법상 실제 존재하는 단일세목이 아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각국이 고유의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조세 관련 법제는 그 특성상 단일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 및 각종 세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다.³²⁰⁾

둘째, 국제조세는 2개 국가 이상의 과세권이 서로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는 조세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각국은 자국의 세법 체계 하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 경우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중복과세(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셋째, 조세조약은 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각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법 체계의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양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각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각국의 국내법을 적용한다.

넷째, 조세회피, 이중과세 등 국제조세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국가의 과세당국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국제조세 문제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특성상 어느 한 국가의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국가 간 징수협력·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룹

319) 이용섭·이동신, 앞의 책, 37~38면.

320) 가령 비거주자의 과세문제는 「소득세법」, 외국법인의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국가 간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차원에서 세후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 시에 이전가격의 조작, 조세회피처의 활용, 조세조약이나 과소자본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으므로 국제조세에서는 ① 국가 간에 인적·물적 교류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분야, ② 우리나라와 자본·재화·용역 등을 거래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분야, ③ 외국과 자본·재화·용역 등을 거래하는 거주자 및 우리나라 법인의 해외 및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분야가 중요하다.

다. 과세권 경합의 조정

세계 각국은 과세고권에 입각하여 국제거래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국내법에 의해 과세권을 행사하지만 이는 국가 간 과세권 경합에 의해 이중과세나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합리적인 과세베이스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① 당사국 간의 협정(조세조약) 및 다국 간 조세협정에 의한 조정, ② 과세제도에 의한 조정 및 ③ 국내법상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방지가 있다.

먼저, 조세조약은 국제적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한편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사국간에 체결하는 조약을 의미하며,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의 배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세조약은 국제공법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간에 효력이 발생한다.³²¹⁾ 또한 국가간의 소모적 조세경쟁의 증가와 조세회피처 등의 확대로 조세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다자간 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조세조약들이 체결되었다.³²²⁾ 다자간조세협정은 WTO 체제와 같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공동체간 이중과세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과세제도에 의한 조정에는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회피처과세제도 및 조세조약 남용방지제도가 있다. 먼저, 과세당국이 자국의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신의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에 조세회피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 제도라고 한다. 이전가격과세제도는 해외 특수관계 기업간의 거래에 의하여 조세회피를 방지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소득이전행위 등으로 인한 과세소득 왜곡현상을

321) 이창희(2007), 조세조약 해석방법, 조세학술논문집 제23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156면.

322) 이성봉(2003), 국제투자규범의 현황 및 수렴 가능성, OECD Focus 제2권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3~54면.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며,³²³⁾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기자본보다 차입금을 더 많이 조달함으로써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요자금을 조달하면서 해외의 모(母)회사 등으로부터 출자는 적게 받는 대신 차입을 늘려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고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배당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과소자본과세제도이다. 셋째, 조세회피처과세제도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조세회피처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그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의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를 자국의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이다. 조세회피처과세제도는 자국의 과세베이스가 소득이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의 조세회피처 유보소득에 대해 자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세회피방지 방안이다. 넷째, 조세조약 남용이란 2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제3국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소득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조약상 혜택을 받게 된다.³²⁴⁾ 이와 같은 조세조약 남용에 따른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령 2003년 OECD 모델협약 주석에서는 조세조약 남용행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극 과세할 것을 회원국에 권장하고 있다.

셋째, 국내법상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이다.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방법에는 외국소득면제방법과 외국세액공제방법이 있다. 외국소득면제방법은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자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실제로 행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면세하면 되고, 원천지국의 실제 과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외국세액공제 방법은 외국소득면제방법과 달리,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 중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소득면제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자국의 세액 계산상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 중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점이다.³²⁵⁾

323) 김인근(2013),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고이텍스, 1261면.

324) 조세조약에 규정된 주요 혜택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비과세,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투자소득(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주식 양도소득의 비과세, 단기 체재자의 인적용역소득 비과세 등이 있다(이용섭·이동신, 앞의 책, 951면).

325) 국회예산정책처(2016),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⑥국제조세, 27면.

라. 국제 조세의 법체계

국제조세란 소득세·법인세 등과 같은 단일세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되는 조세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조세는 한 국가의 조세법체계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 문제 가운데 외국과 관련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의 특성상 이를 국내법상 단일법 체계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조세 관련 규정은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단일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각국의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말 국제조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일부사항을 통합 규정한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회피처 과세 제도 등 국제조세의 일부분을 통합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내용은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 관련 법률의 적용순위는 국제법 이론에 따라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가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상위법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국내 세법 가운데에는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3조 제1항).

3. 전자상거래 과세 이슈

가. 개관

정보통신 시스템의 확산과 인터넷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발전은 “신 경제(new economy)”의 주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접근은 “사이버 비즈니스” 및 “전자 상거래”의 출현을 촉진시켰으며, 특히 월드 와이드 웹(www)은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냈다.

기존의 과세 시스템은 유형물 상품 및 개인 서비스의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 환경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더욱 포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무형의 제품 및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옮겨 가고 있다. 이것은 조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세 규범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환경에 적응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이버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기술적 특성은 세무당국의 감시·통제 기능 및 당국과 협력할 납세자 의무를 포함한 세무 절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³²⁶⁾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의 기술적 및 제도적 특성, 즉 익명성, 디지털 제품의 무한한 복제성 및 당국의 네트워크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탈세가 쉽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빈번하게 세금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징세를 위한 인력 등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 집약적이고 공평하고 균등한 과세라는 재정 목표를 거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인터넷에서 과세 문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를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경제 세계화를 추구하지만 재정 주권은 주로 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 있어서 이중 과세 또는 미 과세 부족과 연결되므로, 이러한 왜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전자상거래는 세금의 유형과도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른바 간접세 중 석유, 담배, 커피, 술 및 주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EU 내에서 문제가 덜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된 점포, 생산업자 및 도매업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매출세(turnover tax)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평가 기준과 그로 인한 과세대상 공급업체 및 그에 따른 유사 거래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담배, 커피 또는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관련해서 조세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밀수업자가 인터넷을 직접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세가 문제될 수 있다. 직접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법적 지위, 거주지 및 회사 소유자 또는 과세 대상자의 신원 및 거주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거래에 있어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과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인터넷 과세 문제에서는 과세 대상 이익의 결정과 관련 국가 간의 분배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정리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탈세 및 공평한 과세 등 불법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 직접세나 간접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 집행, 국내 거래인지 국제 거래인지의 구별 등이 문제된다.³²⁷⁾

나. 전자상거래와 국제 조세

1)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문제는 미국이 무관세화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통상이슈로 대두

326) ROLAND PARIS(2003), The Globalization of Taxati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3) 47, p. 160.

327) Stefan Bach(2000), Markus Hubbert and Walter Müller, Taxation of E-Commerce: Persistent Problems and Recent Developments,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69. Jahrgang, Heft 4/2000, S. 659-660.

되었다. 미국은 각국이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부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무관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미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제품의 국제교역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요소를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U도 1997년 12월 5일 미국과 EU의 정상회담에서 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상품 및 용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②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이 제품이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³²⁸⁾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과 EU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잠정적인 무관세에 합의하였다. 이후 미국과 EU는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범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이럴 경우 자국의 조세수입문제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관세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통상문제는 무관세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거래는 온라인 상품(on-line products)과 오프라인 상품(off-line products) 영역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조사, 협상, 주문,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단계를 통하여 주문한 상품의 배송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고, 오프라인 상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항공이나 해운수단의 형태를 거쳐야 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온라인 상품은 상품의 인도(引渡)까지 인터넷에서 완료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의 디지털제품과 여행정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온라인 상품은 전자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의하여 주문되지만 제품의 인도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³²⁹⁾

전자상거래가 상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관세부과의 유예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만 적용된다. 콘텐츠 무역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1998년 세계전자상거래 선언에서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관행을 유지한다.”는 선언을 통해 확인되었다.³³⁰⁾

그렇다면 전자적 전송에는 그 대상인 콘텐츠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서비스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만약 콘텐츠 서비스가 제외된다면, 관세유예선언에서 의미하

328) 안세영(1999), 사이버 무역시대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고찰, 국제통상연구 제4권 2호, 165-166면.

329) 이신규(2001), 사이버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2호, 9-10면.

330) “...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

는 전달 대상으로서의 디지털화 된 콘텐츠는 원래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법적인 또는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WTO 회원국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부과 유예선언은 법적 합의가 아닌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또한 일시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³³¹⁾

또한 관세부과 유예선언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제품과 물리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간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물리적 방법에 의해 교역되는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 선언에 따라 이와 동종인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는 관세부과가 유예된다면, 이는 비차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소위 ‘기술중립성’ (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에도 벗어난다. 다만, 기술중립성 개념은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나 구속력이 있는 법원칙이 아니라 WTO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동종성(likeness)을 판단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³³²⁾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어떤’ 무역규범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 이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³³³⁾

2) 조세

□ 개관

미국은 1997년 7월 1일 ‘세계 전자상거래 기본구상’ 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무관세시대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기존의 조세 이외의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등의 소비세의 부과를 금지하자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했다. 다만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역이 자국이 될 것임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면제 및 감경을 선호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EU는 1997년 7월 본(Bonn)선언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원칙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내국세 문제에는 과세가 투명하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수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주장했다.

331) Inside US Trade, “WTO Members Reach Standstill Pact on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22 May 1998.

332) 이한영(2007),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 삼성경제연구소, 89면.

333) 권현호(2016), 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 WTO 및 FTA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47권, 154면.

1998년 10월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각료회의에서 승인된 배경문서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5가지 요소를 열거함으로써 기존의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동시에 과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27 페이지의 <표4-1> 참조). 이 문건은 추가적으로 오타와 각료회의 이후 논의할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이슈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납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행정, 납세자 파악 및 필요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납세자 파악관행의 채택 문제와 전자서명에 의한 납세자파악을 허용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논의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징세와 통제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포함하여 납세협력 유도전략의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소비세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지의 개념, 공급장소 규정 및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정의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달을 과제로 채택했다. 국제조세조치 및 협력에서는 고정사업장 및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 과세소득구분, 이전가격지침 등의 명확화와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조세협정의 활용증진방안 및 유해조세경쟁 방지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미국을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다. OECD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정도이다. 전자상거래는 주로 상품과 용역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세수입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각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용역의 제공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공급장소에 관한 문제이다. 통상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 국제무역 측면에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수입된 상품이 모든 동일한 조세부담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무역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세의 무자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공급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공급자의 사업장 및 고정시설이 소비자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급장소의 개념과 소비

장소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고정장소의 개념을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기존의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나 서비스는 구분하여 과세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 등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경우 상품이 물리적 실체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문제이다. EU의 경우 통신이나 방송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기술 자문 서비스나 데이터 프로세싱, 정보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유형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권을 정하는 것들이 문제될 수 있다.

□ 소득세

국제조세의 기본적인 과세원칙들은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들이 외국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의 거점을 확보하지 않고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첫째,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 1항에서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및 제조업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문제가 발생한다.³³⁴⁾ 전자상거래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①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② 웹사이트가 사업장소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③ 서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 ④ 웹사이트를 통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선 활동인지의 여부, ⑤ 웹사이트의 운영기업과 서비스제공자의 관계가 당해 기업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⑥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경우 귀속소득결정과 관련한

334)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의하면 현지국에 물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시간적, 장소적, 사업목적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국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이전가격에 관한 문제이다. OECD는 1995년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을 발표하여 다국적기업 내 이전가격을 수정할 기본원칙으로 정상가격원칙을 설정하고, 비교 가능한 제3자 간 거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②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③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이 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이전가격의 과세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거래접근방식 적용의 어려움, ② 비교가능성 분석의 어려움, ③ 기능분석의 어려움, ④ 무형자산의 구분과 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별 문제이다. 재산과 노무라는 구별을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과 인적용역을 구분해온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인데,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새로 생긴 문제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볼 것인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상품의 판매대가(사업소득)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혹은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OECD모델조세조약은 사용료를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과학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재판매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담은 디스크를 매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이 될 것이다. 반면에 공급업자에게서 디스크는 하나 구입하여 이를 복제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디스크를 판매하는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이용자들에게 판매업자의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라면, 판매업자는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고, 공급업자가 받는 대가는 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용료소득이 될 것이다.³³⁵⁾

4.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

가. OECD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에 대하여 OECD가 주창하는 기본원칙은 다음 <표4-1>와 같다.

335) 자세한 것은 이창희(201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4호, 196면 이하 참조.

〈표 4-1〉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용
중립성	전자상거래 상호간 또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조세 취급이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하고, 사업결정은 세금보다는 경제적 고려에서 행해져야 하며, 유사한 거래를 행하면서 유사한 환경에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는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효율성	세무당국이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 되어야 한다.
명확성·단순성	조세원칙은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과세가 될지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해야 한다.
효과성·공평성	전자상거래 과세는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융통성	과세 규정도 기술 및 산업발전에 탄력적,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OECD(1998),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이슈는 다양한 다자 및 양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OECD는 재정 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CFA)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³³⁶⁾ OECD는 1999년부터 CFA 산하에 별도 기술지원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s; TAG)을 두고 각 부문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고정 사업장으로서의 이익의 귀속(Attribution of Profi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2001)”, “실질적 관리 장소 개념: OECD 모델조세조약의 변경에 대한 제안(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oncept: Suggestions for Chang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2003)”, “조약 규정과 전자상거래: 새로운 경제에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Treaty Rules and E-Commerce: Taxing Business Profits in the New Economy. 2005)” 등의 문건을 발표하였다.

나. 국제통상협약

WTO, FTA 등의 통상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내국세 보다는 관세 부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왔다. 국가 간 거래 중 디지털 재화의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서는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세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통해 무관세

336) OECD(2001), Tax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IMPLEMENTING THE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p. 223.

관행의 한시적 유지방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와 같은 방침이 준용되고 있다. 한·미 FTA를 포함한 주요 FTA에서도 WTO 결정과 동일하게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재화와 함께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도 무관세 원칙을 규정한 바 있다.

다. EU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EU 집행위원회가 1997년 발표한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반에 대한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총괄적 차원의 정책을 바탕으로 EU위원회는 1998년 “Electronic 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 에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EU는 「Council Directive 2008/8/EC」를 통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확대하고 있다. 그 간에는 일부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EU 역내 공급자의 경우 2014년 말까지는 공급지 과세 원칙을 유지했었으나,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공급지 과세 원칙이 완전히 폐지하고,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³³⁷⁾

라. 미국

미국의 경우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입법사례로는 1998년 10월 제정된 「인터넷 조세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의 도입 후 3년 동안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유예(moratorium)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네 차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이 2015년 10월 1일까지 연장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EU 등과 달리 인터넷 매출에 대한 비과세가 인터넷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³³⁸⁾

4. 쟁점 정리

가. 직접세- 고정사업장 규정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조세조약 등에서 타방 계약국 기업에 대한 일방

337) 김정곤 외(2015), 앞의 보고서, 9-10면.

338) Aaron Lukas(1999), Tax Bytes A Primer on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de Policy Analysis, p. 4.

계약국의 과세 권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과세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동의 경우, 사업장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도 거래활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규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과세 회피 억제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OECD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해당 과세대상국 거주 소비자와 기업 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업의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가 해당국에서 폭넓게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 대상국 내 고객으로부터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유의미한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 및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³³⁹⁾

나. 간접세- 부가가치세제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거주지국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 신고방식은 징수의 효과성 측면에서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에 OECD는 소비지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나,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역시 비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EU의 경우도 최근 디지털 시장 통합전략과 관련하여 소비지국 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작업과 함께 해당 과세 원칙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조세행정업무 간소화 정책 또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39) Orkhan Abdulkarimli(2015), E-Signature and Taxation of E-commerce, Baku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ume No.1, p. 102.

제5장 결론

제1절 개관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편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전 세계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온라인(online) 거래인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오프라인(offline) 거래를 대체·보완하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도 양적·질적으로 확대·심화될 전망이다. 탐색-주문-지불-배송 등 상거래의 세부단계 전체가 인터넷을 통해 완결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의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인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r servitization)’도 소프트웨어무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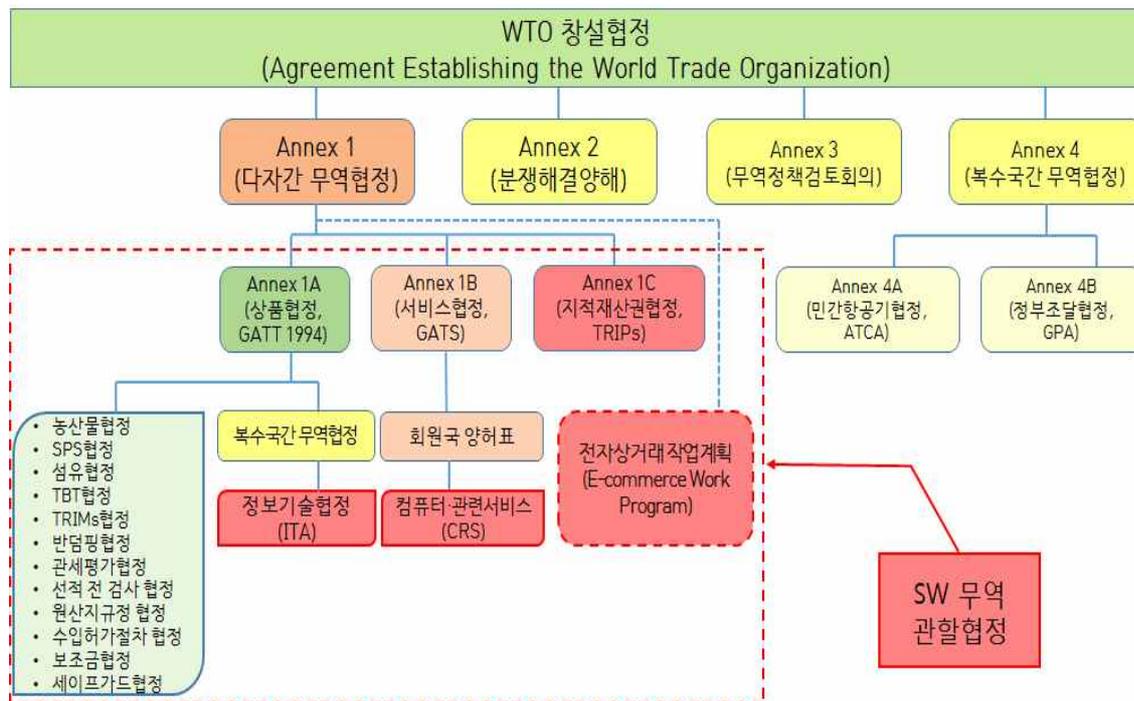
이러한 시장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소프트웨어무역을 위시한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통상규범에 의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왔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된 다자통상체제(WTO) 하의 논의는 주요국들 간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TPP(Trans-Pacific Partnership),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소위 메가(Mega) FTA³⁴⁰⁾협상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무역의 사이버화에 주목해 온 미국이 특정 산업과 특정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실용적·공세적 양상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원천으로 정보(data or information)와 지적재산권(IPR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적시하고, 무역상대국들에게 시장친화적 법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무역을 둘러싼 통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걸친 중첩이슈(cross-cutting issues)이자 나름의 역사적 논의 배경을 갖고 있는 통시적 사안이다. 예컨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무역은 상품무역 분야의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서비스무역 분야의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양허표,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등 복수의 WTO 다자통상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메가 FTA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범이 사이버 소

340) 주요국들을 포함한 복수(plurilateral)의 국가들 간 체결됨으로써 경제적 비중이나 파급효과가 큰 FTA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경제규모가 아주 큰 국가들 간 양자 간(bilateral) 체결되는 FTA(예컨대, 미국과 EU 간 추진 중인 TTIP)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프트웨어무역을 규율하는 지침으로 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무역의 다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 학술·정책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관점 하에서 글로벌 통상규범을 포괄적·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통상규범’이라는 관점 하에 WTO 및 FTA 통상규범에 대한 포괄·심층·통시적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통상현안, 정책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림 5-1] 소프트웨어무역에 관한 다자통상규범 지배구조



제2절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통상현안 및 정책시사점

1. 전자상거래

가. WTO 다자통상규범의 주요 쟁점 및 정책시사점

1) 소프트웨어 분류 및 협정관할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와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로 구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s)라는 신종 유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가운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공급자가 자신의 서버에 설치·관리하는 전유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로서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그때그때 사용하고 무료로 또는 미리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의 보편적 확산에 따라 비교적 최근 등장한 신종 소프트웨어 유형이다.

전통적 다자통상규범인 WTO협정 하에서 회원국들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상품,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각각 상품무역협정인 GATT, 서비스무역협정인 GATS에 의해 규율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그 소속이 불분명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른 아닌,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이다. 이 가운데 전자는 물리적 매개체(carrier medium)에 실리기보다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형식으로 거래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인데 그 분류 및 관할협정을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고유한 재량영역인 양허표에 의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GATS의 규범적 특성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미국과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시장보호를 원하는 EU 간의 갈등이 관건이다. 미국은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상품(GATT)으로, EU는 서비스(GATS)으로 분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분류 및 관할협정 소속은 다자통상규범을 통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전자는 디지털재화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 조차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할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로 분류할지, 기존의 국가별 양허표가 이들에 대한 개방 양허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개방 대상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개방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있을 뿐이다.

2)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부과

GATT 체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부과 관행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value)가 아닌 CD, 레이저디스크, 테이프 등 물리적 매개체의 가치만을 고려하여 관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사이버 매개체인 인터넷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행이 글자 그대로 연장·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

세부과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ITA(정보기술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수입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즉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여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통상규범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WTO는 제2차 각료회의 이후 2017년 12월 제11차 각료회의를 앞둔 현재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통해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duty-free moratorium)’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WTO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달성한 사실상의 유일한 성과이다. 문제는 동 각료선언 상의 한시적 무관세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닌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해, 여기서 거론되는 무관세는 전자적 전송 단위(bit)에 부과되는 ‘비트세(bit tax)’의 한시적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디지털재 화인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의 면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동 각료선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전자적 전송

주문형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로 분류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GATS의 관할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GATS는 1986년~1994년 추진된 UR(우루과이라운드)을 통해 제정되었고, 당시에는 인터넷의 보편화를 제대로 예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GATS 규범이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도식적 논리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WTO 협정 발효 후 신규 가입한 중국은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안 분쟁 과정에서 유통서비스(distribution services)에 대한 자국 양허가 물리적 형태(physical form)의 재화(products)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다고 중국이 유통서비스 양허표를 통해 명시적으로 디지털 형태(digital form)의 재화를 제외한다고 기재한 바는 없다.

이에 대해 당시 제조국인 미국은 국경간 공급(mode 1)에 관한 양허가 전자적 수단(electronic means)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포함한다는 US-Gambling 사안의 패널 입장을 인용하면서, GATS가 충분히 동태적(sufficiently dynamic)이기 때문에 국경간 공급(mode 1)이 전자적 전송을 통한 배송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동 사안의 상소기구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패널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다름 아닌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

이다. 즉, 양허표 상의 서비스 공급모드에 별도의 제한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배송수단(means of delivery)의 이용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무역은 이미 전면 자유화되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UR 당시 이미 양허표 내에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무역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국가는 전자적 전송에 의하는 인터넷 거래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어떤 WTO 회원국도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를 양허하면서 전자적 전송을 특정하여 제한한 사례는 부재하다. 결론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처럼 새로이 등장한 소프트웨어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완전한 시장개방 대상품목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나. FTA 지역통상규범의 주요 쟁점 및 정책시사점

1) 개요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 및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는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발효시킨 상태이며, RCEP, TiSA 등 메가(Mega)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가 참여를 고려했던 TPP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협정 탈퇴 선언 이후 협정 발효 여부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 전자상거래 규범은 다수의 신중 통상규범을 포괄하는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형태의 전자상거래 규범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TPP 전자상거래 규범은 TiSA, RCEP 등 여타의 메가(Mega) FTA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분야 통상규범의 지향점(focal point)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시킨 주요 FTA는 미국, EU 및 중국과의 FTA이며, 이 가운데 가장 진전된 전자상거래 규범은 한미 FTA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진전사항(WTO 플러스)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무관세의 영구화는 물론이고, 무관세의 대상을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구 무관세를 의미한다. 둘째, 다자통상규범 하에서 쟁점이 되어온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재화의 분류 및 협정관할 문제를 해소하였다. 동 문제 해소가 필요한 근본목적은 디지털재화에 대한 시장개방이다. 한 마디로,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부여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강행규정으로 채택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시장자유화가 진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셋째, 전자적 공급에 의한 서비스의 양허표 작성방식을 네거티브 접근(negative listing)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한미 간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전면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이 동 서비스

의 양허제외 등 어떠한 제한조치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초보적 내용의 협력규정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국가 간 정보이전에 관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와 한중 FTA는 사실상 WTO 다자통상규범을 벗어나지 않는다. 한·EU FTA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표준 준수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영구 무관세가 사실상 유일한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이는 전자적 전송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대상에 대한 것이지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관세의 영구화가 갖는 의미는 극히 제한적이다. 개인정보보호, 전자인증·서명 등 일부 강행규정을 도입한 한중 FTA도 실질적으로 한·EU FTA의 기초와 유사하다. 더 나아가 한중 FTA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통상현안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강행규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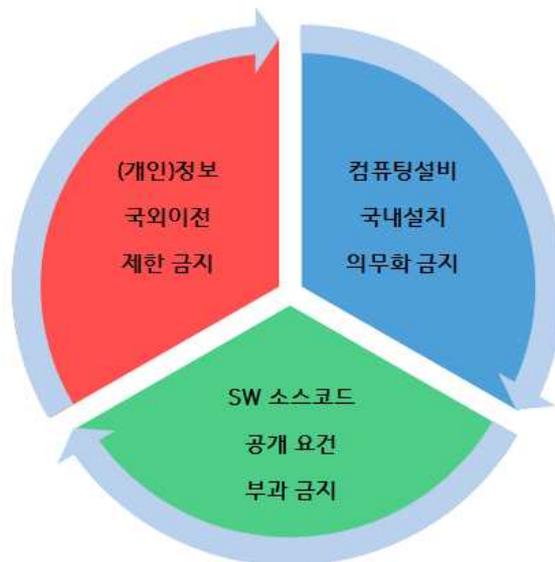
〈표 5-1〉 주요 국제협정별 전자상거래 규범의 조문구조

조문	협정	TPP	TISA	양자 간 FTA		
				한미	한-EU	한중
협정 적용(범위-예외)		☞	☞	☞	×	×
국가 간 정보이전		☞	☞	↑	×	×
온라인 소비자보호		☞	☞	↑	↑	×
개인정보보호		☞	☞	×	☞	☞
스팸메시지		☞	☞/↑	×	↑	×
SW소스코드		☞	☞	×	×	×
인터넷 접근-이용		↑	☞/↑	↑	×	×
컴퓨팅설비 위치		☞	☞	×	×	×
전자인증·서명		☞	☞	☞	↑	☞(↑)
무관세		☞*	☞?	☞*	☞**	☞**
국제협력		↑	↑	×	↑	↑
검토		×	↑	×	×	×
안보예외		×	☞	×	×	×
용어정의		☞	☞	☞	×	☞
디지털재화 비차별대우		☞	×	☞	×	×
전자상거래 국내법 체계		☞	×	×	×	×
분쟁해결		☞	×	×	×	☞
전자무역		↑	×	↑	↑	↑
인터넷 접속료 분담		↑	×	×	×	×
사이버정보보안 협력		↑	×	×	×	×

주 : 卍(강행규정), 卍(협력규정), 卍/卍(강행/협력 미정), 卍(+)(혼합), ×(조문부재), *(디지털재화),
 **(전자적 전송), ?(디지털재화/전자적 전송 미정)

반면, 기 타결된 TPP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TiSA의 전자상거래 규범은 한미 FTA 대비 유사한 내용과 함께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TPP나 TiSA 공히 상당수의 조문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의 도입 및 국가 간 조화에 관한 조문들이다. 예컨대,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시지, 인터넷 접근·이용, 전자인증·서명, 전자상거래 국내법 체계 등이 그것이다. 동 조문들의 경우에는 시장 개방 또는 시장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프트웨어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법제가 의당 갖추어져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TPP와 TiSA에는 이들 상호 간에 유사하지만 기초를 달리하는 조문과 함께, 두 협정 공통적으로 한미 FTA 상의 양허수준을 넘어서는 조문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에는 무관세 및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조문이, 후자에는 국가 간 정보이전, 컴퓨팅설비의 위치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소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 금지에 관한 조문이 해당된다. 동 조문은 TPP 및 TiSA와 함께 소위 ‘T-삼위일체 협정(T-trinity Agreements)’ 으로 지칭되는 미국과 EU 간의 메가(Mega) FTA인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조문들을 중심으로 쟁점 및 정책시사점을 요약·정리한다.

[그림 5-2] T-삼위일체 협정의 국내화조치 금지



2) 주요 쟁점 및 정책시사점

□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TPP와 TiSA는 영구 무관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영구 무관세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상이하다. 전자는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를, 후자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발견되는 차이점과 동일하다. 즉, TPP와 TiSA가 영구 무관세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원인은 미국과 EU의 상이한 입장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영구 무관세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의 영구 면제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영구 무관세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법적 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시장에 대한 부분적 보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입장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이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병존에 따른 시장 및 법제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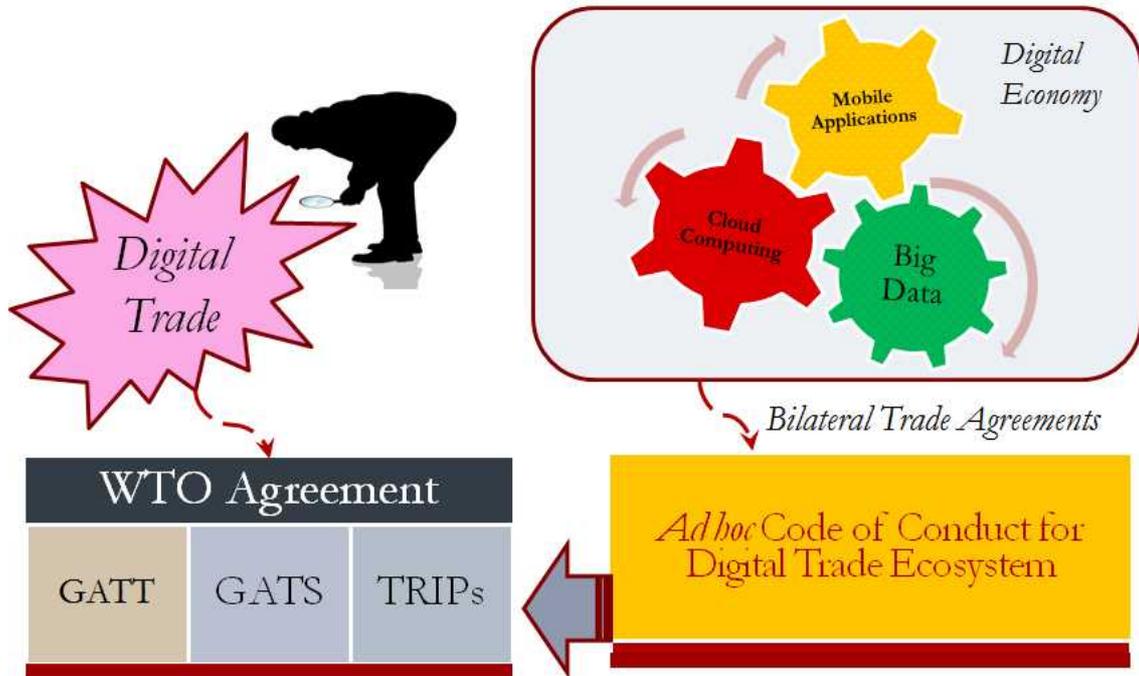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통상규범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한다. 이는 온라인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재화의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ion) 조문에 관한 갈등이다. 동 조문이 글자 그대로 비차별대우의 적용대상을 디지털재화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재화의 정의 자체를 반대하는 EU는 동 조문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EU는 인터넷에 의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를 새로운 서비스로 간주하고, GATS 관할 하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재량권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정치적 고려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독 강조해 온 EU가 미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그 결과, TPP, 한미 FTA 등 미국 주도의 FTA에는 예외 없이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조문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TiSA, 한·EU FTA 등 EU 주도 또는 미국과 EU가 동시 참여하는 FTA에서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조문이 빠져있다.

□ 국내화조치

국가 간 정보이전, 컴퓨팅설비의 위치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소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 금지’에 관한 조문들은 WTO 다자통상규범이나 우리나라가 체결·발효시킨 FTA에는 존재하지 않던 최신 통상규범이다. 디지털무역 통상의제 논의를 주도해 온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모바일앱(mobile applications), 빅데이터(big data) 및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이며, 그 생태계 작동의 원활유와 같은 존재가

정보(data)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자국의 국가경쟁력 원천으로 정보(data)의 자유로운 흐름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의 지재권(IPR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를 지목하는 실용적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림 5-3] 미국의 최근 통상협상전략 개요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EU조차도 TISA 협상에서 국내화조치에 관한 조문 도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EU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미래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한다. 즉, 과거 EU 창설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물리적 단일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과 사이버공간의 규제장벽 제거를 통해 디지털경제 하에서도 사이버 단일시장 비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EU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EU의 디지털단일시장(DSM : Digital Single Market) 정책은 그러한 공감대의 집약체이다. 동 정책을 통해 EU는 역내 생산성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디지털시장 분할(fragmentation) 타개책의 일환으로 특히 역내 회원국 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와 정보의 저장 및 처리와 관련한 부당한 지리적 제한조치의 금지 등이 디지털단일시장 실현을 위한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화조치 금지와 관련하여 TiSA와 TPP의 유사성은 매우 높다.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관한 조문을 공히 도입하고 있으며, 조문의 기본적인 구조도 양자 간 대동소이하다. 각 조문별로 공히 국내화조치를 금지한다는 네거티브 의무를 명기하면서도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전제로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개괄적 수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TPP에서와 유사하게 TiSA는 필요성심사에 의한 예외에 더해 국내화조치 조문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분야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정부보조금 및 무상교부금(subsidies or grants) 등은 국내화조치 조문의 적용배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국내화조치에 관한 조문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국가 간 정보이전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 수집·가공한 공공정보 및 그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서도 조문 상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위치,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국내화조치에 관한 3개 조문 상의 네거티브 의무(negative obligations)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융서비스 분야, 정부조달 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및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율적인 국내정책 수립·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불필요한 국가 간 논란 없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요건의 활용, 국내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 TPP 전자상거래 규범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로 국내화조치 금지규정이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거론되고 있기에 금융서비스 분야는 국내화조치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지식재산권 및 과세

가. 지식재산권

1) WTO 다자통상규범의 주요 쟁점 및 정책시사점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은 1974년 UN의 전문기구로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편 디지털 재화의 저작권 관련 지침은 1996년 저작권 조약(WCT) 제4조에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가 처음 다루어졌다.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다자간 국제규범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관장 하에 있거나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WIPO가 가장 많은 조약을 관장하고 있고, WTO는 TRIPs협정 하나를

관장하고 있지만 TRIPs협정이 갖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요한 국제규범이 되어 있다.

WIPO의 주도로 체결된 1996년 저작권조약(WCT) 제4조에서는 대표적인 디지털 재화의 하나인 소프트웨어를 어문 저작물로 명확히 하였고 1971년 있었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발효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간 통상문제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주도로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인접권에 관한 로마협약 등은 일반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었던 반면, TRIPs의 경우 WTO 가입국 모두에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TRIPs에서도 디지털 재화의 구체적인 정의 및 세부적인 보호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적용과 같이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중에서 어느 권리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발명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 또한 각각의 보호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범위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1970년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WIPO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별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SW 특허를 인정 또는 불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Gottschalk vs. Benson* 판결에서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SW 특허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례가 있었으나, *Diamond vs. Diehr* 사건(1981), *In re Lowry* 사건(1995), *State Street Bank* 사건(1998) 등의 판례를 통하여 SW 특허의 보호 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다. 그러나 특허괴물이 SW 특허에서 많이 사용되는 권리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능적 청구항으로 SW 특허를 악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Alice* 판결³⁴¹⁾ 등에서 특허무효판결을 하였다. Alice사의 SW는 통상적인 금융거래 개념(추상적 아이디어)이 범용 컴퓨터에 의해 단순 실행되는 것 이상의 부가적 구성이 없어서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것이다.

341)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ern.* 123 S.Ct. 2347 [2014].

EU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법(EPC) 제52조(2)(c)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특허청(EPO)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SW 특허는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폭넓게 SW 특허를 인정하여 방법·장치·기록매체 청구항을 넘어 program product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의 정의(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 물건의 발명에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하면, SW는 “컴퓨터에서 HW를 움직이는 기술”로 정의하고,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처리하기로 적합한 명령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구별은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SW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³⁴²⁾ 이러한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하면 “SW에 의한 정보 처리가 HW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해당 SW와 협동해서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SW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⁴³⁾ 그러므로 SW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청구항의 형태를 방법, 장치, 기록매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청구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FTA 지역통상규범의 주요 쟁점 및 정책시사점

한편 양자간 협정인 한미 FTA에서는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의 인정,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에 반하는 다운로드 및 배포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에 동의하고, 한국은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송이나 복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는 언제든지 폐쇄가 가능하며, 그것도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폐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기간의 연장(사후 50년→70년)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342) 김원준(2016),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미국 소프트웨어 판례 동향, 법학논총(전남대) 36권 3호, 493면.

343) 특허청(2014),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14면.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TRIPs 협정 수준을 넘는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TPP 제10장에서 7개 조문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를 다루고 있다. TPP 협상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규정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존 다른 규범들의 보호 수준보다 강화된 수준들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 수준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법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체결하며 거의 모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표 5-2> 주요 국제협정별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조문구조

조문 \ 협정	TPP	양자 간 FTA		
		한미	한-EU	한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존속기간 연장	0	0	0	×
기술적 보호조치	0	0	0	0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	0	×	×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	0	×	×
법정손해배상제도	×	0	0	×
인터넷상 집행강화(사이트폐쇄 등)	×	0	×	×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	×	×	0
지식재산의 범위	×	×	0	×
기술의 이전	×	×	0	×
지재권의 소진	0	×	0	×
법인의 책임	×	×	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0	×	0	×

나. 과세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이슈는 다양한 다자·양자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OECD에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과세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OECD는 이에 관한 별도의 기술지원그룹을 두고 세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WTO나 FTA 등의 통상 협상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내국세보다는 관세 부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가간 거래 중 디지털 재화의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서는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통해 무관세 관행의 한시적 유지방침이 발표되었고 현재 이와 같은 방침이 준용되고 있다. 한·미 FTA 등 주요 FTA에서도 WTO 결정과 동일하게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재화와 함께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도 무관세 원칙을 규정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기존의 과세체제를 전자상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직접세의 경우,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등에서 타방 계약국 기업에 대한 일방 계약국의 과세 권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급자(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과세 권한 설정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동의 경우에 사업장과 같이 물리적인 실체 없이도 거래활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등의 규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세금 부과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상거래 측면에서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과세 회피 억제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구축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OECD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해당 과세대상국 거주 소비자와 기업 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업의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가 해당국에서 폭넓게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 대상국 내 고객으로부터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유의미한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 및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간접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이러한 합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령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거주지국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신고방식은 징수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OECD는 소비지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나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인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거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므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득규정과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디지털 재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범위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소프트웨어 분야의 통상대응방향 제언

1. 전자상거래

크게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구분되는 소프트웨어 유형 가운데, 우리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체제 하의 ITA(정보기술협정) 가입을 통해 각각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개방을 단행했다. 다만, WTO 세부협정들이 인터넷의 등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양허가 인터넷을 합법적인 전송수단으로 포함하는지 여부는 미결과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기구인 서비스 분야 기존 양허에 대해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회원국의 별도 제한이 없는 이상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이 자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주문형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면 개방한 WTO 회원국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무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방식의 소프트웨어무역과 관련된 WTO의 미결과제들에 대해 대부분 시장친화적 입장을 천명하였다. 온라인 패키지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로 대표되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는 일부 예외를 조건으로 무관세와 비차별대우를 양허하였고, 네거티브 접근(negative listing)에 기초한 양허를 통해 신종 서비스로 부상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방하였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시장개방이 이미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포함한 추후 통상협상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특정하여 시장개방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 협상이 진행될 개연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규범 제정 협상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목전으로 다가 온 한미 FTA 개정협상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규범 추가 제정이 한미 FTA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사항이고, 소프트웨어 분야와의 관련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핵심 쟁점사항은 최근 메가(Mega) FTA에서 다루어져 온 국가 간 정보이전, 컴퓨팅설비의 위치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소위 ‘국내화조치(localization measures)’ 금지이다.³⁴⁴⁾

국내화조치 금지 규정에 관한 협상이 소프트웨어 분야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 중의 하나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및 컴퓨팅설비의 위치 독립성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개방을 지지하는 양대 축과도 같다. 결국 국내화조치 금지 규정 도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개방 가속화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발효시킨 기존 통상협정 어디에서도 해당 조문들을 수용한 사례가 아직 없다. 한미 FTA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협력규정이 고작이다. 다자·지역통상체제 및 기타 국제적 논의 동향에 비추어 국내화조치 금지 규정 도입이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동 규정에 대한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화조치 금지에 관한 조문 중에는 실무협상 대응을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직접 입장을 정리·제시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금지’ 조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국내화조치 금지 조문의 수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다시 말해, 이는 현행 국내법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2017년 미국의 ‘NTE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그러한 리스크를 가늠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 및 지도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국내화요건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관련법 근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전고지·동의(informed consent)’ 이외 방식으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불가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유출 허가에 근거해 측량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법(약칭 : 공간정보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자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CCPA : Act on Promotion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Users)’ 상의 국가기관 클라우드컴퓨팅망 분리 요건(CCPA Guideline)과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services)’ 분야의 컴퓨팅설비 국내화 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소프트웨어 분야와

344) 소프트웨어 분야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TiSA협상에서 미국이 비교적 최근 새로이 제안한 ‘양방향 컴퓨터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에 관한 규정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결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금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법제화한 실정법 근거도 부재하다.

정리하자면, 국내화조치 금지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적 리스크가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와 직결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한 여하한 리스크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내에 좀 더 본질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며, 국내화조치 금지 규정 도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 여하가 그러한 리스크를 증폭시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본질적 리스크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국내시장 방어 및 해외시장 진출 현실을 말한다.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은 양자택일의 대상이기보다 균형된 공존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엄밀히 말해 전자는 후자를 위한 지렛대와 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대체로 내수의존적 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왔다. 그 책임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더라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경제 하에서 정부와 업계가 최근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특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념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은 소프트웨어산업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서 국내시장 보호가 능사가 아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에 앞서, 국경의 의미가 불분명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확산은 우리 업계의 대표적인 해외진출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해외 현지화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현지망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들에게 그러하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수요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인터넷을 통해 불러들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화조치 등 최근 통상규범의 변화 움직임을 수세적·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시장자유화를 국내 소프트웨어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와 활로로 활용한다는 전향적 자세가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가 국내 법제를 통해 민간에서 거래되는 상용 소프트웨어(mass market software)에 대해 그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이다. 이는 민간주체 간 계약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와는 관련성이 없고, 그러한 경우는 통상문제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자로 나서는 정부조달 분야

는 정부의 조치가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통상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정부 조달은 자유화된 소프트웨어 분야에 남은 사실상 유일한 산업정책수단으로서 국내 소프트웨어 육성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등 추후 통상협상 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금지 규정은 정부조달에 대한 조문적용 배제를 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정부조달 입찰조건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명시할 경우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정부조달 배제 단서가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는 미국과 EU 간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식 FTA에서는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의 적용대상을 디지털재화로 정의한 반면, 유럽식 FTA에서는 무관세에 한하여 전자적 전송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의해 왔다. 물론 이러한 양면적 자세는 협상상대국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관련제도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해외진출 등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통상협상을 통해 좀 더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협상상대국이 개도국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필요성이 높아진다.

2. 지식재산권 및 과세

디지털 재화의 권리 보호는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영업비밀보호권, 생명공학기술권 등을 포괄하는 신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권리보호는 주로 저작권법이라는 단일한 보호체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WIPO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이외의 영업비밀보호규정 등을 통해야만 권리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특허권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자는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하기도 한다.

향후 소프트웨어의 특허출원을 별도의 절차로 간소화하되 청구범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스코드의 임치제도와 같은 공공의 공증시스템을 확립하며,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창작성이 없는 노력에 대한 보상제도까지 고려하여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체계의 포괄적인 확립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국제 특허협약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권리 행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보호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 유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차량통행량이나 통행방법 등에 관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수집·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익과 상충되어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역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등의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등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조세제도 개정, 부가세의 효과적인 징수 장치 마련, 소액수입물품 면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거래와 관련한 소득 규정과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디지털 재화의 유형들을 고려하여 과세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미FTA 재협상이 우리 통상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2017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 재협상은 지난 8월 중순 1차 회동 이후 3주 간격으로 올 해 말까지 7차례 개최되며, 2018년 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재협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전략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³⁴⁵⁾ 여기서 미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법과 유사한 보호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디지털 거래의 촉진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 및 지식재산을 구현하는 재화를 전송 및 배포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강력한 보호를 하고자 한다. 또한 민사·행정·형사 절차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인에 대한 차별없는 시장접근기회 확보를 구현하고자 한다.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디지털 거래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전자 서적 등의 디지털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며, 재화가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에 따른 차별

345) USTR(2017),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pp.8-10.

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NAFTA 국가들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요하지 않으며, 로컬 컴퓨팅 시설의 사용이나 설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정부가 컴퓨터 소스 코드의 공개를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범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NAFTA 재협상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태도는 현재 미국의 관심사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가 매우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정부가 컨트롤 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국내에 로컬 컴퓨팅 시설의 사용이나 설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국익 또는 공익의 저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동시에, NAFTA 재협상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우리에게 적합한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국세공무원교육원(2013), 국제조세 공개강좌.
- 국회예산정책처(2016),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⑥국제조세.
- 권현호(2016), 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 WTO 및 FTA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47권.
- 김성웅(2016),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와 의의,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14호(통권 628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원준(2016),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미국 소프트웨어 판례 동향, 법학논총(전남대) 36권 3호.
- 김인근(2013),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고이텍스.
-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이민영(2015),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5-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라미령·김제국(20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병철(2011), WTO와 국제통상규범, 국회사무처.
- 박희근(2011), 한·중 FTA상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적 연구, 단국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안세영(1999), 사이버 무역시대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고찰, 국제통상연구 제4권 2호.
- 이금노(2016),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과 그 의의, 소비자정책동향 제70호, 한국소비자원.
- 이성봉(2003), 국제투자규범의 현황 및 수렴 가능성, OECD Focus 제2권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신규(2001), 사이버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2호.
- 이용섭·이동신(2012), 국제조세, 세경사.
- 이재곤(2007),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 법학연구 18(1).
- 이창희(2007), 조세조약 해석방법, 조세학술논문집 제23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 이창희(201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용자 소득에 대한 과세,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4호.
- 이한영(2005),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활성화 정책방안, 관세학회지 제6권 3호.
- 이한영(2007), 디지털@통상협상, 삼성경제연구소.
- 이효영(2017),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 통상외교 확대 방안,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정진섭·황희철(1995), 국제지적재산권법, 육법사.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2004),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쟁점사항의 국내법적 수용 여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일시적 복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7.

해외 문헌

- Aaron Lukas(1999), Tax Bytes A Primer on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de Policy Analysis.
- Althaf Marsoof(2012), "A Case for sui generis treatment of software under the WTO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20, No. 4.
- ECIPE(2016), Unleashing Internal Data Flows in the EU : An Economic Assessment of Data Localization

Measures in the EU Member States, ECIPE Policy Brief, NO. 03/2016.

European Commission(2015),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SWD(2015) 100, May 6.

European Commission(2015),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 Analysis and Evidence,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15) 100 final, 6.6.2015.

Ficsor, M.(1997), Copyright for the Digital Era: The WIPO ‘Internet’ Treaties,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 21 (3-4).

FTI Consulting LLP(2015),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 Focused, Ambitious, Effective?, www.fticonsulting.com.

Gary Clyde Hufbauer, J. Bradford Jensen, and Sherry Stephenson(2012),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 Policy Brief No. PBI2-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side US Trade(2012), Peterson Institute Argues for Services Deal Along Lines of U.S. Position, May 3, 2012.

Inside US Trade, “WTO Members Reach Standstill Pact on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 22 May 1998.

John S. Wilson, “Telecommunications Liberalization: The Goods and Services Connection“, in Unfinished Business: Telecommunications After the Uruguay Round, G. Hufbauer & Wada, eds. 1998.

Kimberlee G Weatherall(2016), RCEP Analysis – Leaked IP Chapter 15 October 2015. Draft as at 26 April 2016.

KOTRA(2017),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Global Strategy Report 17-010.

Miller, Ben and Robert D. Atkinson(2014), Raising European Productivity Growth Through ICT,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Institute.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2004).

OECD(1998),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 A Report by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OECD(1998). “OECD Ministerial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Conference Conclusions” , SG/EC(98)14/FINAL. 1998. 12.

OECD(2001), Tax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IMPLEMENTING THE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OECD(2013), Electronic and mobile commerc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2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rkhan Abdulkarimli(2015), E-Signature and Taxation of E-commerce, Baku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ume No.1.

Rachel F. Fefer, Shayerah Ilias Akhtar and Wayne M. Morrison(2017),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CRS Report 7-5700, R4456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ICHARD JONES and SUBHAJIT BASU(2002),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A Developing Problem,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Vol. 16, No. 1.

ROLAND PARIS(2003), The Globalization of Taxati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3) 47.

Sacha Wunsch-Vincent(2002), “Outstanding WTO Issues and Deliverables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

Cross-border Trade of Digital Products” , for discussion during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etition, Cultural Variety and Global Governance: The Case of the Global Audio-visual System, October 19.

Stefan Bach(2000), Markus Hubbert and Walter Müller, Taxation of E-Commerce: Persistent Problems and Recent Developments,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69. Jahrgang, Heft 4/2000.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2002), Computer Software: International Trade Flows Identifying Imports and Exports of Software Goods and Services, Point 4, Draft paper prepared by Bill Cave, OECD/STD/TIASDRAFT; prepared for the meeting of the OECD-EUROSTAT National Accounts Software Task Force, April 22-23, 2002.

USTR(2017),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White & Case LLP(2015), The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arch 13.

WTO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2013), Proposal for Updating the “Decision on the Valuation of Carrier Media Bearing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Equipment” , G/VAL/W/241, November 22, 2013, Annex.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0), GATS 2000 :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S/CSS/W/35, December 22.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2), Coverage of CPC 84-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ctober 24, TN/S/W/6, S/CSC/W/35.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2), Coverage of CPC 84-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ctober 24, TN/S/W/6, S/CSC/W/35.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9),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300, June 22,

WTO Document(2004),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November 10, 2004.

WTO Document(2009),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AB/R, December 21, 2009.

WTO Document(2012), Russian Federation –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149, November 5, 2012.

WTO General Council(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30.

WTO General Council(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25.

WTO Ministerial Conference 2nd Session(199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May 18 and 20.

WTO(198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WT/MIN(98)/DEC/2, May 25.

WTO(2002), Communication from Canada to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8 May 2002, JOB(02)/38.

References

- National Tax Officials Training Institute(2013), International Tax Open Lectures.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2016), 2016 Understanding and Issues of Taxation ⑥ International Taxation.
- Kwon Hyun-ho(2016), Present and Future of Content Trad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 Focusing on WTO and FTA Discussions.
- Kim, Sung-Woong(2016),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e 2016 OECD Digital Economy Ministerial Mee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oadcasting Policy Vol. 28 No. 14 (Bulletin 628),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olicy.
- Kim, Won-joon(2016), Status of Software Patents and Trends of US Software Cases, Journal of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Vol. 36, No.2.
- Kim, In-Geun(2013),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axation, Gwang-gyo.
- Kim, Jung-gon · Na, Seung-kwon · Zhong, Jong-Moon · Lee, Sung-Hee · Lee, Min-young(2015),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Digital Commerce and Korea's Response Plan, Research Report 15-18, KIEP.
- La, Mi-reung and Kim, Jae-guk(2017), Pres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RCEP), Today's World Economy, KIEP.
- Park, Hee-keun(2011), Legal Study on Computer Program Copyright in Korea-China FTA,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Thesis).
- Ahn, Se-Young (1999),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Issues of Cyber Trade E-commerce,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Vol. 4, No. 2.
- Lee, Geum-no(2016), OECD Electronic Commerce Guideline Revision and Its Significance, Consumer Policy Trend No. 70, Korea Consumer Agency.
- Lee, Sung-Bong (2003), Current Status and Convergen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ulations, OECD Focus Vol. 2, No. 2, KIEP.
- Lee, Shin-Gyu(2001),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countermeasures for e-commerce for cyber trade, Korea Customs Journal, Vol. 2, No. 2
- Lee Yong-seop · Lee Dong-shin(2012), international taxation, Se-kyung-sa.
- Lee, Jae-Gon (2007),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Studies 18(1).
- Lee, Chang-hee(2007), Method of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Finance, Vol. 23, No. 2, Korea International Taxation Association.
- Lee, Chang-hee(2013), Taxation on the royalty income of non-resident corporations, Law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 54, No. 4.
- Lee, Han-young(2005), Korea's Software Industry Exports Policy, Korea Customs Service Vol. 6, No. 3.
- Lee, Han Young(2007), Digital@Trade Negotiation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Lee Hyo-young(2017), Expansion of Trade Diplomacy through Digital Trade, Analysis of Major International Issues of IFANS 2017-27, IFANS.
- Jung, Jin-Sup and Hwang, Hee-Chul(1995),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Yuk-bub-sa.
- Program Review and Coordination Committee(2004),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n the Domestic Legal Acceptance of International Issues Related to Computer Programs and the Related Industries

-Focusing on Temporary Replication-, Research Report, July 2004.

KOTRA(2017),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EU Single Market Strategy, Global Strategy Report 17-010.

Aaron Lukas(1999), Tax Bytes A Primer on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de Policy Analysis.

Althaf Marsoof(2012), “A Case for sui generis treatment of software under the WTO regime” ,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 20, No. 4.

ECIPE(2016), Unleashing Internal Data Flows in the EU : An Economic Assessment of Data Localization Measures in the EU Member States, ECIPE Policy Brief, NO. 03/2016.

European Commission(2015),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SWD(2015) 100, May 6.

European Commission(2015),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 Analysis and Evidence,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15) 100 final, 6.6.2015.

Ficsor, M.(1997), Copyright for the Digital Era: The WIPO ‘Internet’ Treaties,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 21 (3-4).

FTI Consulting LLP(2015),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 Focused, Ambitious, Effective?, www.fticonsulting.com.

Gary Clyde Hufbauer, J. Bradford Jensen, and Sherry Stephenson(2012),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 Policy Brief No. PB12-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side US Trade(2012), Peterson Institute Argues for Services Deal Along Lines of U.S. Position, May 3, 2012.

Inside US Trade, “WTO Members Reach Standstill Pact on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 22 May 1998.

John S. Wilson, “Telecommunications Liberalization: The Goods and Services Connection“, in Unfinished Business: Telecommunications After the Uruguay Round, G. Hufbauer & Wada, eds. 1998.

Kimberlee G Weatherall(2016), RCEP Analysis – Leaked IP Chapter 15 October 2015. Draft as at 26 April 2016.

Miller, Ben and Robert D. Atkinson(2014), Raising European Productivity Growth Through ICT,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Institute.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2004).

OECD(1998),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 A Report by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OECD(1998). “OECD Ministerial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Conference Conclusions” , SG/EC(98)14/FINAL. 1998. 12.

OECD(2001), Tax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IMPLEMENTING THE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OECD(2013), Electronic and mobile commerc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2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7),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rkhan Abdulkarimli(2015), E-Signature and Taxation of E-commerce, Baku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ume No.1.

- Rachel F. Fefer, Shayerah Ilias Akhtar and Wayne M. Morrison(2017),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CRS Report 7-5700, R4456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RICHARD JONES and SUBHAJIT BASU(2002),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A Developing Problem,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Vol. 16, No. 1.
- ROLAND PARIS(2003), The Globalization of Taxati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3) 47.
- Sacha Wunsch-Vincent(2002), “Outstanding WTO Issues and Deliverables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 Cross-border Trade of Digital Products” , for discussion during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etition, Cultural Variety and Global Governance: The Case of the Global Audio-visual System, October 19.
- Stefan Bach(2000), Markus Hubbert and Walter Müller, Taxation of E-Commerce: Persistent Problems and Recent Developments,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69. Jahrgang, Heft 4/2000.
- Task Force on Software Measurement in the National Accounts(2002), Computer Software: International Trade Flows Identifying Imports and Exports of Software Goods and Services, Point 4, Draft paper prepared by Bill Cave, OECD/STD/TIASDRAFT; prepared for the meeting of the OECD-EUROSTAT National Accounts Software Task Force, April 22-23, 2002.
- USTR(2017),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 White & Case LLP(2015), The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arch 13.
- WTO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2013), Proposal for Updating the “Decision on the Valuation of Carrier Media Bearing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Equipment” , G/VAL/W/241, November 22, 2013, Annex.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0), GATS 2000 :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S/CSS/W/35, December 22.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2), Coverage of CPC 84-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ctober 24, TN/S/W/6, S/CSC/W/35.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2), Coverage of CPC 84-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ctober 24, TN/S/W/6, S/CSC/W/35.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2009),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300, June 22,
- WTO Document(2004),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R, November 10, 2004.
- WTO Document(2009), China—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WT/DS363/AB/R, December 21, 2009.
- WTO Document(2012), Russian Federation -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149, November 5, 2012.
- WTO General Council(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30.
- WTO General Council(1998),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25.
- WTO Ministerial Conference 2nd Session(199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May 18 and 20.

WTO(1988),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WT/MIN(98)/DEC/2, May 25.

WTO(2002), Communication from Canada to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8 May 2002, JOB(02)/38.

〈 부 록 〉

□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 하위 세부서비스 항목과 UNCPC 정의

	UNCPC	W/120 1B.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RS)
	841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842	b. 소프트웨어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843	c. Data processing services
	844	d. Data base services
	845+849	e. Other
W/120	UNCPC	UNCPC 상의 서비스 정의
1B.a	841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assistance services to the clients in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and computer networks.
1B.b	842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all services involving consultancy 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oftware, and defines "software" as the sets of instructions required to make computers work and communicate, which may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programmes developed for specific applications (application software) and situations in which the customer may have a choice of ready-made off-the-shelf programmes (packaged software), specifically developed programmes for its requirements (customized software) or a combination of the two. The sub-categories are:
	8421	Systems and software consulting services: services of a general nature prior to the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systems and applications. It might be management services, project planning services, etc,
	8422	Systems analysis services: include analysing the clients' needs, defining functional specification, and setting up the team, as well as project management, technical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nd definition of the systems architecture
	8423	Systems design services: include technical solutions, with respect to methodology, quality-assurance, choice of equipment software packages or new technologies, etc.
	8424	Programming services: the implementation phase, i.e. writing and debugging programmes, conducting tests, and editing documentation
	8425	Systems maintenance services: consulting and technical assistance services of software products in use, rewriting or changing existing programmes or systems, and maintaining up-to-date software documentation and manuals and specialist work, such as conversions
1B.c	843/8431	Data processing services: or "input preparation services" include data recording services such as key punching, optical scanning or other methods for data entry
	8432	Data-processing and tabulation services consisting of services such as data processing and tabulation services, computer calculating services, and rental of computer time
	8433	Time-sharing services: UNCPC states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8432 and 8433, noting that computer time only is bought; if it is bought from the customer's premis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re also bought. Data processing or tabulation services may also be bought from a service bureau.
	8439	Other data processing services: consisting of services which manage the full operations of a

		customer's facilities under contract: computer-room environmental quality control services; management services of in-place computer equipment combinations; and management services of computer work flows and distributions
1B.d	844	Data base services: all services provided from primarily structured databases through a communication network. The UNCPC specifically excludes "data and message transmission services" which it classifies un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s 7523) and excludes documentation retrieval services classified as library services (as 96311)
1B.e	849	Other computer services: services for which UNCPC lists two sub-categories
	8491	Data preparation services: services for clients not involving data processing services
	8499	Other computer services n.e.c.: training staff of clients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주 의

1.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SPRI 보고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